

방통융합미래 지정2013-17  
전략체계연구

# 공공용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 관련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연구

(Study on Spectrum Withdrawal and Relocation Algorithm  
for Public sector)

남승용 외

2013. 11

연구기관 : 미디어미래연구소



이 보고서는 201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통융합  
미래전략체계 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공공용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 관련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1월

연구기관 : (사)미디어미래연구소

총괄책임자 : 남승용 책임연구원(미디어미래연구소)

참여연구원 : 이종관 실장(미디어미래연구소)

노창희 팀장(미디어미래연구소)

윤금남 선임연구원(미디어미래연구소)

# 목 차

요약문 .....	1
<b>제1장 서론 .....</b>	<b>1</b>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제기 .....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	2
<b>제2장 전파법 공공용 주파수 손실보상 법체계 및 절차 .....</b>	<b>3</b>
제1절 전파법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체계 .....	3
1. 헌법과 전파법상에서의 손실보상 .....	3
2. 공공주파수 회수·재배치와 손실보상 .....	4
3.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	7
제2절 공공주파수 회수·재배치, 손실보상 쟁점 .....	11
1. 개요 .....	11
2. 주파수 재배치·손실보상의 기간과 행정기관 예산 절차의 불일치 .....	11
3. 행정기관(중앙관서) 간의 손실보상금 지급의 적정성 .....	14
4. 재배치 비용 전액 및 현물 보상 .....	18
<b>제3장 해외 공공용 주파수 재배치 사례 및 지원체계 .....</b>	<b>20</b>
제1절 미국의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 및 비용 지원 .....	20
1. 미국의 주파수 관리 거버넌스 .....	20
2. NTIA 조직 및 공공주파수 관리 업무 .....	20
3. 미국의 공공 주파수 재배치 관련 법제도 및 절차 .....	26
4. 공공용 주파수 재배치 사례 .....	32
제2절 일본의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 및 손실보상 .....	34
1. 일본의 공공주파수 관리 부처 .....	34
2. 일본의 주파수 재배치 손실보상 관련 법제도 및 절차 .....	35
3. 일본의 주파수 재배치 손실보상 재원 .....	41
4. 일본의 주파수 재배치 관련 손실보상의 세부내용 .....	44

5. 일본의 주파수 변경 대책 업무와 공공기관 주파수 이용 종료 .....	48
6. 일본 헌법과 토지 수용등의 손실보상 법체계 .....	50
제3절 프랑스의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 및 손실보상 .....	51
1. 프랑스의 주파수 재배치 관련 손실보상 .....	51
2. 프랑스의 주파수 재배치 기금 및 비용 산정 방법 및 절차 .....	52
3. 주파수 재배치 사례 .....	55
4. 프랑스의 토지 수용 등 손실보상 .....	57
제4절 영국의 주파수 재배치 및 손실보상 체계 .....	58
1. 주파수 재배치 관련 손실보상 .....	58
2. 영국의 토지 수용 등의 손실보상 체계 .....	60
3. 영국의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 .....	61
제5절 해외사례 시사점 .....	63
<b>제4장 국내 타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상 비교 .....</b>	<b>65</b>
제1절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의 사례 .....	65
제2절 타법의 손실보상 규정 .....	68
<b>제5장 공공주파수 손실보상 규정 개정방향 .....</b>	<b>75</b>
제1절 현행 규정의 검토 .....	75
제2절 공공용 주파수 재배치 및 손실보상 개정방향 .....	80
1. 개요 .....	80
2. 공공부문 손실보상 절차를 별도로 마련 .....	80
3. 부처간 협의를 고려한 전과정책임위원회 운영 .....	83
4. 사업시행자 선정 또는 설립 .....	87
<b>참 고 문 헌 .....</b>	<b>92</b>
<b>부록 1 : 미국의 공공 주파수 재배치 NTIA 규정 .....</b>	<b>95</b>
<b>부록 2 : 일본의 손실보상관련 전파법 및 연구회 보고서 .....</b>	<b>104</b>
<b>부록 3 : 일본 총무성 전파재배분을 위한 급부금 산정에 관한 기본방침(안) .....</b>	<b>106</b>

## 표 목 차

<표 2-2> 주파수 회수재배치 손실보상 대상 기관 및 유형 .....	5
<표 2-3> 주파수 회수 재배치 유형에 따른 손실비용 산정 항목 .....	7
<표 2-4> 행정기관의 예산 과정 .....	12
<표 3-1> IRAC 비회원의 공공주파수 관련 의견 개선 .....	24
<표3-2> 미국의 공공용 주파수 재배치 비용 산정, 기금 및 절차 관련 규정 .....	27
<표 3-3> AWS 도입관련 공공기관 주파수 재배치 비용 .....	33
<표 3-4> 종합통신 기반국의 업무(총무성조직령 제12조) .....	35
<표 3-5> 2013년까지의 일본 주파수 분배변경 실행 계획 .....	36
<표 3-6> 일본의 손실보상금 산정식 .....	43
<표 3-7> 일본의 재배치 공표 이후 기간과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	47
<표 3-8> 일본 전파산업회(ARIB)의 특정주파수종료대책업무 흐름 .....	50
<표 3-9> 프랑스의 손실보상 산정기준 개요 .....	54
<표 3-10> 주파수 재배치 기금 조성 현황(단위:백만유로) .....	55
<표 3-11> 프랑스의 DTV 전환 관련 주파수 재배치 기금 지급 현황 .....	56
<표 4-1> 화성비봉지역의 택지개발의 행정부처 및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수용면적 .....	66
<표 4-2> 위례지구 국방부 토지수용 사례 .....	68
<표 4-3> 광업권 손실보상 산정기준 .....	72
<표 4-4> 전파법 상 손실보상 법규 .....	75
<표 5-5> 국가재정법 제47조 .....	77
<표 5-6> 국가재정법 예산 이용 허용 대상 .....	78
<표 5-7> 헌법취지에 부합하는 손실보상 대상을 정하는 전파법 개정(안) .....	81
<표 5-8> 헌법취지에 부합하는 손실보상 대상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 .....	83
<표 5-9> 부처간 협의절차를 고려한 전파법 및 시행령 개정(안) .....	84
<표 5-10>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분류 기준 .....	88
<표 5-11> 국내 주요 공단 및 공사의 설립 목적과 주요업무 .....	89
<표 5-12> 전담기관 업무위탁과 관련한 전파법 및 시행령 개정(안) .....	90

## 그 립 목 차

[그림 2-1]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절차 .....	10
[그림 3-2]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행정소요일 .....	11
[그림 2-3] 예산절차상의 중앙관서, 기획재정부, 국회간의 관계 .....	12
[그림 2-4] 행정기관 예산절차와 주파수 회수·재배치 일정 비교 .....	13
[그림 3-5] 대한민국 정부 조직체계 개요 .....	14
[그림 3-6] 대한민국 정부 조직 체계 .....	15
[그림 3-1] NTIA 조직도 .....	21
[그림 3-2] Office of Spectrum Management 하위 부서 및 조직도 .....	22
[그림 3-3] IRAC 조직도 .....	25
[그림 3-4] 연방기관의 주파수 이전 계획 수립 절차 .....	29
[그림 3-5] 미국의 연방정부 무선국 등의 주파수 재배치 일반 절차 .....	30
[그림 3-6] 미국의 공공용 주파수 재배치 흐름도 .....	31
[그림 3-7] 일본의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개요 .....	45
[그림 3-8] 일본의 손실보상금 산정 시 검토사항 .....	45
[그림 3-9] 프랑스의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비용산정 흐름 .....	52
[그림 3-10] 프랑스의 주파수 재개발 및 예산 흐름 .....	53
[그림 3-11] 영국 PMSE 보상금액 산정방법(2012년 10월 이후 이전) .....	59
[그림 3-12] 영국 PMSE 보상금액 산정방법(2012년 10월 이전에 이전) .....	59
[그림 3-13] 영국의 공공주파수 협의 관계 .....	62
[그림 3-14] 영국의 공공주파수 협의 기관 조직도 .....	62
[그림 4-1] 토지수용의 손실보상 절차 .....	67
[그림 5-2] 중앙관서의 손실보상 예산 절차 .....	79

# 요 약 문

## 1. 제 목

공공용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 관련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연구

##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현행 전파법에서 규정한 공공부문의 주파수 회수·재배치 절차 등에 대한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특히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재배치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전파법에서 규정한 주파수 재배치 행정소요일(재배치 공고 후 240~300일)과 행정기관의 예산 과정간의 기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둘째, 행정기관 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셋째,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파수 회수·재배치 시 국내와 유사하게 손실보상금을 수반하는 국가의 공공용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보상금 산정 기준, 결정 절차, 기금운영 방식 등 관련 법제 및 사례를 조사·분석한다.

먼저 주파수 재배치·손실보상의 기간과 행정기관의 예산 결정·집행의 시점 불일치는 현행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은 재배치 공고일로부터 240일~300일내에 해당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국을 철거하거나 타 대역으로 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중앙관서)의 예산 과정은 차년도 관련 정부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1년 전에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임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파수 재배치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만일 전파법에서 규정한 주파수 회수·재배치 기간을 엄격히 적용할 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무선국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기간내에 무선국을 철거하는 회수만 가능한 실정이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손실보상의 제정 취지가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헌법상 제도'인데 보상의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행정기

관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현행 전과법의 손실보상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만일 현행 전과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손실보상을 실시한다면, 손실보상 청구의 법적 주체와 보상 받을 자의 명칭은 누가 되는지와 청문, 손실보상 청구, 이의신청 등 전과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보상 절차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논란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시계획 시행에 따라 도로가 확장되어 공공기관의 건물(관공서) 등을 이전하거나 변경공사를 요하는 경우 사업시행주체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의 주체 등이 전문기관과 국가간으로 규정된 사례가 있어 현행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및 손실보상 절차를 공공용 주파수(공공기관의 무선국)와 사업자용 일반 무선국을 구분하여 별도의 법체제로 규정하거나 토지 수용 등과 같이 손실보상전문기관을 설립(법인화)하는 형태 등 다각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를 제기한다.

제2장에서는 전과법의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체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전과법 상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 보상 체계를 분석하고, 공공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체계의 문제점 및 쟁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해외 공공용 주파수 재배치 사례 및 손실보상체계를 고찰한다. 특히 미국, 일본, 프랑스를 중심으로 주파수 재배치 관련 법제도 및 절차를 살펴보고, 손실보상금 산정체계 및 지원 절차를 논의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 재배치 및 손실보상금 지급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국내 공공용 주파수 재배치 절차 등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먼저 행정기관 주파수 재배치 및 손실보상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여기에서는 주파수 재배치에 대한 행정소요일과 행정기관의 예산 과정 간의 기간 불일치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공

공용 주파수 지원체계, 절차, 공공용 무선국과 일반무선국의 별도 규정 등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현행 공공기관에 대한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의 법적 개념을 재정립하는 등 행정기관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수령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전문 기관 설립과 손실보상의 법적 개념을 재정립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직접보상 규정 등의 효율적인 공공용 주파수 재배치 법체계의 제·개정 방향 등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현행 전파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개선 및 전파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환경 및 동향을 고찰하여 현행 공공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현행 전파법에서 규정한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제도는 기존에 할당·지정·승인 절차를 통하여 특정 주파수 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무선국을 타대역으로 이전하거나 철회하는 행정행위이다. 이는 기존 이용자들에게 전파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내 주파수 회수·재배치 제도는 전파자원 이용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는 업무(전파법 제6조제1항2호)로서 △주파수 분배가 변경된 경우 △이용효율을 개선하고자 대역(帶域)을 정비하는 경우(전파법 제6조의2제1항)에 전파법 제7조의 손실보상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소출력 기기를 제외하고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주파수 할당·지정·승인을 득한 방송사 및 일반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공공기관(군, 중앙관서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무선국에 해당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공공주파수는 주로 사용승인 주파수에 해당되나 현행 전파법에 주파수 사용승인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을 군(軍)·외교, 국제행사 등에 허용된다. 한편, 손실보상금은 전파법 제7조에 근거하여 해당 시설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산정·보상하되, 사용승인 무선국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또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전파법상 손실보상의 금액은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 과정에서 발

생하는 비용 전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장물과 유사하게 잔존가액을 산정하여 지급된다. 즉,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주파수 회수 경우와 재배치 경우를 구분하여 잔존가액, 금융비용 등 5가지 항목을 구분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다.

한편, 보상절차는 주파수재배치 공고를 시작으로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시설물 확인, 손실보상청구서 접수, 감정평가, 보상금 심의 및 결정·통지, 이의신청 접수·처리, 보상금 지급으로 일련의 절차로 진행된다.

첫째, 주파수 재배치·손실보상의 기간과 행정기관의 예산 결정·집행의 시점 불일치의 경우 절차상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손실보상을 통한 주파수 회수·재배치 사업 계획을 당년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동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결정하고 있으나, 재배치 및 손실보상 대상인 행정기관 등에서 이용중인 무선국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성립되지 않아 전파법에서 규정한 재배치 기간중에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 등의 계획을 수립할 때 여타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나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무선국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하게 되어있어 감정평가 등을 별도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절차의 소요기간에 따라 각 기관의 재배치 예산 집행이 불일치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 제47조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언어 관련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

<b>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b>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다음으로 행정기관(중앙관서) 간의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의 적정성여부는, 손실보상의 제정 취지가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헌법상 제도'인데 보상의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현행 전파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의 공공의 필요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근거로 두고 있는데, 만일 현행 전파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손실보상금을 집행한다면 손실보상 청구의 법적 주체와 보상 받을 자의 명의를 누가 되는

지와 청문, 손실보상 청구, 이의신청 등 전파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보상 절차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법체계상의 미비점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연유에서 토지수용 등에서는 손실보상금의 주체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다. 중앙관서에서 도시계획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경우 SH공사 등에서 해당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중앙관서에서는 보상금의 다소를 SH공사와 다룰 수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행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에서 SH공사와 유사한 공단설립 또는 업무의 위탁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하여 별도의 이윤을 창출하지 않아야 하므로 공단의 성격이 더 적합하다.

한편, 해외 주요국의 해외에서는 공공기관이 이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은 일반무선국과 분리하여 별도의 절차(개별 규정)에 따라 시행하거나, 전문보상기관에서 주파수변경대책의 업무를 일괄 수행하고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수행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용 주파수의 재배치 보상 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47 Part 300-301과 연방정부용(공공용)을 상업용으로 재할당에 관한 사항은 Commercial Spectrum Enhancement Acts(2003. 10월)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용 주파수의 재배치는 상무성 산하기관인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 실행하고, 상업용 주파수의 재배치는 FCC에서 전문기관(Clearinghouse)을 지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Commercial Spectrum Enhancement Act 주파수재배치 기금(Spectrum Relocation Fund)를 조성하여 원활한 주파수 재배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 총무성에서 이동통신 및 디지털TV용 주파수 확보 및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이용효율 조사제도 및 주파수 재배치 제도를 정립하고 있다. 손실보상금은 비용산정 전담기관(ARIB; 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s) 전파산업회)이 관련규칙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관련 규정은 일본 전파법 제7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 목적으로 주파수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통상의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 금액의 산정 대상은 전파를 계속 이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무선국으로 정책 전환의 결과로 회수를 기대할 수 없는 투자 자본의 미회수 부분과 설비의 철거 비용, 및 신규 설비 금융비용 등으로 구성하고, 과거의 설비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은 손실보상은 유효기간 5년을 기준으로 손실보상 산정(이자비용)하고 10년을 기준으로 금융비용 산정 여부를

결정한다. 일본의 경우 신규사업자의 이익과 기존면허인의 전체이익을 감안하여 재배치 비용을 신규면허인의 재배치 비용 부담비율은 50%를 기본으로 설정하는데, 신규면허인이 확정되어 전파를 전용하는(예, 휴대전화 등) 형태 및 불특정 다수의 신규면허인이 정하여 지지 않고, 재배치 실시까지 신규면허인을 확정하지 않는 “전파를 공용하는 형태”로 구분한다. 손실보상금 제도는 신속한 전파의 재배치시 기존 면허인의 경제적 및 기술적 영향 등을 조사하여 재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급부금제도를 도입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급부금 산정 방식은 주파수 재배치 계획 공표에서 5년 이내에서 최종사용기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보상 금액산정 대상은 무선국 건설에 투자한 것과는 상관없이 정책전환 결과로서 회수를 기대할 수 없는 미회수 부분과 설비의 철거비용, 신규설비의 예산을 당겨 취득한 금융비용 등이다. 급부금액은 「과거의 설비투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 「새롭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액으로 규정한다.

현행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승인 주파수의 손실보상은 헌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별법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이 수령치일 경우 해당 부처에서는 예산회계상 수입으로 처리되어 국고에 귀속된다. 전술 한바와 같이 현행 전파법의 손실보상 가액은 신규 설비에 대하여 전액 보상하지 않아 해당 부처에서는 별도의 예산과정을 거쳐야한다. 예산 절차에 따르면 행정기관(지자체) 등이 기재부와의 예산협의 및 확정, 국회승인, 반영, 집행을 고려하면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헌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수령하는 것이 위헌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현행 전파법의 손실보상 가액은 신규 설비에 대하여 전액 보상하지 않아 해당 부처에서는 별도의 예산과정을 거쳐야한다. 예산 절차에 따르면 행정기관(지자체) 등이 기재부와의 예산협의 및 확정, 국회승인, 반영, 집행을 고려하면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헌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수령하는 것이 위헌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중앙행정부처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재배치에 필요한 예산 또는 설비구축 공사를 현행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정방안은 크게 세 가지를 고

려할 수 있다. 첫째, 공공부문의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의 산정 및 지급 등의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법, 둘째,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 셋째, 토지수용 절차법과 같이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선정하거나 설립을 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한 전파법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 5. 정책적 활용 내용

첫째, 현행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 중인 무선국이 점유하고 있는 사용승인 주파수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국내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체계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전파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상 절차는 사업자 또는 일반 무선국의 손실보상 절차와 동일하여 ① 전파법에서 규정한 주파수 재배치 행정소요일과 행정기관의 예산 과정간의 기간 불일치, ② 행정기관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수령하는 현행의 법적 체계를 개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전파법(시행령, 고시 등) 개정 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6. 기대효과

첫째,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재배치 절차를 마련하여 적시에 방송통신 및 융합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하여 방송통신 및 융합 산업 성장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재배치 절차를 마련하여 주파수를 회수 또는 재배치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의 예산과정, 집행절차를 효율화하여 국내에서 많은 주파수를 점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체계 개정을 도모할 수 있다.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제기

현행 공공기관 또는 중앙관서 등에서 설치·운영 중인 무선국의 손실보상 절차는 사업자 또는 일반 무선국의 손실보상 절차와 동일하다. 이는 첫째, 전파법에서 규정한 주파수 재배치 행정소요일(재배치 공고 후 240일~300일)과 행정기관의 예산 과정(행정기관-기획재정부-국회)간의 기간이 불일치할 수 있으며 행정소요일의 유효성 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행 국내 법체계상 행정기관 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수령하는 행위 등 손실보상금액을 지급하는 주체와 수령 받는 대상이 행정부처간입에 따라 행정기관이 손실보상금액을 수령받는데 있어 법적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첫 번째 사안으로써, 주파수 재배치·손실보상의 기간과 행정기관의 예산 결정·집행의 시점 불일치이다. 현행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은 재배치 공고일로부터 240일~300일 내에 해당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국을 철거하거나 타 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하지만, 행정기관(중앙관서)의 예산 과정에 따라 차년도 관련 정부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1년 전에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임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파수 재배치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만일 전파법에서 규정한 주파수 회수·재배치 기간을 엄격히 적용할 시에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무선국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기간 내에 무선국을 철거하는 회수만 가능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 사안은, 보상의 대상(손실보상금액의 수령 대상)이 국민이 아닌 행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수용 등에서의 손실보상 제도의 제정 취지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헌법상 제도’이기 때문에 현행 전파법 상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현행 전파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손실보상을 실시한다면, ①보상금 청구의 법적 주체, ②보상받을 자의 명칭은 누가 되는지, ③청문, ④손실보상 청구, ⑤이의신청 등 전파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보상 절차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한 실정이다.

한편,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사례를 살펴보면 도시계획 시행에 따라 도로가 확장되어 공공기관의 건물(관공서) 등을 이전하거나 변경공사를 요하는 경우 사업 시행주체가 관련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보상의 주체 등이 전문기관과 행정기관의 사례가 있어 일반적인 토지수용의 절차와 전과법상의 손실보상 간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절차를 공공용 주파수(공공기관의 무선국)와 사업자 등 일반 무선국을 구분하여 별도의 법체계로 규정하거나 토지 수용 등과 같이 손실보상전문기관을 설립(법인화)하는 형태 등 다각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현행 전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회수·재배치 절차 중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주파수에 해당되는 절차 등의 보완 및 문제점을 발굴하고, 특히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재배치 시행을 위해 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전과법에서 규정한 주파수 재배치 행정소요일(재배치 공고 후 240일~300일)과 행정기관의 예산 과정간의 기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둘째, 행정기관 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 및 수령하는 데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파수 회수·재배치 시 국내와 유사하게 손실보상금을 수반하는 국가의 공공용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 결정 절차, 기금 운영 방식 등 관련 법제도 및 사례를 조사분석한다.

## 제2장 전파법 공공용 주파수 손실보상 법체계 및 절차

### 제1절 전파법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체계

#### 1. 헌법과 전파법상에서의 손실보상

헌법 제23조<sup>1)</sup>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명기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있어 발생하는 희생(손실)으로 해석된다. 다만,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법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고,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전파법 제7조에서는 주파수의 회수·재배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파법에서의 통상적인 손실 역시 완전보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라 변경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일부 주파수 특성에 기인하여 추가적인 무선국을 설치해야 하는 신규설비 등도 손실보상에 포함) 등에 해당된다. 한편, 전파법 제7조 제7항<sup>2)</sup>에서는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이에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에서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 1)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제7조(손실보상 등)제7항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절차,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 및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공공주파수 회수·재배치와 손실보상

전파는 국가자원(공물)으로 민간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용권이 부여되는 것으로서 전파법상에서 손실보상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별도 보상 없이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 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즉, 주파수 회수·재배치를 추진할 경우, 주파수 용도, 기술방식의 변경으로 기존 이용자(시설자)가 더 이상 무선국, 무선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재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시설 또는 장비 등에 대한 보상없이 진행되어 왔다. 이는 대부분의 무선국 설비 등의 장비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경과하였을 경우 회수 또는 재배치에 따라 무선설비를 처분하거나 하는 등 보상액이 크지 않으며, 사전에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함에 따라 별도의 시설, 장비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전파법 시행령에 손실보상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 도입을 위해 단기간에 손실보상을 통한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새로운 무선서비스의 신속한 도입 또는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기존 시설자의 무선설비 장비의 내용연수 등이 만료되기 전에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한편,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로 인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무선설비를 이전 대상 주파수 대역에서 이용할 수 없거나 설치된 무선설비의 경제적 등의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아 시설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손실보상의 절차가 없으면 소송 또는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단기간의 주파수 회수·재배치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 이용자의 장비 구매 또는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일정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

전파법에서의 손실보상 법제를 살펴보면, 현행 전파법 및 전파법 시행령에 규정된 손실보상은 주파수 회수<sup>3)</sup> 또는 재배치<sup>4)</sup>에 따라 기존에 할당, 지정, 사용승인 된 주파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하여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는 무선국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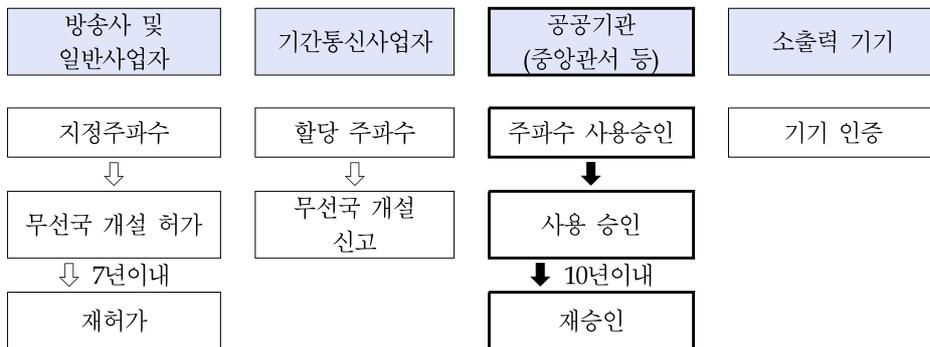
3) "주파수회수"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전파법 제2조제1항제4의2호)

4) "주파수재배치"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전파법 제2조제1항제4의3호)

따라 발생하는 시설자의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파법 제7조에 규정된 손실보상은 동법 제6조의2에서 규정된 주파수 분배가 변경된 경우이거나, 주파수 이용 실적이 낮아 주파수 대역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대역에 운용중인 무선국의 허가를 철회할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전파법 제6조의2는 동법 제6조에 의하여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분배변경,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주파수의 공동사용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파수 분배변경,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경우 동법 제7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통하여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파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은 동법 시행령에서 산정기준, 절차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파법, 동법 시행령 및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차율 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5호, 2009.10.16. 제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즉, 기존에 할당·지정·승인 절차를 통하여 특정 주파수 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무선국을 타대역으로 이전하거나 철회하는 행정행위로서 기존 이용자들에게 전파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을 수반하고 있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소출력 기기를 제외하고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주파수 할당·지정·승인을 득한 방송사 및 일반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공공기관(군, 중앙관서 등)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무선국에 해당된다.

<표 2-2> 주파수 회수재배치 손실보상 대상 기관 및 유형



공공주파수는 주로 사용승인 주파수에 해당되나 현행 전파법에 주파수 사용승인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을 군(軍)·외교, 국제 행사 등에 허용하고 있다.

※ 전파법 시행령 제23조(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무선국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군용전기통신법」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2. 외국의 국가원수 등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중에 의전·경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
3. 주한 외국공관이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 및 영사업무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
4.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 행사를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이 그 행사기간 중에 개설하는 무선국
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중 같은 협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약정의 적용을 받는 무선국
6.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그 업무를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손실보상금은 전파법 제7조에 근거하여 해당 시설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산정·보상하되, 사용승인 무선국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또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 전파법 제7조(손실보상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와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전파법상 손실보상의 금액은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전액(기존시설을 전면 폐기하고 신규장비로 전면 교체하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에 따른 소실보상의 지장물과 유사하게 잔존가액을 산정<sup>5)</sup>하여 지급하는 것이다(이는 토지수용과정에서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부분과 유사).

5) 보상금 산정식은 주파수 변경에 의한 기존 설비의 교체 및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체계이다.

즉,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주파수 회수의 경우와 재배치의 경우를 구분하여 잔존가액, 금융비용 등 5가지 항목을 구분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산정한다.

<표 2-3> 주파수 회수 재배치 유형에 따른 손실비용 산정 항목

구분	기존시설 잔존가액	철거비용	부대비용	이전비용	신규시설의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
주파수 회수	해당	해당	해당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파수 재배치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 3.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현행 전파법 제7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국가(미래창조과학부)가 직접 보상하는 경우와 신규 이용자가 직접 보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국가가 직접 보상을 하거나 신규 이용자가 직접 보상을 하는 경우를 막론하고 전파법 시행령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시행령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라 그 금액을 산정하되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60호)의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절차를 운용한다.

해당 고시의 절차는 다음의 단계에 따라 공고, 대상확정, 보상금 평가, 재배치 시행 등을 추진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당사자에게 청문<sup>6)</sup>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 공고이전에 청문절차를 시행한다.

세부절차를 살펴보면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는 주파수재배치 공고를 시작으로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시설물 확인, 손실보상청구서 접수, 감정평가, 보상금 심의 및 결정·통지, 이의신청 접수·처리, 보상금 지급으로 일련의 절차로 진행된다.

6) 전파법 제77조(청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2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주파수 회수·재배치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등에 주파수재배치 목적·대상·시행시기,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등의 내용으로 공고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5조(주파수 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목적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대상
3.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시기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6. 그 밖에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시설자들에게 그 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그 통지가 시설자들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보상협의회에서는 대상시설 확인 및 보상액 평가 등 시설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보상협의회의 위원은 시설자등,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소속 직원,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보통신기술사 등 전파, 방송통신 및 손실보상 관련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해당 무선설비가 해당 대역의 용도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무선국을 설치한 관계로 전수조사를 필요로 한다. 이는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는 절차(지장물 조사)와 동일하다. 또한, 해당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동일한 제조사에서 동일한 날짜에 취득·설치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이의 부분을 감정평가사가 고려하여 해당 설비에 국한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며, 현장 확인은 정부, 감평가 등이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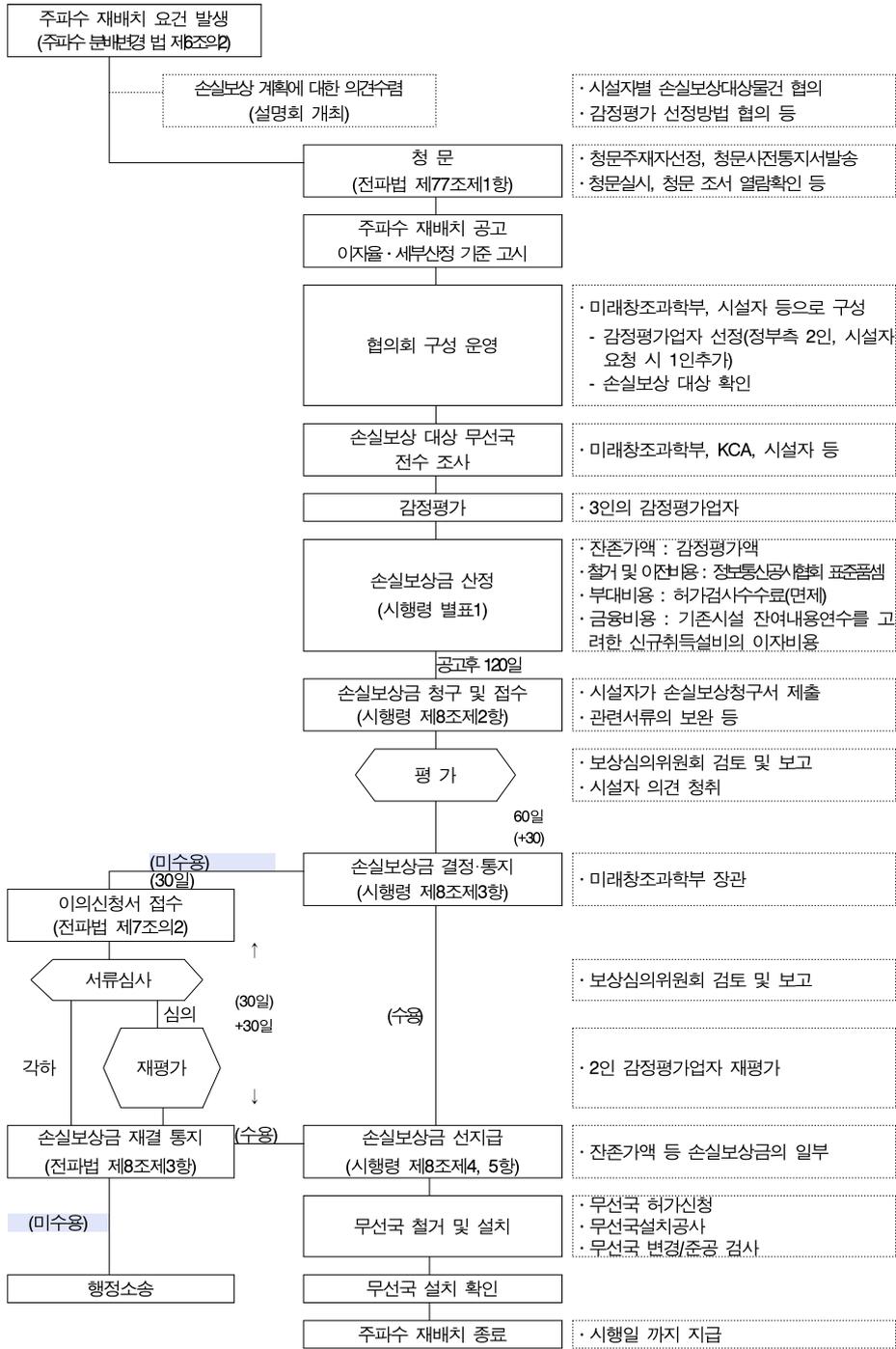
다음으로 손실보상청구서 접수는 주파수재배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시설자가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다. 해당 기간안에 주파수 회수·재배치 대상 무선국에 대한 감정평가가 시행된다. 이는 감정평가는 보상협의회 협의결과, 현장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감정평가

를 실시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대역에 운용중인 무선국을 전부로 한다.

보상금 심의 및 결정·통지는 감정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설자 의견수렴을 거쳐 보상금액, 지급방법 등을 결정 및 통지하는데 보상심의위원회는 해당 고시 제8조에 따라 ①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적정성, ②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자등의 의견의 타당성<sup>7)</sup>, ③법 제7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타당성<sup>8)</sup>, ④기타 미래창조과학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는 통지한 손실보상 금액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심의·평가 등을 거쳐 증감여부를 결정 및 통지하는 절차로 보상금 산정, 결정, 통보, 지급 등이 완료 된다.

- 
- 7) 전파법 제7조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8) 전파법 제7조의2(이의신청 등) ① 시설자등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시설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림 2-1]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절차



## 제2절 공공주파수 회수·재배치, 손실보상 쟁점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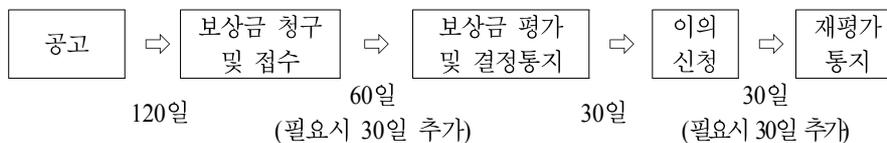
현행 공공기관에서 설치 및 운영 중인 무선국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는 사업자 또는 일반 무선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운용 중인 무선국에서 이용하는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시행에 있어 일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전파법에서 규정한 주파수 재배치 행정소요일(재배치 공고 후 240일~300일)과 행정기관의 예산 과정간의 기간 불일치 문제이고 둘째로, 행정기관 간에 손실보상금 지급 및 수령의 적정성 여부, 공공용 주파수에 관한 세부절차에 대하여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중앙관서 등에서는 주파수 재배치 행정소요일과 예산절차의 불일치로 인하여 해당 부처의 주파수 재배치 비용에 대하여 전액 손실보상금으로 산정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세부 쟁점은 공공주파수의 손실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냐에 귀결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무선설비를 전면 현물로 교체하여 주기를 희망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손실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보상원칙에 반하는 쟁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 2. 주파수 재배치·손실보상의 기간과 행정기관 예산 절차의 불일치

현행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은 재배치 공고일로부터 240일~300일 내에 해당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국을 철거하거나 타 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그림 3-2]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행정소요일



사업자 및 일반 무선국과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통보 절차를 같이하고 있어 사용승인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는 중앙행정 부처의 예산절차와 시점을 달리하고 있다.

현행 행정기관(중앙관서)의 예산 과정은 차년도 관련 정부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1년 전에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림 2-3] 예산절차상의 중앙관서, 기획재정부, 국회간의 관계



원칙적으로는 주파수 회수·재배치 공고 이후 해당 무선국 철거 및 신규 무선국 설치까지의 행정소요일과 해당 행정부처 등의 공공기관에서의 예산 설정 및 집행의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표 2-4> 행정기관의 예산 과정

일정	주요 행위
전년도 12월	o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하달
1월말	o 중기사업계획 제출
2월~4월	o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 작성
4월 말	o 예산안 편성지침 및 지출한도 통보,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5월~6월	o 각 부처 예산요구서 및 성과계획서 작성
6월 말	o 각 부처 예산요구서 제출
7월~9월	o 정부 예산안 마련
9월	o 재정정책자문회의 및 당정협의
10월 2일	o 국회 제출
10월~12월	o 정부 시정연설,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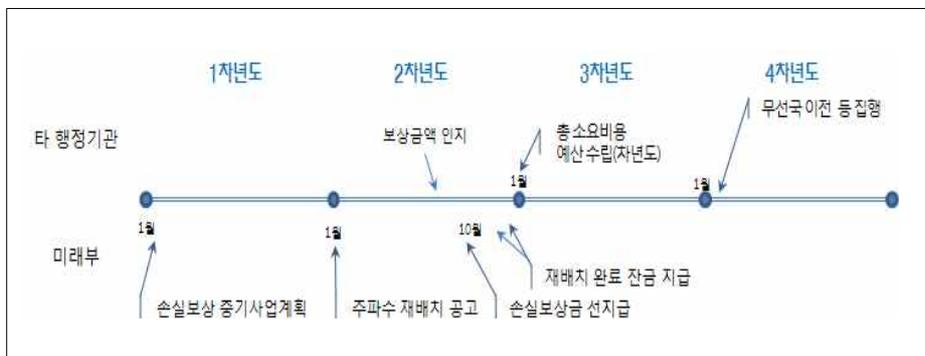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이는 결과적으로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수령의 일정과 불일치한다. 절차상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손실보상을 통한 주파수 회수·재배치 사업 계획을 당년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동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결정하고 있으나, 재배치 및 손실보상 대상인 행정기관 등에서 이용 중인 무선국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성립되지 않아 전파법에서 규정한 재배치 기간 즉, 공고 이전에 중앙관서와 별도로 협의 하거나 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손실보상 등의 절차, 보상금액의 산정 등에 많이 참고가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자체 또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손실보상을 통하여 이전을 할 경우 별도의 절차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손실보상과 관련한 예산 등의 계획을 수립할 때 여타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나 이는 법률로서 정하여져 있지 않다. 행정부처라 할지라도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무선국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하게 되어 사전에 감정평가 등을 별도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절차의 소요기간에 따라 각 기관의 재배치 예산집행 상에서의 시점이 불일치 될 수 있다. 이는 적시에 신규서비스 등에 주파수를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전파법에서 규정한 주파수 회수·재배치 기간을 엄격히 적용할 시에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무선국을 재배치가 곤란할 수 있다.

[그림 2-4] 행정기관 예산절차와 주파수 회수·재배치 일정 비교



### 3. 행정기관(중앙관서) 간의 손실보상금 지급의 적정성

손실보상의 제정취지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헌법상 제도’이다. 하지만, 보상의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현행 전과법 손실보상의 쟁점이 수 있다. 현행 전과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의 공공의 필요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근거로 두고 있다.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야할 주체는 일반국민이 되며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한 손실이 보상금액의 수준이 된다. 그러나 현행 전과법 제7조에서는 시설자 등에게 손실보상금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보상토록 규정되어 있어 중앙부처(중앙관서 등)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앙관서는 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에 해당되며 이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를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5] 대한민국 정부 조직체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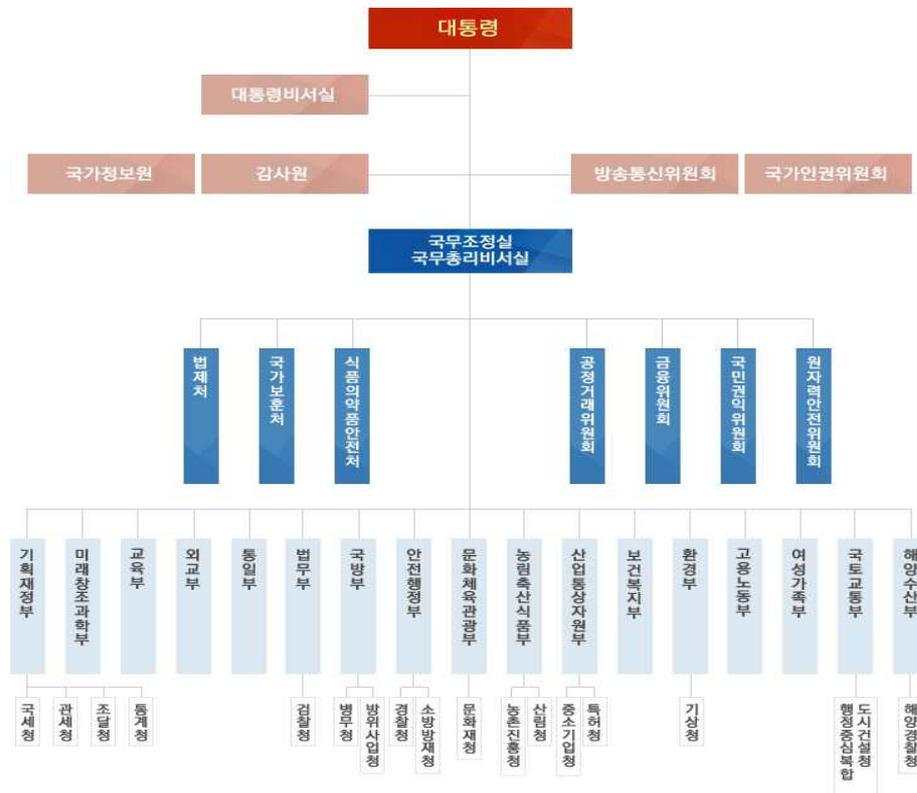


\* 출처 : 안전행정부

2013년 기준의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은 17부 3처 18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행정기

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을 의미하며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기관을 의미한다. 다만,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된다.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만을 의미하지만, 개별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으며 현재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와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개 기관이 있다(안전행정부 2013).

[그림 3-6] 대한민국 정부 조직 체계



출처 : 대한민국 정부 포털(<http://www.korea.go.kr>)

대한민국의 정부조직 체계와 중앙관서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전파법에서 규정한 시설자 등 중 사용승인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는 중앙관서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무조정실 하위에 위치하고 있는 부처간의 예산 이전과 같은 형태이다. 즉, 현행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 재원<sup>9)</sup>으로 규정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출하는 절차로서 지출의 주체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되며 수령의 주체는 국무조정실 하위에 있는 각 중앙관서가 된다. 이는 제정의 흐름상 동일한 계위에 있는 중앙관서간의 예산 등의 이용(移用)<sup>10)</sup>에 해당된다. 「국가재정법」 제47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이에 대한 명확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방부 등에서는 국방부에서 점유·소유하는 등의 국유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국유재산<sup>11)</sup>이란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규정하고

---

9) 전파법 제7조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및 수입으로 하고, 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한다.

10) 국가재정법 제47조

11)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을 동법 제3조<sup>12)</sup>에 따라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며,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되 이를 위하여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수용 등에 있어 중앙관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그 종물을 처분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의 법규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유재산 처분기준(제4조제3항<sup>13)</sup>)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자에게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한 재산을 처분 도는 매각이 가능하다. 이러한

---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 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12) 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13) 국유재산 처분기준 ③ 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국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등으로 신규등록 되어 국가의 소유로 된 경우. 다만, 매각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재산은 제외한다.
3.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하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행정재산을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자에게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SH공사, LH공사, 수자원관리공사 등의 공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등에 관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 처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매각 대금 등은 해당 중앙관서의 특별회계의 세입 또는 기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재산으로 설정<sup>14)</sup>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어촌·어항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또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근거로 시행 할 수 있다. 법률의 자구 해석으로만 이를 살펴보면 전파법 이외의 타법에서는 사용승인 등의 무선국이 이용하는 주파수를 타 대역으로 이전하는데 있어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47조에 근거 할 수 있다.

또한, 전파법 제7조 규정을 근거로 중앙관서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손실보상 청구 주체와 보상금을 수령하는 자의 명의를 누가 되는지 여부, 청문 및 이의신청 등 전파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보상 절차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법체계상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 4. 재배치 비용 전액 및 현물 보상

- 
- 14) 국유재산처분기준 제6조 6호 특별회계의 세입 또는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3조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발전계정 소관의 재산으로서 토지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한 연도별 수급계획에 따라 매각이 예정된 재산인 경우
  - 나. 「어촌·어항법」 제27조에 따른 매각이 불가피한 국가어항의 토지로서 그 매각대금을 「수산업법」 제77조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는 경우
  - 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기금 소관의 재산으로서 그 적립금 또는 기금의 운용과 증식을 위하여 매각할 필요가 있는 재산인 경우
  - 라. 그 매각대금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또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할 수 있는 재산이거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또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소관의 재산으로서 매각이 예정된 재산인 경우
- 15) 미래부와 타 중앙관서는 ‘국가’라는 동일 법인격에 소속된 기관으로, 국가가 국가 자신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에 대한 법이론적 난점이 발생한다.

중앙관서 등 주파수 사용승인을 득한 기관에서는 해당 손실보상금액이 재배치 비용의 일부에 한정되어있어 이의 금액을 재배치 비용 전액을 요구하거나 해당 무선설비 일체를 현물 보상 받기를 요구 할 수 있다. 현행 전파법 및 시행령과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를 검토한 결과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과 전파법 등에서 규정한 통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완전보상을 의미함에 따라 해당 무선설비를 이용한 기간 등을 차감하는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여야한다. 또한 관련법에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토지수용의 사례에서와 같이 대토지를 불하하는 경우와 상이하여 현물보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할 수 있다. 이는 토지 등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을 손실보상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으나, 무선국 또는 무선설비는 해당 설비의 가격과 공사비용이 물가와 연동되며 다른 여하한의 이유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제3장 해외 공공용 주파수 재배치 사례 및 지원체계

### 제1절 미국의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 및 비용 지원

#### 1. 미국의 주파수 관리 거버넌스

미국의 주파수 관리는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의 NTIA<sup>16)</sup>과 FCC<sup>17)</sup>의 이원화된 체제로 수행되고 있다(Communication Acts, 1934). NTIA는 국가 방위·보안·수송·비상 등 연방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를 관리하고, FCC는 비정부기관의 업무용, 상업용, 방송용 등으로 사용하는 주파수를 관리하고 있다. NTIA와 FCC 양 기관은 주파수 요구사항을 결정하여 NTIA에 요청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연구, 후보 주파수의 선정 및 관련 기관과의 조정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 간 입장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관련 기관 간의 협의체인 IRAC<sup>18)</sup>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다.

NTIA는 통신 및 정보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로는 광대역 인터넷 접속, 주파수 이용 확대 및 인터넷의 지속적인 혁신 경제 성장이 있다. 또한, 미연방정부의 공공기관과 관련한 주파수의 분배, 재배치 비상통신, 정보 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NTIA 조직 및 공공주파수 관리 업무

NTIA는 Office of Spectrum Management(OSM),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OIA), Office of Policy Analysis and Development(OPAD),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pplications(OTIA), Office of Public Safety Communications(OPSC),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 Sciences(ITS)의 6개 부서에서 국내외 주파수에 대한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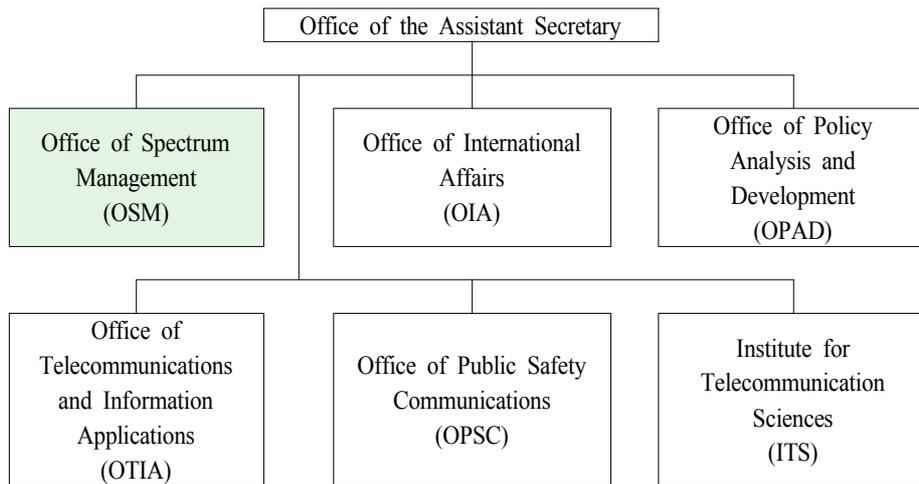
---

16)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17)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18) Interdepartment Radio Advisory Committee

[그림 3-1] NTIA 조직도



\* 출처 : NTIA (<http://www.ntia.doc.gov/offices>) 2013.9월 기준

OSM은 상업용 무선망의 광대역(commercial wireless broadband)과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연방기관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미국 공공 주파수 이용정책을 수립하는 주관 부서로서 미국의 주파수 관리(Domestic spectrum Management), 비상 및 공공안전, 해외 주파수 등 전반적으로 주파수 분배, 승인, 기술지원 등 공공 주파수를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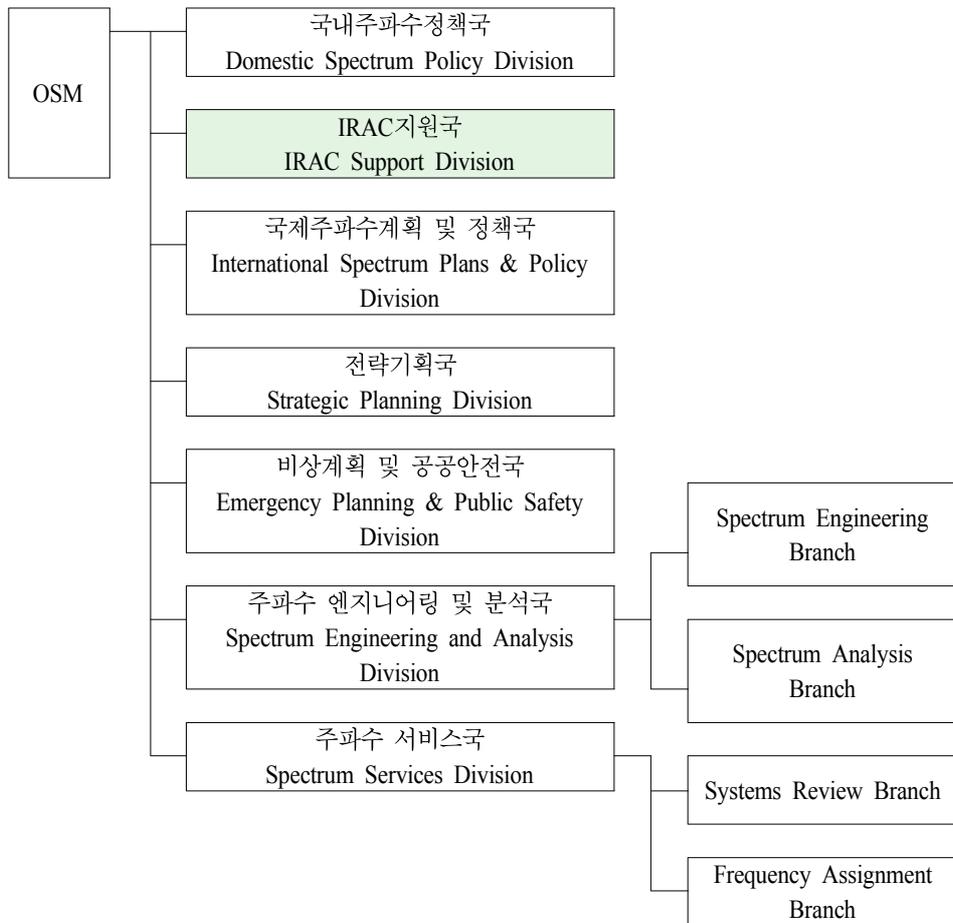
OSM 주요업무

- ▶ 연방 주파수 할당, 이용 정책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 ▶ 전시와 평시의 주파수 이용계획 수립
- ▶ 국제적인 주파수 협의(국제전파회의) 등을 준비, 참석 및 후속 조치
- ▶ 주파수 할당(assigning frequencies)
- ▶ 주파수 이용 데이터베이스 유지
- ▶ 연방기관의 새로운 통신 시스템 및 유효한 주파수 자원에 대한 검토
- ▶ 특정 주파수 자원에 대한 평가
- ▶ 연방 정부의 통신과 관련된 긴급한 준비 활동에 참여
- ▶ 연방 정부의 통신 및 자동화 정보 시스템 보안 활동에 참여

2010년 오바마 대통령 지시에 따라 FCC와 협력하여 향후 10년간 광대역 주파수(대역폭 500MHz) 확보를 추진했다. 또한, 미국내 공공 주파수를 이용하는 행정부처, 방위군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부처간 자문 위원회(IRAC ; Interdepartment Radio Advisory Committee)를 지원하여 미국 전반적인 공공주파수 분배, 승인 등을 검토한다.

[그림 3-2] Office of Spectrum Management 하위 부서 및 조직도



\*출처 : [http://www.ntia.doc.gov/files/ntia/publications/CSM\\_Phone\\_Directory\\_2013\\_Sep\\_10.pdf](http://www.ntia.doc.gov/files/ntia/publications/CSM_Phone_Directory_2013_Sep_10.pdf)  
재구성

OSM에서 지원 운영하는 IRAC(Interdepartment Radio Advisory Committee)은 미국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무선국에 대한 주파수 할당과 정책의 개발 및 실행, 프로그램, 절차, 주파수 분배와 관련한 기술 기준(technical criteria), 관리 주파수 사용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1922년에 연방 정부 간의 주파수 이용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에 의해 조직되었고, 1952년 10월 6일에 재편성 되었다. 이후 1964년에 지위, 임무, 직무가 공식적으로 정의되고, 1978년 행정 명령 12046호(Executive Order 12046)와 개정된 NTIA 조직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 또한, IRAC은 차관보(Assistant Secretary)에 대한 고문 역할을 수행하며 OSM(Office of Spectrum Management)의 미국내주파수관리소장 대리에게 보고한다.<sup>19)</sup>

한편,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연방정부(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IRAC의 회원(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다. 구성원 자격 신청은 NTIA의 OSM에 제출하고 IRAC의 조언을 받아 구성원 자격의 인가를 결정한다. 또한, IRAC은 6개의 하부 소위원회와 주파수 관리 정책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수개의 ad hoc 워킹 그룹으로 구성된다.

IRAC은 19개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임명한 대표자로 구성되는데, 다음과 같다(2013년 기준).

**IRAC의 위원(기관)**

- ① 농무부(Agriculture), ② 공군(Air Force), ③ 육군(Army), ④ 방송위원회(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BBG), ⑤ 연안경비대(Coast Guard), ⑥ 상무부(Commerce), ⑦ 에너지부(Energy), ⑧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⑨ 국토안전보장부(Homeland Security), ⑩ 내무부(Interior), ⑪ 법무부(Justice), ⑫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⑬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⑭ 해군(Navy), ⑮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⑯ 교통부(Transportation), ⑰ 재무부(Treasury), ⑱ 미우편서비스(U.S. Postal Service), ⑲ 재향군인부(Veterans Affairs)

\*출처: <http://www.ntia.doc.gov/page/irac-functions-and-responsibilities>

IRAC 위원회의 비회원인 연방중앙은행(Federal Reserve System), 국제 경계 및 물위원회(International Boundary and Water Commission),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 등은 재무부와 내무부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19) Manual of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Federal Radio Frequency Management(2013)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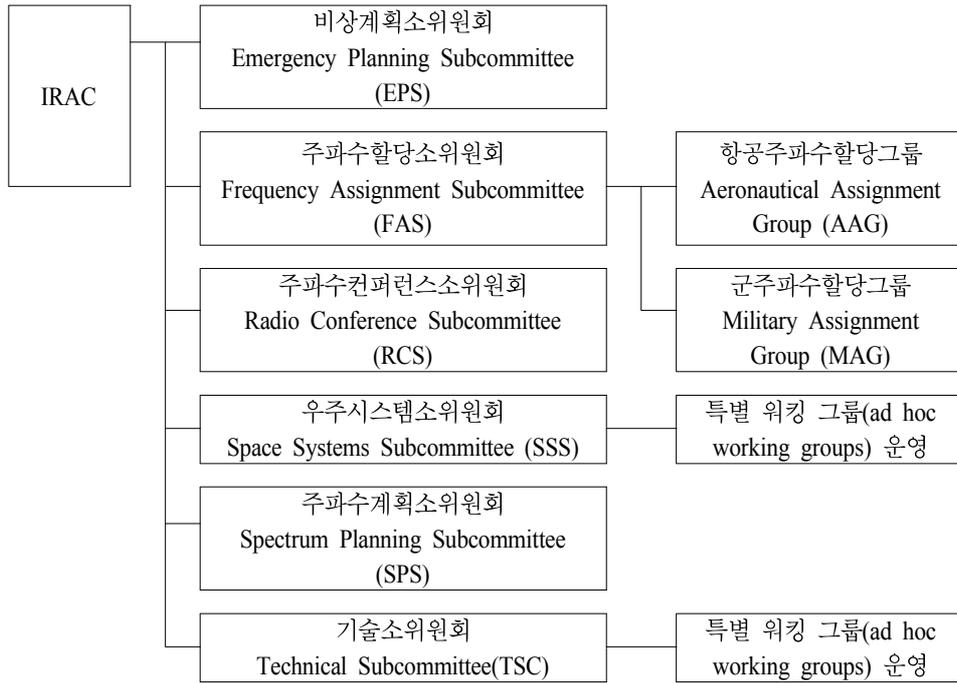
<표 3-1> IRAC 비회원의 공공주파수 관련 의견 개진

IRAC 비회원 기관	대표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재무부(Treasury)
연방중앙은행(Federal Reserve System)	재무부
국제 경계 및 물위원회 (International Boundary and Water Commission)	내무부(Interior)
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재무부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 (Tennessee Valley Authority)	내무부
볼프교통연구소 (Volpe National Transportation Systems Center)	연방항공국(FAA)

또한, IRAC에 속하지 않은 연방기관 및 공공기관은 소위원회와 특별 그룹(ad hoc groups)에 참여할 수 있으며 IRAC과 소위원회, 특별 그룹의 구성원들은 회계연도 내에 그들의 인정된 대표 또는 대리인이 그들이 속한 그룹의 정기 회의에 최소 75%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IRAC, 소위원회, 특별 그룹(ad hoc groups)과 FCC 간의 연락은 FCC에서 임명한 각 그룹 내의 연락대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IRAC의 하위구조는 비상계획소위원회(EPSC), 주파수할당소위원회(FAS), 주파수컨퍼런스 소위원회(RCS), 우주시스템소위원회(SSS), 주파수계획소위원회(PPS), 기술소위원회(TSC),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한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 필요시 서면으로 작성된 운영 조건에 따라 특별 그룹을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특별 그룹은 워킹 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 IRAC과 FCC 간의 관계는 당해 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림 3-3] IRAC 조직도



\* 출처 : NTIA(<http://www.ntia.doc.gov/page/interdepartment-radio-advisory-committee-irac>), 2013.9월 기준

주파수 할당소위원회(Frequency Assignment Subcommittee; FAS)는 주파수 할당과 조정 및 관련된 절차의 개발과 실행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고 당해 위원회는 위원자격이 있는 기관이 임명한 대표와 OSM의 국내주파수관리소장 대리가 임명할 수 있는 IRAC의 회원들로 구성된다. 먼저 주파수할당소위원회(FAS)는 현재 20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6개 소위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

- 주파수 할당소위원회(Frequency Assignment Subcommittee; FAS) 위원**
- ①농림부(Agriculture), ②공군(Air Force), ③육군(Army), ④방송위원회(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BBG), ⑤연안경비대(Coast Guard), ⑥상무부(Commerce), ⑦에너지부(Energy), ⑧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⑨FCC ⑩교통부(Transportation), ⑪ 국토안전보장부(Homeland Security), ⑫내무부(Interior), ⑬법무부(Justice), ⑭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⑮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⑯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국방부 소속), ⑰해군(Navy), ⑱

재무부(Treasury), ⑲미우편서비스(U.S. Postal Service), ⑳ 재향군인부(Veterans Affairs)

다음으로 비상계획소위원회(Emergency Planning Subcommittee; EPS)는 주파수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가안보비상준비(National Securi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NSEP) 계획을 공식화하고 가이드 및 검토한다.

### 3. 미국의 공공 주파수 재배치 관련 법제도 및 절차

연방정부용 주파수의 재배치 보상 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47 Part 300-301<sup>20)</sup>과 연방정부용(공공용)을 상업용으로 재할당하는 데에 관한 사항은 Commercial Spectrum Enhancement Acts(2003. 10월)에 규정되어 있다.

연방주파수(공공용주파수) 재배치에 관한 사항은 USC Title 47, Chapter8 및 통신법 제 303조<sup>21)</sup>(일반사항) 등의 규정을 통하여 대상 주파수를 결정, 재배치 가능 주파수 확인, 주파수 재할당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권한, 연방정부무선국의 철회 및 제한 등을 US Code Title 47, Section 923, 924, 926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법체계는 헌법법률(Statute), 행정부령(regulation), 대통령령(ex-ecutive order),

---

20) CFR 47 CHAPTER III--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COMMERCE  
300.

300.1 MANUAL OF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FEDERAL RADIO FREQUENCY MANAGEMENT

301.

301.1 to 301.220 RELOCATION OF AND SPECTRUM SHARING BY FEDERAL GOVERNMENT STATIONS

21) 제303조 [47 U.S.C. 303] 연방통신위원회의 일반적 권한

이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그리고 무선국사이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에 부합하는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단, 무선국의 주파수의 승인된 출력 또는 운영기간의 변경은 연방통신위원회가 그러한 변경이 공공 편의나 이익을 촉진하거나 또는 필요에 부응하거나 그로 인해 이 법 규정의 준수가 보다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무선국 허가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각 주의 헌법, 법률(statute), 행정부령(regulation)이나 주지사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시나 Village Town 등의 조례(ordinance), 규칙(Regulation)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성문법의 유무를 떠나 법원의 판례가 중요시되며, 연방행정기관의 법령, 규칙,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연방하위법령은 「Code of Federal Regulations」로 분류하고 있다. 연방법률은 50개 Title<sup>22)</sup>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Commercial Spectrum Enhancement Act에서 주파수재배치 기금(Spectrum Relocation Fund)을 조성하여 원활한 주파수 재배치 재원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Commercial Spectrum Enhancement Act의 목적은 정부용(Federal use)에서 상업용(Non federal use)으로 주파수를 재배치할 경우, 정부용 주파수 및 비용 범위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발생하는 비용보상절차에 관한 NTIA 및 FCC의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US CODE 'TITLE 47 - TELEGRAPHS, TELEPHONES, AND RADIOTELEGRAPHS'의 Chapter 5. 8의 세부항목을 개정<sup>23)</sup>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 보상범위 및 비용 산정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2) 주파수 재배치 기금(Spectrum Relocation Fund)의 조항으로 Sec.118.이 신설되었다.

<표3-2> 미국의 공공용 주파수 재배치 비용 산정, 기금 및 절차 관련 규정

구분	주요 내용
비용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치 비용(Relocation cost)은 유사한 정도의 시스템(comparable capability of systems)을 달성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한 정도의 시스템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①새로운 주파수로 이전하거나 ②대체 기술을 사용하여 활용하는 경우 모두 인정</li> </ul> </li> <li>○ 비용의 구체적 범위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재배치로 소요되는 전환 및 대체비용으로서 장비전환, 소프트웨어 구입, 제반 시설 전환, 업무 매뉴얼 변경, 근무교육 비용</li> <li>- ②재배치로 발생하는 물적 비용(엔지니어링, 장비도입, 소프트웨어 구입,</li> </ul> </li> </ul>

22) 연방법률 체계 Title 1-일반규정, Title 2-국회,.....Title 47, Telegraphs, Telephones, and Radiotelegraphs, Title 50 War and National Defense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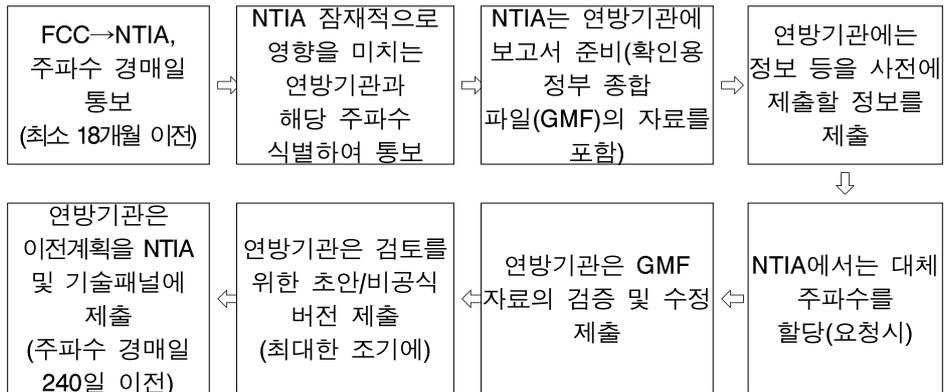
23) 각 세부항목은 경매 및 보상절차에 관한 Chapter 5.의 Sec.309(j) (이하 '47 U.S.C 309(j)')의 조항이며, 보상 범위 관한 Chapter 8.의 Sec.923(g) (이하 '47 U.S.C 923(g)' 또는 'Section 113(g)')의 개정된 (1)~(3)항과 기금 관련한 Section 117 조항에 첨부된 Sec. 118.임

	<p>대지 구입 및 건축 비용)과 거래 비용(재배치와 관련된 외부 자문 비용, 제반 시설 이전 등 재배치로 인해 소요(인정비용)되는 추가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지니어링 검토, 경제 분석 등 FCC에 보고할 재배치 비용 산정(Notice to commission of Estimated Relocation costs)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li> <li>- 정부용 주파수가 종료되기 이전(24), 상업용 주파수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소요되는 1회성 장비 전환 비용(the one-time costs of any modification of equipment),</li> <li>- 교체될 시스템 및 장비의 성능 강화를 유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배치할 주파수 대역에서 시스템 및 장비의 성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증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li> </ul>
<p>재배치 및 보상절차 (기금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치 비용 산정 및 일정 공고, 정부용 주파수 종료 공고: NTIA</li> <li>- 경매 주관: FCC</li> <li>- 주파수 재배치 기금 모집 및 관리: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li> </ul> </li> <li>○ 비용 산정 및 보고 절차(Sec.2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TIA는 재배치 비용을 산정하며, 그 일정을 FCC 및 의회, 일반 회계국에 보고하여 승인 이후 기존 주파수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공지</li> <li>- FCC는 경매를 담당하며, 경매 실시 최소 18개월 이전 NTIA에 공지해야 함. 이를 위해 NTIA는 최소 8개월 이전 FCC에 재배치 산정 비용 및 일정을 공지해야 함</li> <li>- NTIA는 정부용 주파수를 사용했던 당사자들의 요청에 적시적소에 대응하기 위해, FCC에 보고된 비용과 일정에 관한 정보를 재배치 당사자들(federal entities)에게 공개</li> <li>- NTIA는 일련의 보고 과정에서 국가 안보 기준에 입각하여 주파수 재배치 관련 제반 시설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li> <li>. 한편 NTIA는 FCC에 보고할 재배치 산정 비용 및 일정을 의회 (상원 및 해당 위원회)와 일반 회계국에도 공지하여야 함</li> </ul> </li> <li>○ 재배치 시작 및 경매 절차(Sec. 2. (6), Sec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TIA는 정부용 주파수로의 활용이 종료되었음을 공지하고 이로서 정부용 주파수의 재배치와 관련된 NTIA의 집행력은 종료되며, FCC에 의한 경매 절차가 시작됨.</li> <li>- NTIA는 정부용 주파수가 유사한 정도의 시스템 달성하는 수준으로 재배치되었음을 확인된 후 FCC에 주파수 재배치가 완료되었음을 공표함. 이로서 NTIA의 집행력은 재배치 향후 일정과 무관하게 종료됨</li> </ul> </li> <li>○ 보상: 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법(Sec.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성된 기금은 주파수 재배치 등의 처리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되며 그 관리는 예산 감시국(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이 전담</li> <li>- 펀드의 사용은 ① 전용(Appropriate); 펀드의 전액은 주파수 재배치 비용으</li> </ul> </li> </ul>

	<p>로 쓰임</p> <p>② 비용 집행 조건(Transfer conditions); OMB가 집행을 결정한 후에만 가능하며, OMB가 의회 및 해당 기구에 펀드 집행에 관한 일정 및 규모를 공표한 30일 이후에 가능</p> <p>③ 재배치 비용 집행 이후 잔여분은(Reversion of unused funds) 펀드 조성 이후 8년 이내에 국고(General Fund of Treasury)로 귀속</p> <p>o 재배치 추가 비용 및 잔여 기금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파수 재배치 기금은 정부용 주파수를 사용하였던 당사자에게 재배치 비용으로 처리되며, 1회 이상의 집행이 가능하나 후속 비용이 최초 발생한 재배치 비용의 10%를 초과할 경우 OMB의 허가 및 의회 신고 절차가 필요함.</li> <li>- 정부용 주파수를 사용했던 당사자는 OMB에 비용 집행을 보고해야 하며, 주파수 재배치 비용에서 남은 기금에 대해서는 NTIA가 FCC에 재배치가 종료되었음을 공표한 이후 즉시 반환</li> </ul>
--	---

Commercial Spectrum Enhancement Act에 따라 연방의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주파수를 사업자용 주파수로 경매할당 하는 경우에는 FCC와 NTIA간의 협의 등을 경매일정 사전에 통보하고 세부일정을 수립한다.

[그림 3-4] 연방기관의 주파수 이전 계획 수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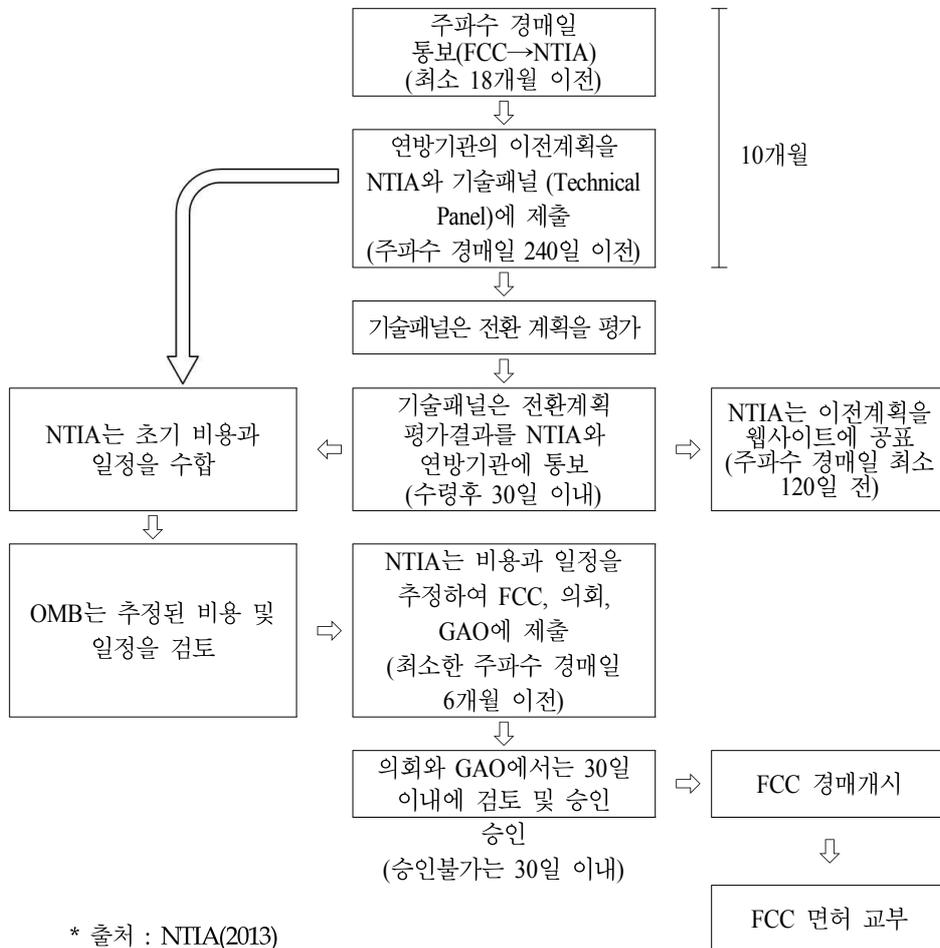


\* 출처 : NTIA(2013)

24) 경쟁 입찰의 도입 및 완료 이전까지 정부용 주파수가 기존의 사용 목적을 당분간 유지해야할 경우

FCC가 특정 대역에 대하여 경매일정 수립전 18개월(1년6개월) 이전에 NTIA에 통보하고 이를 기준으로 NTIA에서는 해당 대역을 이용하고 있는 연방기관에 대한 재배치 비용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하는 절차를 따른다. 통보후 10개월에 거쳐 연방기관의 타 대역 이전에 따른 기술 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예산에 관하여 미국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를 통하여 FCC, 의회,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미국회계감사원)에 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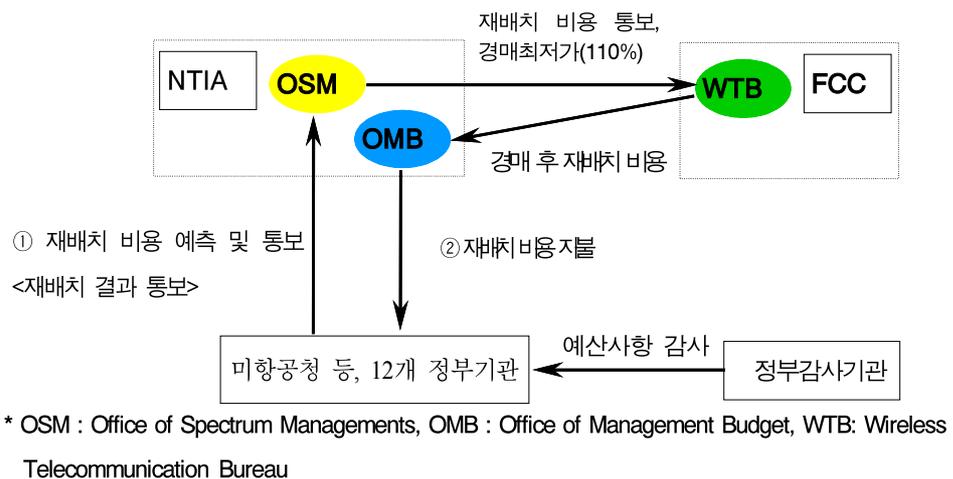
[그림 3-5] 미국의 연방정부 무선국 등의 주파수 재배치 일반 절차



미의회와 GAO는 관련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절차로서 공공기관의 재배치 비용을 산정·결정·승인한다.

미국에서의 공공주파수에 대한 비용분담(Cost sharing)은 국내 전파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상과 산정규모, 대상, 절차가 상이하다. 즉, 국내 전파법에서 손실보상 금액의 산정을 토지수용 등에서 산정하는 것과 유사하여 완전 보상을 경제적 가치와 이전비용, 금융비용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다. 즉, 미국의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지급액은 국내의 손실보상체계를 넘어서는 비용의 보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2003년 개정된 Commercial Spectrum Enhancement Act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회수 및 재배치는 우선, NTIA가 동일한 규모의 시스템을 달성할 수 있는 재배치 비용을 산정하고, 주파수 재배치 일정을 공고한다. 이 후 FCC가 해당 주파수의 경매를 실시하는데 이 때 모집되어야 하는 경매대금은 재배치 비용의 최소 110%이상 이어야 한다. 경매대금은 모두 OMB(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관리하에 주파수 재배치 기금으로 귀속되며, 주파수 재배치 비용을 집행하고 난 잔여금은 펀드 조성 이후 8년 이내에 국고로 귀속된다.

[그림 3-6] 미국의 공공용 주파수 재배치 흐름도



또한 미국에서는 특정 주파수대역을 재배치 함에 있어 Clearing House(주파수 청산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Clearing House는 FCC의 비용정산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비용 산정, 연차별 진입 신규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용분담(균등분배), 재배치 절차 실행, 간접분석을 통해 혼신 및 보상 여부 결정 등을 수행하는데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의 재배치 비용 산정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법인 정보센터로서 인접분기점시험(the Proximity Threshold test)<sup>25)</sup>을 적용하여 혼신 및 보상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Clearing House는 비용분담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재배치 대역 사용자들 간 비용분담 의무사항을 관리한다. 또한 기업의 사적 기밀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비용분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Clearing House를 통해 우선적으로 자발적인 해결을 시도하여야 하며 자발적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구속력 있는 중재와 조정 등 소송절차 없이 대체 분쟁 해결 수단을 사용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FCC는 60일 전 사전고지를 통해 Clearing House의 역할을 취소할 수 있으며, 10일 전 고지를 통해 90일까지 자격을 중지시킬 수 있다. C-H는 6개월마다 주파수 재배치 계획 이행 현황에 대해 FCC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보고서에는 재배치된 링크의 수, 링크 재배치에 지불된 금액, 예상되는 비용 및 수입, 기존 비용 구조의 조정 등에 대한 최근 정보를 수록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주파수의 회수 재배치와 예산절차 등이 사업자용 또는 일반 무선국과 절차를 달리한다.

#### 4. 공공용 주파수 재배치 사례

1.7GHz대역에서 차세대 통신서비스인 AWS도입을 위해 주파수 재배치 및 비용분담(Cost Sharing)을 한 사례가 있는데, AWS 확보 대역폭 총 90MHz 중 45MHz(1,710~1,755MHz)는 12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동 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재배치작업이 2007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서 12개 공공기관이란, Department of Defense(DOD),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FAA),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FBI),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등을 말한다.

---

25) 인접분기점시험(the Proximity Threshold test)은 고정마이크로 웨이브 무선국을 기준으로 X축으로 48km, Y축으로 24km 범위 내에 설치하는 신규서비스의 무선국에 대해 손실보상 산정

<표 3-3> AWS 도입관련 공공기관 주파수 재배치 비용

기관명	채널수	소요기간(개월)	재배치 비용 (기금 지출 비용)
US Dept. of Agriculture	406	36	21,578,486
Dept. of Homeland Security	123	12	89,994,832
Dept. of Defense	429	72	355,351,524
Dept. of Energy	595	72	176,820,959
Dept. of Interior	94	36	25,411,949
Dept. of Justice	123	36	262,821,000
Dept. of Transportation	120	46	5,301,000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	24	89,994,832
NASA	2	24	740,000
Treasury	1	28	5,301,000
Tennessee Valley Authority	94	48	10,687,857
US Postal Service	2	12	1,761,760
합계	1,990	-	1,045,765,199

\* 출처 : NTIA

\*\* Comparable Capability of System 교체 비용 산정 방법

한편, 재배치 비용은 2003년 제정된 Commercial Spectrum Enhancement Act에 의거하여 주파수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용할 수 없는 무선설비와 동일한 성능을 가지는 시스템(Comparable capability of systems<sup>26)</sup>)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청된 손실보상 금액의 적절성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나 절차

26) Comparable Capability of System 교체 비용 산정 방법

- 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시스템을 확인
- ② 모든 시스템의 비용평가(인건비, 여비, 운반비, 숙박비 등) : 철탑/건물의 변경, 안테나 및 관련시설의 변경, 안테나 도파관 변경, 주파수/전파의 변경, 출력 시스템 교체 또는 수정, Channel banks/MUX/DeMUX 장비 변경, 철거/매각/유증하는 시설 등의 비용, 환경복구비용
- ③ 주파수 및 기술분석
- ④ 기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필요성 분석
- ⑤ 간접적인 영향 분석 (내부연결 통신망 등)
- ⑥ 기상, 지형적인 무선국 위치, 규정상 갖추어야 할 부품 등의 교체비용
- ⑦ 행정적 절차 (Engineering diagrams, design control, concept of operations, security certification package 등)에 대한 비용, 시간예측
- ⑧ 망 감시 시스템 구축 비용
- ⑨ 기획 / 일정관리 등 관리비용

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신의(good faith)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기관의 감사를 통해 사후 검증 가능하도록 체계화 되어 있다.

한편, FCC가 경매로 확보한 자금은 스펙트럼 재배치 기금(Spectrum Relocation Fund : SRF)으로 이용하며 해당 공공기관에서 예측한 비용을 근거로 OMB가 대상기관에 지급한다.

## 제2절 일본의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 및 손실보상

### 1. 일본의 공공주파수 관리 부처

일본은 2001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우정성, 총무청, 자치성을 통합하여 총무성을 설립했다. 즉, 「총무성설치법」에 따라 방송·통신, 지방자치 등을 통합관리 하기 위하여 3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규제 기능을 총무성으로 통합·이관한 것이다.

총무성에서는 주파수 이용계획(액션플랜) 수립, 주파수 할당, 무선국 및 방송국 허가 검사 등의 업무를 「총무성설치법」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 < 총무성의 주요역할 >

- (임무) 총무성은 행정의 기본적인 제도의 관리...전파의 공평하고 능률적인 이용의 확보 및 증진, 우편사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 등(총무성설치법 제3조)
- (소관업무) 주파수 할당 및 전파의 감독관리에 관한 사항, 전파 감시, 무선설비 영향성 평가, 전파이용 촉진 등(총무성설치법 제4조제69항)

또한, 총무성, 종합통신기반국의 전파부에서 전파법에 근거하여 전파 관리를 전담한다.

<표 3-4> 종합통신 기반국의 업무(총무성조직령 제12조)

- 유선 또는 무선의 시설의 설치 및 사용의 규율에 관한 업무
- 전기 통신사업 개선 및 조정에 관한 업무
- 비상통신 확보에 관한 업무
- 주파수 할당 및 감독·관리에 관한 업무
- 전파 감시 업무
- 전파의 영향(피해 방지)에 관한 업무
- 전파 이용 촉진에 관한 업무.
- 주파수 사용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 전파 감리 심의회 사무

## 2. 일본의 주파수 재배치 손실보상 관련 법제도 및 절차

일본에서는 2003년 이동통신 및 디지털 방송을 위한 주파수 확보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현황조사제도 및 주파수 재배치 제도 등을 법제화 하였다. 이는 총무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네트워크에 의한 국가 보안의 확보, 무선 IT 산업의 육성,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였다.

총무성은 전체 주파수 대역을 3개로 구분하여 매년 1개 대역의 이용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4년에는 WLAN의 도입을 위해 기존 M/W 대역(4.9GHz~5.0GHz)의 고정무선국을 재배치하였다. 또한 주파수 분배변경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되는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의 평가 결과 및 주파수 이용 환경의 변화 등을 근거로 순서대로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DTV 전환 및 신규이동통신서비스 도입을 위해 700MHz 및 800MHz 주파수 대역을 정비하였는데, 이동통신과 TRS등이 함께 사용하고 있던 800MHz 대역을 통신사업자인 NTT 도코모와 KDDI에게 각각 30MHz씩 재배치하고 2012년 이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표 3-5> 2013년까지의 일본 주파수 분배변경 실행 계획

주파수 대역 (단위 : Mhz)	회수, 재배치	이전기간	검토결과
26.175 이하	회수	1년	- 방송중계용, 1년 이내 재배치 가능토록 준비
90~108 (CH1~3)	회수 및 재분배	'11.7.24일	- 방송 주파수 디지털화 따라 해당대역의 용도변경 - 해당 대역의 서비스 수요조사
150 대역	260Mhz 재배치	디지털화 시기	- 260Mhz 대역에 방재용 무선통신을 집중 재배치
170~220 (CH4~12)	회수 및 재분배	'11.7.24일	- 방송 주파수 디지털화 따라 해당대역의 용도변경 - 해당 대역의 서비스 수요조사
400 대역	260Mhz 재배치	디지털화 시기	- 260Mhz 대역에 방재용 무선통신을 집중 재배치
710~770 (CH53~62)	회수 및 재분배	'11.7.24일	- 2011. 7. 25일부터 “이동통신용”분배
831.5~832 886.5~887	400Mhz 재배치	'10.5.31일	- 400 Mhz 대역 디지털화 기간('07. 9. 30)에 따라 분배변경 공항무선전화통신(공항 MCA)
846~850 901~903	260Mhz 재배치	디지털화 시기	- 260Mhz 대역에 방재용 무선통신을 집중 재배치 - 지역방재 무선통신용
836~838 891~893	회수	'07.5.30일	- 07.5.30일까지 이용종료 추진 후, 유효이용 검토
810~960	800Mhz 재편	'12년까지	- 아날로그 TV 종료 후 700/900Mhz 대역 “이동통신용” 분배
1468~1477 1516~1625	대역정비	'07.9.30일	- 주파수대폭 축소 후 여유주파수 유효이용 검토

\* 자료 : 총무성

총무성에서는 이동통신 및 디지털TV용 주파수 확보 및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효율 조사제도 및 주파수 재배치 제도를 정립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비용산정 전담 기관(ARIB)이 관련규칙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 관련 규정은 일본 전파법 제7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 목적으로 주파수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통상의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전파법 손실보상 등의 규정
<p><b>전파법 제71조(주파수등의 변경)</b> ① 총무 대신은, 전파의 규제 및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 무선국의 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 한정하여 해당 무선국(등록국 제외)의 주파수 혹은 안테나 전력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등록국의 주파수, 안테나 전력 혹은 인공위성국의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가 있다.</p> <p>② 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주파수 혹은 안테나 전력의 지정의 변경 또는 등록국의 주파수 혹은 안테나 전력 혹은 인공위성국의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의 변경과 관련된</p>

손실을 해당 무선국의 면허인등에게 보상해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보상해야 할 손실은, 동항의 처분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전파법 제76조의3** ① 총무대신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파수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또는 주파수 변경을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생략> ... 해당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등록국의 주파수의 변경을 명해 또는 해당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무선국의 면허등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무선국 주파수의 지정 변경 또는 면허의 취소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을 해당 무선국의 면허인에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

한편, 보상 금액의 산정 대상은 전파를 계속 이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무선국으로 정책 전환의 결과로 회수를 기대할 수 없는 투자 자본의 미회수 부분과 설비의 철거 비용, 및 신규 설비 금융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과거의 설비투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손실보상은 유효기간 5년을 기준으로 손실보상 산정(이자비용)하고 10년을 기준으로 금융비용 산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2000년 이후 일본이 IT산업의 발달과 휴대전화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무선국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주파수 수요증가에 따른 주파수 결핍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무선국간의 간섭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파수 할당 계획 또는 방송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변경할 경우, 전파의 적정한 이용 확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파수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무선설비 변경 공사를 하려는 면허인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특정 주파수 변경 대책 업무27)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2001년 6월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후 이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27) 특정 주파수 변경 대책 해당 업무

- ① 낡은 무선 시스템에 의한 주파수 사용이 주파수 할당 계획 등의 변경 후 10년 이내인 것
- ② 낡은 무선 시스템과 동일한 모양목적의 무선 시스템이 사용하는 주파수의 비율이 3/4 이하인 것
- ③ 특정 신규 개설 무선국에 대한 주파수의 할당이 주파수 할당 계획의 변경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한 것

- i) 성령의 제목을 「특정 주파수 변경 대책 업무 및 특정 주파수 종료 대책 업무에 관한 규칙」이라고 한다.
- ii) 전파의 재배분의 실시에 의해 기존 면허인에 통상 발생하는 비용을 절거하는 무선 설비 등의 잔존 가치 및 대체 설비의 선취득에 수반하는 이자 등으로 한다.
- iii) 등록 주파수 종료 대책 기관의 등록의 신청 수속, 신고 사항 등에 대해 정한다.
- iv) 등록 주파수 종료 대책 기관의 업무의 실시에 관한 수속을 정한다.
- v) 등록 주파수 종료 대책 기관이 면허인에 대해서 실시하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기준 기간(5년 또는 10년)에 대응하여 정한다.

일본 전파법 제71조에 따르면 총무대신은, 전파의 규제 그 외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무선국의 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한정해, 해당 무선국(등록 무선국을 제외)의 주파수 혹은 안테나 전력의 지정을 변경해, 또는 등록국의 주파수 혹은 안테나 전력 혹은 인공위성국의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가 있다. 총무성은 전파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주파수 혹은 안테나 전력의 지정의 변경 또는 등록국의 주파수 혹은 안테나 전력 혹은 인공위성국의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의 변경을 명했던 것과 관련 발생 손실을 해당 무선국의 면허인등에 대해서 보상한다. 또한, 전파법 제71조 규정에 의해 보상해야 할 손실은, 동항의 처분과 관련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정한다. 다만, 보상금액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보상금액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증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의 소에 대해서는 국가를 피고로 한다.

**일본 전파법 제71조** 총무 대신은, 전파의 규제 그 외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무선국의 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한정하여, 해당 무선국(등록 무선국을 제외한다.)의 주파수 혹은 안테나 전력의 지정을 변경해, 또는 등록국의 주파수 혹은 안테나 전력 혹은 인공위성국의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가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주파수 혹은 안테나 전력의 지정의 변경 또는 등록국의 주파수 혹은 안테나 전력 혹은 인공위성국의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의 변경을 명했던 것과 관련 발생 손실을 해당 무선국의 면허인등에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보상해야 할 손실은, 동항의 처분과 관련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4 제2항의 보상금액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보상금액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증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5 전항의 소에 대해서는, 국가를 피고로 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공위성국의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의 변경의 명령을 받은 면허인은, 그 명령과 관련되는 조치를 강의(강구)했을 때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총무 대신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특정 주파수 변경 대책 업무 및 특정 주파수 종료 대책 업무를 특정 기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전파법 제71의 2조에 근거하여 총무대신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파수 할당 계획 또는 방송용 주파수 사용 계획의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 전파의 적정한 이용의 확보를 꾀하기 위해 필요가 있으면(자)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3호에 규정하는 주파수 또는 안테나 전력의 변경과 관련되는 무선설비의 변경의 공사를 하려고 하는 면허인 그 외의 무선설비의 설치자에 대해서, 해당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급부금의 지급 그 외의 필요한 원조를 실시할 수가 있다.

새로운 할당 구분의 무선국중 주파수 할당 계획 등의 변경의 공시와 아울러 총무 대신이 공시하는 것의 면허의 신청에 대해서, 해당 주파수 할당 계획 등의 변경의 공시의 날로부터 기산해 5년 이내로 할당 변경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주파수 할당 계획 등 변경의 공시 때 실제로 할당 변경 주파수의 할당을 받고 있는 구할당 구분의 무선국이 특정 신규 개설국에 그 운용을 저해하는 것 같은 혼신 그 외의 방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기개설국의 주파수 또는 안테나 전력의 변경한다. 이에 따라 총무대신은, 그 공시하는 무선국의 원활한 개설을 꾀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계획을 변경하고 해당 주파수 할당 계획의 변경의 공시의 날로부터 기산해 5년(해당 주파수 할당 계획의 변경이 면허인등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을 감안해 특히 필요 있을 경우, 10년)에 못 미친 범위 내에서 해당 특정 공시국과 관련되는 무선국 구분 이외의 무선국 구분에 할당하는 것이 가능한 주파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주파수의 사용의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할당 기한이 정해진 것에 의해 해당 구할당 기한의 만료의 날까지 무선국의 주파수의 지정의 변경을 신청해 또는 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하는 면허인등에 대해서, 기준 기간에 못 미친 기간내에 구할당 기한이 정해진 것에 의해 해당 면허인등에 통상 발생하는 비용으로 해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충당하기 위한 급부금의 지급 그 외의 필요한 원조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 전파법 제71의 2조** 총무 대신은, 다음으로 내거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파수 할당 계획 또는 방송용 주파수 사용 계획(이하 「주파수 할당 계획등」이라고 한다.)의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 전파의 적정한 이용의 확보를 꾀하기 위해 필요가 있으면(자)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 3 호에 규정하는 주파수 또는 안테나 전력의 변경과 관련되는 무선설비의 변경의 공사를 하려고 하는 면허인 그 외의 무선설비의 설치자에 대해서, 해당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급부금의 지급 그 외의 필요한 원조(이하 「특정 주파수 변경 대책 업무」라고 한다.)(을)를 실시할 수가 있다.

3 신할당 구분의 무선국중 주파수 할당 계획 등의 변경의 공시와 아울러 총무 대신이 공시하는 것(이하 「특정 신규 개설국」이라고 한다.)의 면허의 신청에 대해서, 해당 주파수 할당 계획 등의 변경의 공시의 날로부터 기산해 5년 이내로 할당 변경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을 가능으로 하는 것인 것. 이 경우에 대해, 해당 주파수 할당 계획 등의 변경의 공시때 실제로 할당 변경 주파수의 할당을 받고 있는 구할당 구분의 무선국(이하 「기개설국」이라고 한다.)(이)가 특정 신규 개설국에 그 운용을 저해하는 것 같은 혼신 그 외의 방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한(해), 미리, 기개설국의 주파수 또는 안테나 전력의 변경(기개설국의 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에 한정해, 주파수의 변경에 연줄은 할당 변경 주파수의 범위내의 변경에 한정한다.)(을)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

총무 대신은, 그 공시하는 무선국(이하 「특정 공시국」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개설을 꾀하기 위해, 제26조의 2 제3항의 평가의 결과에 근거해 주파수 할당 계획의 변경을 해, 해당 주파수 할당 계획의 변경의 공시의 날로부터 기산해 5년(해당 주파수 할당 계획의 변경이 면허인등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을 감안해 특히 필요가 있으면(자)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하 이 항에 대해 「기준 기간」이라고 한다.)에 못 미친 범위내에서 해당 특정 공시국과 관련되는 무선국 구분 이외의 무선국 구분에 할당하는 것이 가능한 주파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주파수의 사용의 기한(이하 「구할당 기한」이라고 한다.)(을)를 정하는 경우(전항 각 호 열기 이외의 부분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 두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할당 기한이 정해진 것에 의해 해당 구할당 기한의 만료의 날까지 무선국의 주파수의 지정의 변경(등록국에 연줄은, 주파수의 변경 등록)을 신청해 또는 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하는 면허인등에 대해서, 기준 기간에 못 미친 기간내에 구할당 기한이 정해진 것에 의해 해당 면허인등에 통상 발생하는 비용으로 해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충당하기 위한 급부금의 지급 그 외의 필요한 원조(이하 「특정 주파수 종료 대책 업무」라고 한다.)(을)를 실시할 수가 있다

총무성에 의하여 수립된 주파수 변경 계획은 대역별 주파수 환경에 따라 특정 주파수 변경·종료 대책 업무(제71조의2)로 정하고 지정 주파수 변경·종료 대책 기관(제71조의 3)으로 전파산업회(ARIB<sup>28</sup>)를 지정하여 주파수 회수·재배치를 시행한다. 손실보상금(급부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주파수 대역정비 및 재배치를 수행한다. 주파수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는 시설물의 회계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

28) ARIB : 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s

여 회수·재배치의 시점에 따라 기간손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파수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수를 기대할 수 없게 된 투자 자본의 미회수 부분(잔여가액)과 신규설비의 조기구매에 따른 금융비용(기간손실) 등을 보상의 범위로 인정된다. 한편, 잔여가액은 기존 설비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고(장부가액) 다시 사용 내용연수가 종료된 이후의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10%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간손실은 신규설비의 조기구매에 따른 금융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전파이용권은 국민의 공유 전파자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사용권에 관련된 대가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히 이와 같은 주파수 재배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ARIB)을 지정하여 주파수 회수·재배치를 실행한다.

### 3. 일본의 주파수 재배치 손실보상 재원

일본의 주파수 손실보상은 신규사업자의 이익과 기존면허인의 전체이익을 감안하여 신규면허인의 재배치 비용 부담비율은 50%를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다. 신규면허인이 확정되어 전파를 전용하는 형태 또는 불특정 다수의 신규면허인이 정하여지지 않고, 재배치 실시까지 신규면허인을 확정하지 않는 “전파를 공용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전파를 전용하는 신규면허인의 비용부담 비율을 50~100%로 설정하고 있으며, 신규면허인이 면허 신청 시 부담액을 신청하고, 면허심사수속 시 평가하여 구체적인 부담액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부담액의 납부 시기는 5년 이내에 분할 납부 또는 면허 시 일괄 납부하는 방식인데 분할 납부할 경우 금리를 감안한다. 또한, 주파수를 공용하는 신규면허인의 부담 비율은 10년 동안 50%를 납부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재배치 계획 수립 시 신규면허인 수나 참가 시기가 불확정적이어서 신규면허인으로부터 매년 일정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전파이용료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주파수 재배치 비용은 전파이용료를 사용하여 정부에서 사전에 급부금을 지급하고 신규면허인 및 기존 시설자(전파이용료를 납부하는 전체 이용자를 의미)가 구상하는 제도로서, 전파이용료 급부금 지급 근거 법은 전파법 제103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이며 구 할당기한을 정하는 주파수 사용 면허인에 보상을 위한 5할 이상을 전파이용료로 납부하도록 규정(전파법 제103조의2)되어 있다.

일본은 신속한 전파의 재배치 시 기존 면허인의 경제적 및 기술적 영향 등을 조사하여

재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급부금제도를 도입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급부금의 관리 및 운영은 현재 ARIB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일본 전파법에서는 ARIB를 특정주파수변경대책기관 및 전파유효이용촉진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 전파법 제71조의3 제9항에 “총무대신은 주파수변경대책기관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령으로는 전파법 제71조의2에 특정주파수변경대책(주파수할당계획 및 방송용주파수할당계획에 따른 변경) 및 특정주파수 종료대책업무(전파법제26조의2 제3항 전파이용현황 평가 결과에 따른 변경)가 규정되어 있으며, 전파법 제71조의3 및 4에 특정주파수변경대책 및 특정주파수종료대책 기관과 급부금 교부결정을 받은 면허인의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전파법 제99조의11에 전파감리심의회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제1항 제71조의3 제4항 및 11항에 급부금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급부금의 지급 대상은 전파 이용상황 조사·공표 결과를 근거로 재배치 대상이 되는 모든 무선국이며 전파감리심의회의 심의 후 공표한다. 그리고 급부금 지급 시기는 전파를 사용하는 권리를 잃은 시기(전파의 최종사용기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종사용시한보다 빠르게 주파수 이용을 종료(주파수 재배치 원활화를 위함)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급부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급부금보상은 주파수 재배치 계획 공표에서 5년 이내에 최종사용기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보상 금액산정 대상은 무선국 건설에 투자한 것과는 상관없이 정책전환 결과로서 회수를 기대할 수 없는 미회수 부분과 설비의 철거비용, 신규설비의 예산을 당겨 취득한 금융비용 등이다. 급부금액은 「과거의 설비투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 「새롭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설비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전파의 재배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선설비에 대하여 최종사용기한의 잔존가치<sup>29)</sup>를 급부대상<sup>30)</sup>으로 제한한다. 다만, 재배치계획 공표로부터 10년 후에 잔존가치가 남는 경우 해당 10년 후의 잔존가치를 공제한 금액을 급부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여러 다른 기업에서 서로 다른 내용연수나 감가상각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내용연수 등을 이용하여 잔존장부가액 등을 산정한다.

29) 잔존가치 = 잔존장부가액 - 잔존가액(취득가격의 10% 상당)

30) 급부대상 = 최종 사용기한에 대한 잔존가치 - 계획공표로부터 10년 후에 대한 잔존가치

다음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철거비용<sup>31)</sup> 및 신규설비의 취득비용 합계액에 대하여 전도기간 중의 금융비용<sup>32)</sup>을 급부 대상으로 한다. 상기합계액의(철거비용+금융비용)의 1/2은 차입금, 나머지는 자기자금에 의해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산정하고 철거비용, 신규설비의 취득비용, 전도기간, 적용이율<sup>33)</sup>을 규정한다. 전도기간은 재배치 계획공표 5년 후의 시점(다만, 미리 주파수할당 계획에 대하여 이전시점에 최종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사용기한)에 재배치 계획에 의하여 새롭게 정한 최종 사용기한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한다.

<표 3-6> 일본의 손실보상금 산정식

구분	주요 내용
철거 무선설비의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 할당기한 만료일의 철거 무선설비의 금액</li> <li>○ 구 할당기한에 관한 주파수할당계획의 변경의 공시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경과하는 날의 철거무선설비의 금액</li> <li>○ 취득일이 같은 자산은 다음 산정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합계로 하는데, 철거 무선설비 중 정액법 상각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총무대신이 정하는 방식으로 <math>C \times (1 - (n_3 + n_4) \times r_2)</math>으로 계산되며, 이외의 철거 무선설비는 <math>C \times (1 - r_1)^{n_3} \times (1 - r_1 \times n_4)</math>로 계산</li> </ul>
철거 무선설비의 잔존 가액	○ 철거 무선설비의 취득가액에 잔존비율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등에 관한 성령 별표 제10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결과 값을 적용
철거 무선설비의 내용 연수	○ 철거 무선설비 감가상각비의 산정에 사용되는 내용연수(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연수 등에 관한 성령 별표 제1 또는 2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중 그 사용에 관한 철거 무선설비의 수가 가장 많은 것에 근거한 총무대신이 규정하는 연수를 적용
철거 무선설비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 철거 무선설비의 철거에 소요되는 평균적인 비용에 근거하여 총무대신이 정하는 금액을 적용

31) 철거비용 유형화된 설비마다, 떼어내는 비용, 운반비용 및 폐기비용의 합계액을 정형화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32) 금융비용 = (신규설비 취득비용+철거비용) × 금리 × 전도기간

33) 차입이율은 계획공표 시점에 있어서의 장기우대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대상면허인의 실제 시장 조달금리가 장기우대 대출금리와 크게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이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자기자금의 운용이율은 정기예금의 이율 등을 참고로 하고, 전도기간을 감안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자율(전파법 제27조 제2호)	○ 상환기간이 5년인 국채이자율 그 외의 시장금리를 감안하여 총무 대신이 정하는 연리를 적용
-------------------	---

해당 손실보상의 산정기준과 대상, 시기 등에 대한 최초 검토사항 및 시행계획 등에 대한 내용은 부록 2와 3에 별도로 정리하였다.

#### 4. 일본의 주파수 재배치 관련 손실보상의 세부내용

##### 가. 주파수 재배치 관련 손실보상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및 공표·평가 제도를 토대로 전파를 분배할 경우, 기존의 주파수 이용자들이 과거에 투자하여 취득(또는 설치, 건설 등)한 무선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철거비용, 신규시설 취득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총무성은 전파이용료(국내 전파사용료와 유사)를 재원으로 특정 주파수 종료대책업무를 실시함으로써 재분배 대상이 되는 기존 면허인에게 기존설비의 잔존가치 등을 보상하고 주파수의 재분배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급부금(이하 손실보상금이라 한다.) 제도를 마련했다.

##### [참고] 급부금 제도 관련 전파법 규정

##### 제71조의2 특정주파수변경대책 및 특정주파수종료대책 업무

- \* 특정주파수변경대책: 주파수할당계획 및 방송용주파수할당계획에 따른 변경
- \* 특정주파수종료대책: 전파법 제26조의 2 제3항 전파이용현황 평가 결과에 따른 변경

##### 제71조의3 특정주파수변경대책 및 특정주파수종료대책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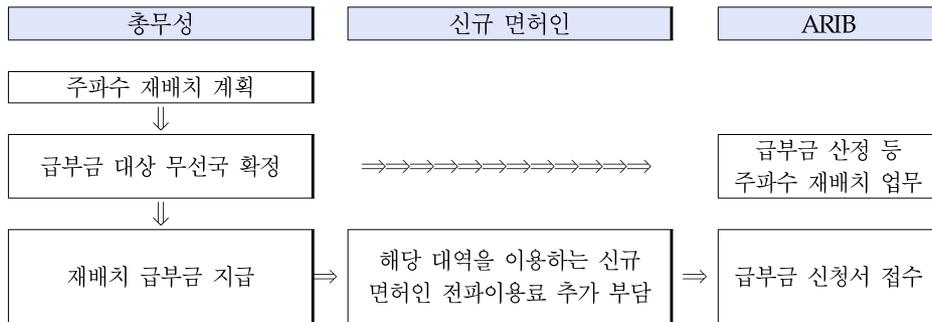
##### 제71조의4 급부금 교부결정을 받은 면허인의 의무

주파수 재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기존 면허인의 경제적, 기술적 영향을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전파관리심의회에 자문을 구하고 주파수 할당계획 변경을 확정하여 적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때, 손실보상에 대한 비용 산정은 전담기관인 사단법인 전파산업회(ARIB)<sup>34)</sup>에서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데 전파산업회 산하에는 '특정주파수변경대책기

34) 전파산업회(社団法人電波産業会, 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s(ARIB))는 총무성 관할의 사단법인으로 주로 일본의 휴대전화 및 디지털 방송에 관한 표준 규격 제정 업무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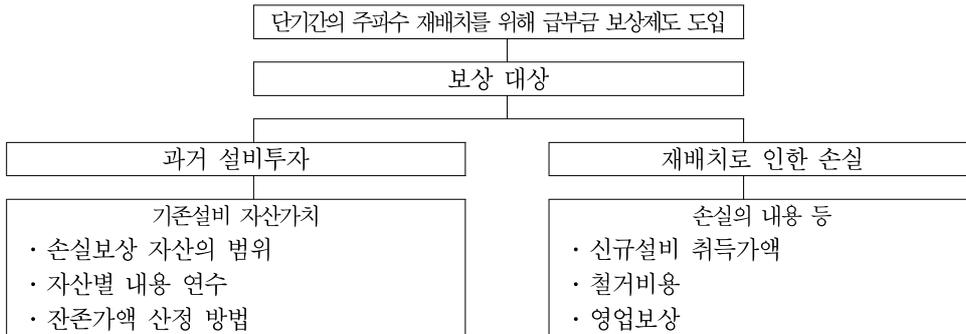
관'과 '전파유효이용촉진센터'에서 수행한다.

[그림 3-7] 일본의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개요



특히, 일본에서는 손실보상금은 전파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면허인이 정책 전환의 결과로 △일정기간 이내에 전파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무선설비의 구입 및 투자에 대한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그림 3-8] 일본의 손실보상금 산정 시 검토사항



한편, 일정기간이란 전파법 상의 면허 유효기간(5년)을 기준으로 하며, 면허 유효기간 이후 주파수 변경 조치 등을 감안한 기간이다.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일본 헌법 제29조3항<sup>35)</sup>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파법 제71조에서는 총무대신이 공익적 목적으로 주파수를 필요로 할 경우, 초기 무선국 설립 목

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선국의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지정 및 변경 등을 명할 수 있으므로 보상불요론도 존재한다.

보상불요론이란 무선국면허가 면허인에 대하여 전파를 이용할 수 있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무선국에 할당된 주파수에 있어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할당을 종료하고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이라는 견해이다. 만약 재면허를 하지 않는다면 손실보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일본에서는 손실보상은 사용권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다. 이 때, 전파이용권에 대한 보상은 불필요하며 일본 전파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변경 명령에 대한 보상과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범위를 의미한다. 한편, 손실보상금의 산정요소는 설비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과거의 설비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과 「새롭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각각 산정하여 합한 금액으로 정하는데, 이 때 「새롭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란 주파수 할당기간 손실에 따른 금융비용의 성격을 의미한다. 무선설비에 대한 손실보상은 무선설비의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①의 경우 다시 주파수 회수 시점이 재배치 공표 이후 5년 이내 일 경우와 5년 이후일 경우로 나뉜다.

무선설비의 내용연수 종료시점이 재배치 공표 이후 5년 이상~10년 이하에 존재할 경우
· 주파수 재배치 공표 이후 5년 이내에 주파수를 회수 할 경우는 다음표와 같이 기존설비의 잔존가치와 국내 금융비용과 유사한 새롭게 발생하는 손실을 산정
· 다만, 재배치 공표 이후 5년 이상 10년 이내에 주파수를 회수할 경우에는 과거 설비 투자에 대한 손실만을 보상하며, 신규설비에 대한 금융비용 보상은 하지 않음
※ 단, 건축물과 철탑 혹은 법적내용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에 주파수 사용기한을 재분배 계획 공표로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로 정함

또한 전파법 상에서의 무선국 면허 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파수 재배치 공표 후 5년 이후에 주파수를 회수할 경우에는 「새롭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즉 국내 전파법에서 금융비용과 유사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35) 일본 헌법 제29조제3항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서 공공을 위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다.

<표 3-7> 일본의 재배치 공표 이후 기간과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구분	주요 내용
5년 이내	기존 시설 : 주파수 사용종료기간에서의 잔존가치 - 법적 내용연수 종료 시점의 잔존가액(취득가격의 10% 상당) 신규 : (신규설비의 취득비용 + 철거비용) × 금리 × 사전철거기간(초기할당기간-재배치 공표로 인해 앞당겨진 사용기간 <sup>36)</sup> )
10년 이내	주파수 사용종료기간에서의 잔존가치 - 재배치 공표로부터 10년 후의 잔존가치(단 재배치 공표로부터 10년 이후에 잔존가치가 없을 경우 '0')
10년 이후 내용연수 종료	기존 시설 : 주파수 사용종료기간에서의 잔존가치 - 신규 : 재배치 공표로부터 10년 후의 잔존가치 (신규설비의 취득비용 + 철거비용) × 금리 × 사전철거기간(초기할당기간-재배치 공표로 인해 앞당겨진 사용기간)

**[참고] 일본의 손실보상금 산정 세부내용**

○ 과거 설비투자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 주파수 재배치에 의해 철거된 무선설비에 대한 잔존 가치

$$\text{잔존가치} = \text{잔존장부액} - \text{잔존가액(취득가격의 10\% 상당)}$$

- 재배치계획의 공표로부터 10년 후에 대한 잔존가치가 남는 경우는 해당 10년 후의 잔존가치를 공제한 금액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함

$$\text{손실보상 대상} = \text{최종 사용기한 잔존가치} - \text{계획 공표로부터 10년 후 가치}$$

- 기업에서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을 이용하여 잔존 장부가액을 산정함

○ 새롭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 철거비용 및 신규설비의 취득비용의 합계액에 대하여 이전 기간 중의 금융비용을 손실보상대상으로 함

$$\text{손실보상 비용} = (\text{신규설비의 취득비용} + \text{철거비용}) \times \text{금리} \times \text{사전철거기간}$$

36) 예를 들어, 2020년 까지 무선국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주파수 재배치 공표로 인해 2018년까지 무선국 허가기간이 줄어들어, 무선설비를 회수해야 한다면 사전철거기간은 2년(2020-2018)이 된다.

- 위 합계액의 1/2은 차입금, 나머지는 자기자금에 의해 조달되는 것을 전체로 하여 산정, 철거비용, 신규 설비의 취득 비용, 이전기간, 적용 이율은 다음과 같음
- 철거비용: 유형화된 설비마다의 비용, 운반비용 및 폐기 비용의 합계액을 정형화하여 정하는 금액
- 신규설비 취득비용: 철거되는 설비의 취득 비용과 동액
- 사전철거기간: 재배치 계획공표 5년 후 시점으로부터 재배치 계획으로 새롭게 정한 최종사용기한
- 적용이율: 차입이율은 계획 공표시점에서 장기 우대 금리

## 5. 일본의 주파수 변경 대책 업무와 공공기관 주파수 이용 종료

일본전파법 제4조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할 경우 총무대신의 면허를 득하여야 한다. 면허의 면제는 ①발사하는 전파가 현저하게 미약한 무선국 중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②의 국 법령에 근거하는 무선국의 검사에 관한 제도에서 기술 기준 적합 증명 제도 유사한 것에 따라 무선 설비의 검사, 시험 등을 실시하는 자(선박국 등), ③공중선 1w미만으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④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하는 혼신 기타 방해를 주지 않도록 운용 할 수있는 무선국 중 총무 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면허를 득한 무선국은 일본 전파법 제71조에 따라 주파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총무대신은 무선국의 주파수 또는 공중선 전력의 지정의 변경 또는 등록 국의 주파수 또는 공중선 전력 또는 인공위성 국의 무선 설비의 설치 장소의 변경을 명령에 의해서 생긴 손실을 해당 무선국의 면허인 등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무선국에 대한 주파수를 변경함에 있어 ‘특정주파수변경대책업무 및 특정주파수 종료대책업무’ 특정기관에 이의 업무를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전파법 제71조의3에 따라 총무대신이 지정하는 기관이 ‘지정주파수 변경대책 기관’의 지위를 득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총무성령으로 정한 손실보상금에 관한 급부금(給付金)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손실보상금을 산정한다. 또한 해당 기관은 ‘특정주파수변경대책업무 및 특정주파수종료대책업무에관한규칙(총무성령 제104 호)’에 따라 해당 금액을 변경 대상 기관에 통보(규칙 제32조)하고 지급한다. 해당 급부금은 총무성의 예산 범위에서 책정하고 있다.

‘특정주파수변경대책업무 및 특정주파수종료대책업무에 관한 규칙’ 세부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규칙의 목적은 제1조에 명기되어 있는데 특정 주파수 변경 대책 업무 및 특정 주파수 종료 대책 업무에 관하여 전파법의 위임에 기반 사항 및 법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하고 있으며 관련 무선국을 정함에 있어 제3조의 2호에 공공 업무용 인명 및 재산의 보호, 치안의 유지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을 포괄하고 있다.

특정주파수변경대책업무 및 특정주파수종료대책업무에 관한 규칙

제3조(무선국의 목적)2호 공공 업무용 인명 및 재산의 보호, 치안의 유지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

즉, 해당 업무는 총무성에서 전파이용료를 재원으로하는 교부금을 기준으로 일반 무선국 및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무선국 또한 이에 해당 된다.

전파산업회(ARIB)의 특정주파수종료대책업무 사례로는 2004년 9월7 일(총무성 고시 제 698호)에 따라 등록주파수종료대책기관으로 등록 되어 동년 9월17일(총무성 고시 제716 호)에 따라 2004년 총무성 고시 제623호에 관련된 관동 지역 등의 4.9GHz ~ 5.0G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고정업무 무선국 면허인을 대상으로 특정주파수종료대책업무를 추진한바 있다. 2004년 총무성 고시 제829호에 따라 관련 업무를 개시하여 면허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최한 바 있다.

2005년도 2004년도에 이어 6개 면허인에 50건의 급부금(교부금) 지급신청이 있어 1,122 대의 무선설비(송수신 장치 828대, 회선 전환 장치 294 대)의 철거비용을 지급 하는 등 지정 업무를 완료 하였다. 해당 업무에 의해 철거된 무선 설비 8개 면허인 1,592 대이다.<sup>37)</sup>

전파산업회의 특정주파수종료대책업무에 대한 업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면허인(시설자)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영향을 조사한 후 실질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37) <http://www.arib.or.jp/syokai/jigyokeikaku/jigyouhoukoku17-2.html>

한 급부금(손실보상금)을 지급하되 총무대신은 전파산업회(ARIB, 특정주파수종료대책기관)가 수행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금은 회수·재배치 비용의 50% 이상은 전파이용료로 충당하고, 50% 이내에서 신규서비스 사업자가 부담하는 형태이다.

<표 3-8> 일본 전파산업회(ARIB)의 특정주파수종료대책업무 흐름

업무	주요내용
급부금의 신청	특정주파수 종료대책업무에 관계되는 무선국 면허인의 취득시기, 취득가격을 기재한 서류
↓	
교부금의 결정 및 통지	내용심사, 현지 조사 후 급부금 지급결정 * 급부금 신청 위하는 신청서 제출 20일 이내 철거설비 변경사항 발생시 승인 사항 예정기간내 완료가 불가능 할 경우 급부금 교부 취소
↓	
실적보고	무선설비 철거완료후 15일 이내 철거실적 보고
↓	
급부금 확정	실적보고 내용심사 등 급부금 지급결정 내용이 적합할 경우 금액 확정
↓	
급부금 지급	확정후 지급

\* 일본 전파법 및 특정주파수변경대책업무 및 특정주파수종료대책업무에관한규칙 재구성

## 6. 일본 헌법과 토지 수용등의 손실보상 법체계

일본헌법 제29조 제3항<sup>38)</sup>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손실보상이 없는 재산권 침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로는 평등원칙(제14조) 및 생존권·국가의 사회보장의무(제25조) 등이 있다. 즉, 손실보상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부과된 부담이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되어야

38) 일본헌법 제29조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하에서 공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한다는 것을 요청하는 평등원칙과 생존권·국가의 사회보장의무규정을 중요한 규정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개별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sup>39)</sup>, 대표적인 법이 토지수용법이다. 토지수용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요건, 수단 및 효과와 이에 수반되는 손실보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측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수용법은 손실보상의 원칙적 사항만을 규정하며, 구체적인 보상항목과 보상방식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상하여야 할 범위를 명확히 하며, 보상항목을 합리적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보상액 산정방법을 일관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손실보상기준은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것이 1962. 6. 29 각의결정된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요강」(이하 「보상기준요강」이라함)이다. 보상기준요강은 각의 결정된 사항이므로 그 구속력은 행정부 내부에 그치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각 성청의 공무원을 직접 구속하지도 않는다.

### 제 3 절 프랑스의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 및 손실보상

#### 1. 프랑스의 주파수 재배치 관련 손실보상

프랑스는 사업자간의 자율적 협상에 의한 주파수 재배치 한계를 보완하고, 이동통신 및 디지털 TV의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1997년 주파수 회수·재배치 제도를 법제화<sup>40)</sup>하였다. ANFR(Agence Nationale de Frequences, 주파수 관리청)<sup>41)</sup>은 주파수 재배치와 관련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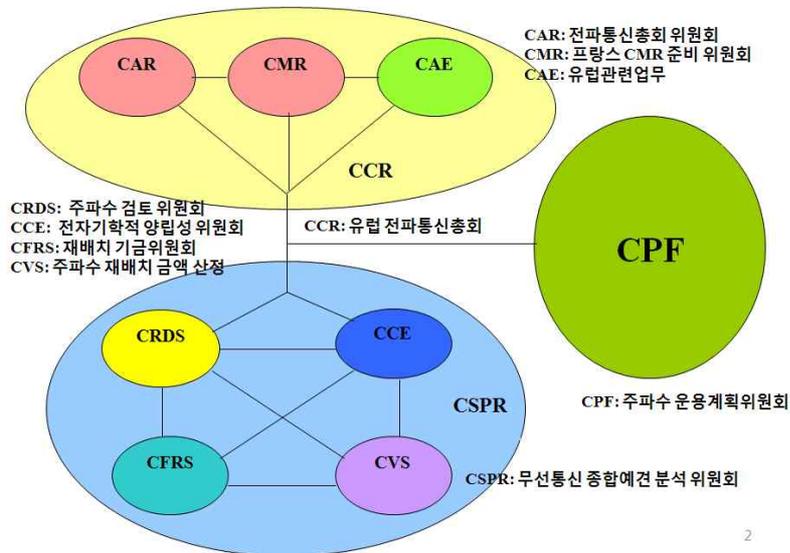
39) 이 경우 법률상의 보상규정은 헌법상의 요청을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별법률이 손실보상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헌법 제29조 3항에 근거하여 헌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본의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40) 우편 및 전자통신법 Articles L41, R52(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41) ANFR은 주파수의 계획 및 재배치, 주파수 관리, 할당, 조정 및 주파수 사용 허가, 감시

사항을 결정하고 기금을 관리·감독하며 ANFR 산하 위원회로는 특별자문위원회(SCA), 주파수 평가위원회(CVS; La commission de revue et de valorisation du spectre), 주파수 재배치 기금 위원회(CFRS; La commission du fonds de réaménagement du spectre), 주파수 계획위원회(CPF; La commission de planification des fréquences), 주파수 심사위원회(CRDS; La commission de revue et de valorisation du spectre) 등이 있다.

[그림 3-9] 프랑스의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비용산정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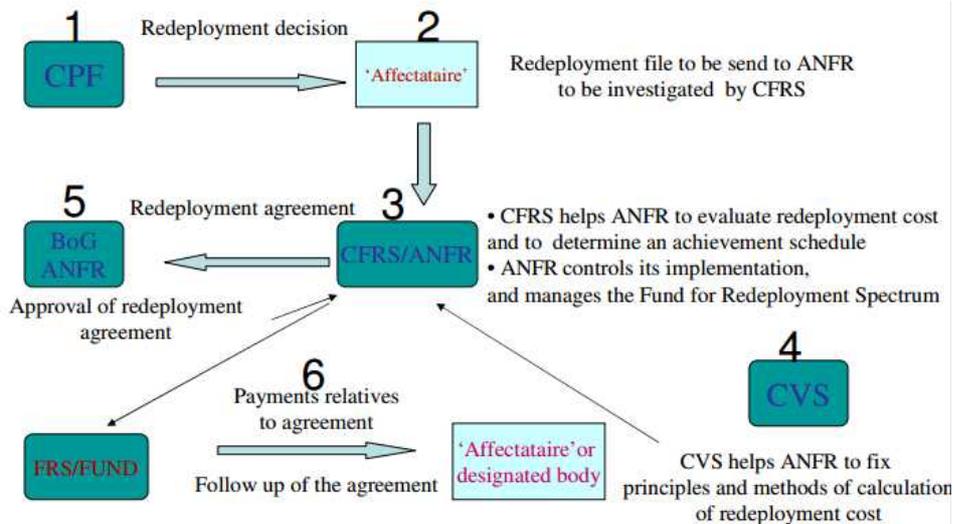
## 2. 프랑스의 주파수 재배치 기금 및 비용 산정 방법 및 절차

프랑스의 주파수 재배치 기금제도는 1997년 도입되었으며, 일반예산과는 구별되는 특별 예산으로 주파수 관리청(ANFR)에서 운영 및 관리한다. 주파수 재배치 기금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재무부로부터 매년 300만 유로씩 조달되었으나, 2001년도 이후에는 ① 재배치가 필요한 공공자치국의 기부와 ② 주파수를 할당받는 사업자들이 납부한 할당대가 중 일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주파수 회수 재배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파수 관리 비용의 원칙과 재배치 방침 및 평가준비, 재배치 실시를 위한 일정 계획, 절차의 감독 체계화, 재배치 기금 관리 등을 담당한다.

로 주파수 재배치 기금이 마련되었다. 또한, 주파수의 회수·재배치는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선 주파수의 회수 및 재배치 요청이 이루어지면 주파수계획위원회(CPF)에서 주파수의 수요를 조사하고, 주파수 검사위원회(CRDS)의 주파수 활용도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주파수 분배 및 이용과 관련된 이슈를 조사한다. 이후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주파수 재배치 기금위원회(CFRS)에 회부하면 주파수평가위원회(CVS)에서 재배치 비용 및 산정방법 등에 따라 재배치 비용을 평가하고, 일정을 확인하여 주파수 관리청(ANFR)에 협약안을 제의한다.

[그림 3-10] 프랑스의 주파수 재개발 및 예산 흐름



\* 자료 : ANFR(2009), Spectrum redeployment

프랑스의 주파수 관리정책은 전반적으로 규제기관 중심의 전파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효율과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기금을 통한 보상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1997년 주파수재배치 기금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신규 면허인과 기존 면허인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나, 1998년부터는 이 기금을 통해 기존 면허인의 손실을 우선 보상하고 이후

해당 비용을 신규 면허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주파수의 회수 및 재배치를 결정하는데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U_{incomer} > U_{outcomer} + C_{removal}$  일 경우 : 회수 및 재배치가 사회 및 경제적으로 최적(optimal)임

$U_{incomer} < U_{outcomer}$  일 경우 : 회수 및 재배치가 사회 및 경제적으로 최적(optimal)이 아님

$U_{outcomer} < U_{incomer} < U_{outcomer} + C_{removal}$  일 경우 :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U_{incomer}$  : 신규 이용자의 효용

$U_{outcomer}$  : 기존 이용자의 효용

$C_{removal}$  : 기존이용자의 회수 및 재배치 비용

주파수의 회수 및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의 규모는 장비의 단순재조정인 경우와 신규 네트워크의 구축인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고려한다.

<표 3-9> 프랑스의 손실보상 산정기준 개요

구 분	주요 고려사항
신규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별 장비 가격 × 네트워크의 각 장비 수</li> <li>- 구축비용 + 서비스 제공비용</li> <li>- 신규 시스템 훈련비용 및 유지 비용</li> <li>- 주파수 관련 면허 사용료, 로얄티, 세금 등</li> </ul>
터미널(Terminals)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터미널 가격 × 설치된 터미널 수</li> <li>- 설치와 조정비용 × 설치된 터미널 수</li> <li>- 터미널 변경으로 발생하는 고객 서비스 비용</li> <li>- 유지비용 등</li> </ul>

기존 장비의 단순 재조정(re-tuning)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배치 비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다수의 주요 터미널(Terminal)을 교체하거나 신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한편, 2007년 주파수관리청(ANFR)에서 발표한 주파수 재배치 기금의 총 규모는 11,538 백만 유로로 기금에서 주파수 회수·재배치 지원을 위해 집행된 금액은 총 9,490백만 유로이다.

<표 3-10> 주파수 재배치 기금 조성 현황(단위:백만유로)

년도	주파수 재배치(FRS) 기금 규모	주파수 재배치(FRS) 기금 지불액
1998년	1,325	23
1999년	1,630	1,113
2000년	1,450	9
2001년	2,050	1,750
2002년	1,250	1,000
2003년	475	1,200
2004년	0	1,250
2005년	553	1,040
2006년	1,880	700
2007년*	925	510
합 계	11,538	9,490

\* 자료: ANFR(2007), 2007년은 11월 기준임

### 3. 주파수 재배치 사례

프랑스의 주파수 재배치 사례로 먼저 DTV 전환을 위한 주파수 재배치 기금 사용 사례를 볼 수 있다.

주파수 관리청(ANFR)은 주파수 회수·재배치 공표 시 인구밀도, 커버리지, 회수·재배치 기간(보다 신속한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등을 고려하여 재배치 기금의 최대 지불가능액과 최소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때, 주파수 재배치로 인한 손실보상 비용은 기존시설의 잔존가액과 신규장비도입비용(송신기교환비용+수신기교환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무선설비의 재허가로 인해 재사용이 가능한 설비의 가치를 차감 값으로 설정한다.

기본산식 : 손실보상비용 = 신규장비도입비용+잔존가액-절감비용

- 신규장비도입비용: 재배치로 인해 새로 구입해야 하는 장비의 비용
- 잔존가액: 재배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장비의 장부가액  
(취득원가-감가상각 누계액)
- 절감비용: 해당 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고정 무선설비 중(예:중계기) 일부를 재배치 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설비의 사용을 허가함에 따라 재사용이 가능해진 설비의 가치

<표 3-11> 프랑스의 DTV 전환 관련 주파수 재배치 기금 지급 현황

협약체결번호	최대금액(백만유로)	실제 지불액(백만유로)
02-FRS-04	2.00	1.30
03-FRS-01	4.00	4.00
03-FRS-02/03-FRS-03	6.90	3.70
03-FRS-04	12.10	6.70
04-FRS-01	3.30	2.80
04-FRS-02	2.30	1.70
05-FRS-01	1.50	1.30
05-FRS-02	5.40	3.90
05-FRS-03	4.40	3.70
05-FRS-04	8.20	5.50
06-FRS-01	3.80	3.80
07-FRS-01	4.90	4.90
07-FRS-02	8.90	8.90
합 계	67.70	52.2

\* 자료: ANFR(2007)

또한 2009년 기준으로 국방부(Defence)가 점유하고 있는 1.8GHz대역에 GSM을 도입하기 위하여 7백만 유로가 소요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해당 대역은 국방과 관련한 인프라 네트워크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FRS위원회는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프랑스의 국가에서 서비스의 동일한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를 조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이 7백만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였다.

#### 4. 프랑스의 토지 수용 등 손실보상

프랑스에서는 공용수용에 있어서 단행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공용수용법전이 그것이다. 프랑스 공용수용법전은 입법편과 명령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용수용법전을 근거로 하여 프랑스에서의 공용수용절차를 보면 행정적 절차와 사법적 절차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행정적 절차는 공용성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전조사와 여러 기관의 의견이 있고 공용성의 선언과 수용목적물의 결정이다. 그리고 사법적 절차로는 수용명령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과 보상액의 결정절차가 있다. 따라서 보상과 관련한 것은 사법적 절차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정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의 관장사항이 된다.

프랑스에서는 손실보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의 제17조는 “재산권은 신성하고 불가침한 권리이므로,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필요가 이를 명백히 요구하고 정당한 사전보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이를 명백히 요구하고 정당한 사전보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이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정당한 사전보상’이 프랑스 손실보상의 헌법상의 근거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 헌법법원도 1989년 7월 25일 도시계획과 신도시개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가 공용수용과 이에 대한 보상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라는 의미로 판시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법원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이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1973년 12월 27일 결정에서 인정한 이래로 프랑스 인권선언이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 이외에 공용수용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실정법으로는 민법을 들 수가 있다. 프랑스 민법전 제545조에서는 “만약에 사전에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고 공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도 그의 재산을 양도하도록 강요될 필요는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유럽인권협약의 제1추가 의정서의 제1조를 보면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그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고용을 목적으로 국제법의 일반원칙과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 안에서 아니면 누구도 그 자신의 재산권을 박탈당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공용수용과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실정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용수용법전이다.

토지수용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법인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사전에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면서 토지소유권을 양도할 것을 강제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프랑스의 토지수용제도는 사전청문절차, 공익인정신고, 양도선고, 보상금 결정, 소유권 이전 등의 단계를 거쳐 시행된다.

## 제4절 영국의 주파수 재배치 및 손실보상 체계

### 1. 주파수 재배치 관련 손실보상

최근 영국은 DTV 전환에 따른 800MHz 대역 재정비를 위해 PMSE(Program Making & Special Event) 사용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정책을 발표하였다. 손실보상대상자는 2008년 2월부터 Ofcom이 69번 채널을 38번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인 2009년 2월까지의 기간 중 69번 채널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Ofcom이 제시한 보상기준을 만족하는 장비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명백한 이유에 의해 2009년 2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69번 채널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교체의 필요성 및 교체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장비를 신규장비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장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기존장비를 조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조정사항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존장비를 대여해 사용했던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고, Ofcom이 이를 평가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보상대상으로 판정되면 보상절차에 따라 동일하게 보상이 이루어진다. 기존장비의 대체비용 총액이 £6,000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에 대한 영수증과 자산등록대장, 재고목록 등 증거서류를 제출해 장비에 대한 소유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Ofcom은 보상금 산정 시 보상청구건 별 정확한 보상금액의 산정과 행정·규제비용의 최소화, 시기적절한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시설자 보상청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 보상금 산정절차의 간편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 보장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PMSE 시설자들과의 보유장비 및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인터뷰를 통해 자금규모 및 PMSE 시설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11] 영국 PMSE 보상금액 산정방법(2012년 10월 이후 이전)

	Input	Key	Example
Inputs	Cost of replacement equipment	a	£1000
	Asset life – replacement equipment	b	15
	Date of equipment surrender	c	1/10/2012
	Discount rate	d	5%
Calculation	Funding period (in years)	$e = 6 + (1/10/2012 - c)$	6.0
	Annual depreciation	$f = a/b$	£67
	Cumulative depreciation to 2018	$g = e * f$	£400
	Residual value on 31/12/2018	$h = a - g$	£600
	Discount factor	$i = (1+d)^{-e}$	0.75
	Discounted residual value	$j = i * h$	£448
	<b>Funding</b>	<b><math>k = a - j</math></b>	<b>£552</b>

Note: The discount factor in row i is calculated to give the value of £1 in 2018 in the year of surrender, taking into account the discount rate. The funding period (e) is always equal to or greater than 6.

\* 출처 : Ofcom(2010)

[그림 3-12] 영국 PMSE 보상금액 산정방법(2012년 10월 이전에 이전)

	Input	Key	Example
Inputs	Price	a	£1000
	Asset life	b	15
	Date of surrender	c	01/11/2011
	Discount rate	d	5%
Calculation	Funding period (in years)	$e = 6 + (1/10/2012 - c)$	6.92
	Annual depreciation	$f = a/b$	£67
	Cumulative depreciation to 2018	$g = e * f$	£462
	Residual value on 31/12/2018	$h = a - g$	£538
	Discount factor	$i = (1+d)^{-e}$	0.71
	Discounted residual value	$j = i * h$	£384
	<b>Funding</b>	<b><math>k = a - j</math></b>	<b>£616</b>

Note: The discount factor in row i is calculated to give the value of £1 in 2018 in the year of surrender, taking into account the discount rate. The funding period (e) is always equal to or greater than 6.

\* 출처 : Ofcom(2010)

## 2. 영국의 토지 수용 등의 손실보상 체계

영국에서는 존 로크(John Locke)의 소유권이론의 등장 이전부터 사적 소유권의 보장은 국가 기본법의 하나로서 인정되어 왔다. 그리고 재산권의 존엄성은 영국 보통법의 주요 원리이며, 또 사전 소유권은 기본권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특히 인격적 자유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도 이러한 기본권 내지 인격적 자유의 일부이고, 그 보장은 기본법에 속하여, 보통법원리의 핵심부분을 접하여 왔다. 물론 영국의 토지법 하에서, 토지는 법형식상으로는 국왕이 소유하는 것이고, 토지의 보유자는 모두 국왕으로부터 이를 임차한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임대차에 기초한 보유권의 한 형태인 자유토지보유권이 소유권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되고, 그것에 기초한 토지의 이용 및 처분의 자유는 보통법상 보장되어 왔다.

영국에서 손실보상 및 그 전제가 되는 토지의 강제취득에 관한 통일된 법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한 현행의 제정법으로서는, 토지보상법, 강제구입법, 토지취득법, 도시전원계획법, 계획 및 보상법, 주택법, 도로법 등이 있다. 1961년에 제정된 토지보상법은 제5조에서 보상액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토지보상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1973년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3년의 개정 토지보상법은 첫째, 고속도로, 공항 기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야기된 가치하락에 대한 새로운 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둘째, 공공사업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권한을 수권하며, 셋째, 정부 당국에 의해 토지로부터 강제퇴거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규정을 설정하고, 넷째, 강제수용과 계획장애에 관한 법을 개정하며, 다섯째 1970년의 도로법 제35조를 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자는 소유자가 임의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매입하는 권한을 의회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그 권한에 기초하는 토지의 강제구입의 절차는 강제구입명령을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강제구입명령을 작성하는 기업자는 통상 지방자치단체, 즉 도의회, 군의회 및 런던시의회이다. 읍의회는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는 없지만 군의회가 그에 대신하여 토지를 강제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회 및 기타 강제취득의 주체인 기업자는 강제구입명령이 국무장관에 의해 승인되지 않으면 실제로 토지를 강제구입할 수 없다. 국무장관은 지방에서의 공개심문 후에 필요에 따라 강제구입명령을 그대로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또는 명령을 변경하여(예컨대 일부토지를 제외하든지) 승인할 수 있다. 취득기관은 강제구입명령을 작성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가능한 한 이것을 공표하고, 그 작성 후에는 신속하게 이것을 승인 받기 위하여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자는 강제구입명령의 작성 후 일반적으로는 3년 이내에(기업자와 권리자가 그 보다 장기의 기간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 기간 내에) 강제구입통지, 즉 수용통지를 송달하고 그 강제구입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권리자(강제구입명령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잔여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임차인으로서 통지의 송달까지 적어도 6개월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자)는 강제구입명령이 발하여짐으로써 재산의 시장가치가 하락하고, 이것을 공개시장에 매각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기업자에 대해 재산가치하락의 통지를 발송하여 당해 토지를 미리 구입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통지의 발송에 관한 비용은 권리자가 부담한다.

### **3. 영국의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

영국의 ofcom에서 상업용(Commercial) 및 공공주파수(국방용을 제외)를 관리하고 군주파수는 국방부(MoD:Ministry of Defence)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계이다. 국방부에서는 Ofcom 및 UKSSC(UK SPECTRUM Strategy Committee, 주파수전략위원회)에서 협의·분배된 군 주파수대역을 관리한다. 공공 주파수를 관리함에 있어 공공주파수 대역 개방, 공유, 조정 등을 위하여 주파수전략위원회(UKSSC : UK SPECTRUM Strategy Committee)를 두어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는 부처간에 협의를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3-13] 영국의 공공주파수 협의 관계



[그림 3-14] 영국의 공공주파수 협의 기관 조직도



\* 자료출처 : UK SPECTRUM Strategy Committee, 「A Strategy for Management of major Public Sector Spectrum Holdings」, 2009.4

UKSSC의 역할은 공공, 산업 및 개인분야의 주파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 분배 계획 등의 정책 수립, 주파수 관리 및 제도를 관리하는데 2009년에는 5개의 그룹에서 영국의 주파수 분배(UKFAT : UK Frequency Allocation Table) 업무, ITU 및 국제 주파수 조정 등 대응 업무, 영국의 비상서비스 및 공공안전분야에 대한 주파수 전략 위원회(UKSSC) 및 Ofcom에 자문, 공공주파수 대역 관리 및 공유방안 수립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절 해외사례 시사점

이상과 같이 해외에서는 공공기관이 이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은 일반무선국과 분리하여 별도의 절차(개별 규정)에 따라 시행하거나, 전문보상기관에서 주파수변경대책의 업무를 일괄 수행하고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수행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문보상기관에서 수행하는 사례는 미국과 일본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미국은 상업용 주파수에 대한 이전에 전문보상기관이 이를 수행하고 있고, 일본은 상업 및 공공용 주파수 이전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관서간에 손실보상금을 이용하기 곤란할 경우 손실보상전문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국내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보상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국내 토지수용 사례를 보더라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이의 기관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공공주파수의 회수·재배치를 추진함에 있어 일종의 부처간 협의체 또는 자문기구를 두어 부처간에 이를 논의하고 있다. 즉, 해당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등이 이의 기구에서 논의되고 담당부처에서 추진한다.

미국은 사전에 NTIA를 중심으로 연방기관의 재배치 비용을 검토하고 이를 예산관리국과 협의하고 이후 국회와 GAO등에서 이의 금액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승인후 관련 비용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때 발생한 재배치 비용은 주파수 경매금액으로 이를 보충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주파수종료기관을 설치하여 공공용 무선국 등에 대하여 해당 무선국의 철거 및 이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관련 기금을 마련하여 국방부등에게 자원재개발 비용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물론 해외의 정부조직이 국내와 상이하여 관련 예산이 별도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하나 공공기관의 주파수 재개발과 관련한 사항은 사전에 별도로 협의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제를 살펴보면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거나 집행하는 등의 획일적인 법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상, 항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개별법에서 각각 공익사업의 특성이 상이하고 이에 대한 절차가 상이하여 이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상항목 및 금액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 수용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은 토지의 경우 거래사실 비교법, 수익법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손실자산의 가치를 산정하고 있으며, 수용시점에서 경제적 내용연수 등을 산정하여 잔존가치를 보상하는 방법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일반무선국과 공공기관이 이용중인 무선국 모두 재배치 및 보상절차, 산정방식 등 일관된 법체계를 따르고 있고 현행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보상금을 집행하는 방식과는 상이하다.

## 제4장 국내 타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상 비교

### 제1절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의 사례

이하에서는 행정기관이 손실보상의 대상(손실보상금액의 수령 대상)이 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2013년 5월, 군부대로 막혀있던 방화대로를 개통하기 위하여 군부대 육군 17사단 101연대(강서구 공항동 36번지 주변)가 14년만에 이전에 합의한 사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방화대로 250m 구간의 연결이 가능해 졌고, 이 일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군부대 이전은 국방부와 서울시, 강서구청이 함께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이전절차를 추진하고, 이전 예정지의 토지보상은 강서구청장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화성비봉지역의 택지개발을 위하여 (구)건설교통부, (구)건설부, (구)농림부, (구)재무부, (구)재정경제부, 지자체(화성시, 황성군) 등의 소유 토지를 손실보상을 통하여 수용한 사례가 있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9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42호(2007.4.30.)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화성비봉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바 있으며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863,306㎡이며 이중 행정부처 또는 지자체소유의 토지 등은 75,231㎡ 전체 면적의 9% 수준이다.

<표 4-1> 화성비봉지역의 택지개발의 행정부처 및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수용면적

(단위 : m<sup>2</sup>)

지목(42)	임야	묘지	구거	답	대	도로	전	하천	합계
국토교통부	-	-	-	452	87	49,337	62	17,476	67,414
기획재정부	321	511	-	-	-	-	165	-	997
농림축산식품부	-	-	1008	-	-	-	-	-	1,008
산림청	198	-	-	-	-	-	-	-	198
경기도	1,949	-	-	-	3,200	40	-	-	5,189
화성군	-	-	-	-	-	243	-	-	243
화성시	-	-	-	-	-	182	-	-	182
합계	2,468	511	1,008	452	3,287	49,802	227	17,476	75,231

\* 주 1) 출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98호

2) 행정부처명은 정부조직 2013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명기

원칙적으로 토지 등의 보상가액은 공시지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함)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에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는 보상금에서 제외된다.

한편, 행정부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점유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절차와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절차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공통점으로는 양측의 손실보상의 근거가 되는 「공익사업을

4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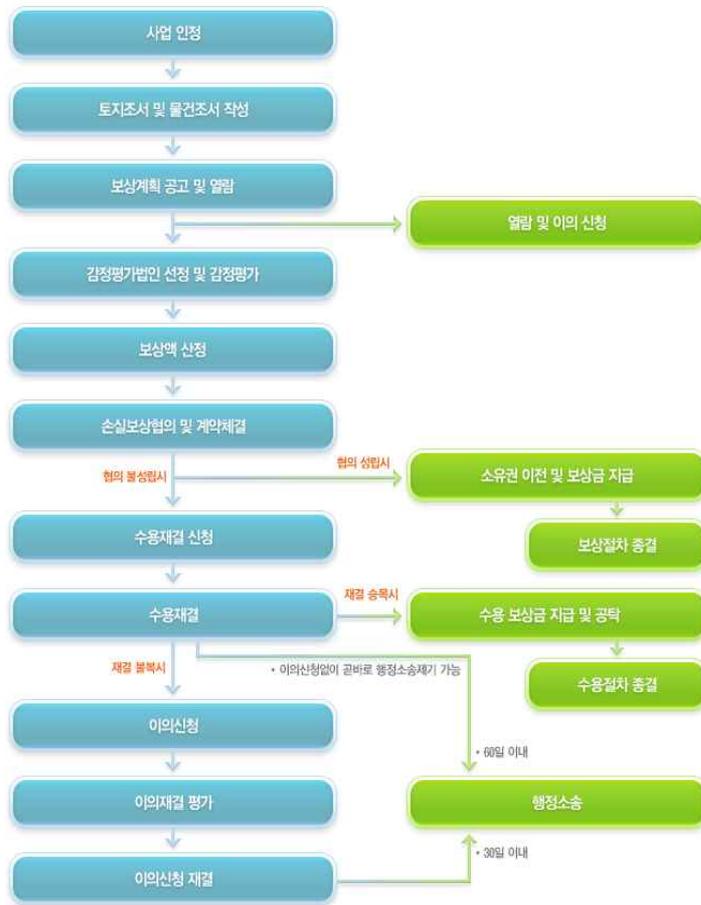
구거 :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다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전파법」에 행정부처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 점유, 운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사인의 자산을 수용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운용되고 있다.

[그림 4-1] 토지수용의 손실보상 절차



양법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하는 주체와 수령받는 주체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주체를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법인격이 정부가 아니라 별도의 독

립적인 법인에서 수행(공단/공사 등 사업시행자→행정부처, 공공기관)한다.

이에 대해, 「전파법」에서는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지급의 주체가 미래 창조과학부로서 행정부처가 되며 무선국을 타대역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주체가 행정 부처(미래창조과학부→행정부처, 공공기관)이다.

한편, 행정부처 간에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등의 절차는 관련 공익사업 등을 시행하는 데 있어 시행부처의 정책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해당지역 6,797,608.7㎡를 수용하고 42,947세대를 수용한다는 고시를 발표했다(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754호).

<표 4-2> 위례지구 국방부 토지수용 사례

			(단위 : m <sup>2</sup> )
구분	개발토지 면적	국방부 소유 토지	비율
면적	6,797,608.7	4,888,179.00	72%

\* 출처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4호 재계산

이후 해당 지역의 토지 72%를 점유·소유하고 있는 국방부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와 국방부의 사전협의 없이 진행되어 최초 산정된 손실보상금(약 5조원) 보다 높은 6조원으로 양부처 간에 합의되어 택지개발을 시행했다. 이는 국방부가 대체용지 및 대체시설을 단기에 확보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 제2절 타법의 손실보상 규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손실보상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고 다른 법의 준거가 되는 법률로서, 동법 제6장과 동법

시행령 제5장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일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61조에서 제82조까지는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의 전액(全額)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즉, 손실보상의 원칙은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현금보상의 원칙, 사전보상의 원칙, 개인별 보상의 원칙, 일괄보상의 원칙 등이다.

## 2.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은 법 제68조에서 동법 제11조 제1항4)에 따른 조치에 의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당해 손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68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3.7.]

**제11조(토지 출입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소방방재청장,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 소방방재청장,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43) 동법 제11조 제1항은 중앙본부장, 소방방재청장, 지역본부장 또는 중앙본부장, 소방방재청장, 지역본부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3.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동 법에서는 제13조에서 관련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 대해 보상할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제13조(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조사·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굴토(掘土)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굴토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3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해당 토지소유자등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③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④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액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 4. 하천법

하천법 제35조에서는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① 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 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에서는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제57조(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행위나 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2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시행자  
3. 제5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매립면허관청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측량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공유수면관리청  
② 공유수면관리청, 매립면허관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6. 광업법

광업법 제69조에서는 토지의 출입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물을 제거한 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p><b>제67조(토지의 출입 및 장애물 제거)</b> ① 광업권설정을 출원하려는 자,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광업출원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에 관한 측량 또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애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때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b>제68조(토지 출입권 및 사용권)</b>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상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즉시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지체 없이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알려야 한다.</p> <p><b>제69조(토지의 출입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b> 제67조와 제68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한 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

광업권 보상은 공익사업 등의 이유로 광물 채굴의 허가를 받은자의 광업권 소멸, 광산 휴업 및 관련 시설물의 철거, 이전 등에 해당하는 손실 보상금을 산정한다.

<표 4-3> 광업권 손실보상 산정기준

구 분	산정 기준 개요
광업권의 소멸	광산평가액 - 이전 또는 전용이 가능한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 + 이전비
광산휴업	휴업기간을 고려하여 조업 중인 광산이 토지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순수익을 자본환원한 금액

“광산평가액”은 상태, 입지조건 및 광산물의 시장성 등을 참작하여 생산규모 가행연수

와 연수익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구체적인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text{광산평가액} = \text{연수익} \times \frac{1}{\text{배당이율} + \frac{\text{축적이율}}{(1 + \text{축적이율})^{\text{가행연수}} - 1}} - \text{투자비}$$

## 7. 수산업법

수산업법 제81조에서는 손실을 입은 자가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1조(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5조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49조제1항과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2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6조(보상의 청구)**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허가·신고 번호 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처분사항과 그 날짜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조사·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보상신청인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 ③ 수익자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요청하였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자가 포함된다.

## 제5장 공공주파수 손실보상 규정 개정방향

### 제1절 현행 규정의 검토

현행 전파법 제7조는 손실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해당 시설자와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사항 또한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보상금액 징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손실보상 금액 결정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제4항은 손실보상에 대한 신규이용자의 직접 보상에 관련된 사항, 제5항은 주파수할당 대가 반환, 제6항은 손실보상 및 제2항의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항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의 산정기준과 지급절차, 징수금의 징수, 주파수 할당 대가의 반환 및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표 4-4> 전파법 상 손실보상 법규

<p><b>제7조(손실보상 등)</b>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와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시설자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li><li>2.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동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li><li>3.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해당 주파수를 운용할 때에 제1순위 업무를 보호하여야 하고, 제1순위 업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li></ol>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 해당 주파수에 대하여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p>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그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할 수 있다.</p>
---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주파수할당 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및 수입으로 하고, 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한다.
-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절차,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 및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전파법상 손실보상 규정을 살펴보면 전파법상 손실보상금액의 수령 대상자는 해당 시설자와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 즉 시설자 등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파수의 특징 상, 손실보상의 대상(손실보상금액의 수령 대상)이 국민이 아닌 행정기관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헌여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헌법과 개별법인 전파법의 관계를 고찰하면 헌법 제23조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재산이 보장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산권이 제한될 경우의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자는 국민으로서, 현행 전파법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자 등에 중앙정부가관이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로 실행은 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손실보상 절차상 특정 행정부처에서 점유하고 사용하는 토지 등을 금전적인 보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부처의 토지 등을 수용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이 관찰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과 전파법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행 전파법의 손실보상을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과 같이 운용할 수 있는 사항이다. 다만, 중앙관서간의 손실보상이 적정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이다.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을 통해 검토할 수 따르면 제47조에서는 예산의 이용(移用)·이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고 원칙으로서 정해져 있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

<표 5-5> 국가재정법 제47조

<p><b>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b>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p> <p>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

이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 예산은 장, 관, 항 등의 예산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들간의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예외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손실보상의 경우 법정보상금으로서, 예산의 이용 허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백승준(2011)에 의하면, 예산 이용의 허용 대상을 11가지 정도로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보상대상이 일반 국민인데 보상의 주체인 중앙관서가 상이할 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표 5-6> 국가재정법 예산 이용 허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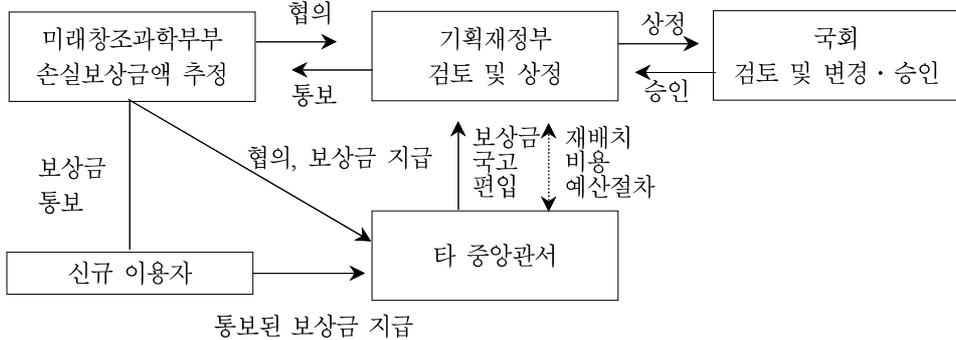
<p>▶ 이용 허용 대상</p> <p>①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p> <p>②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p> <p>③ 배상금, 국선번호금, 법정보상금</p> <p>④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p> <p>⑤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p> <p>⑥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p> <p>⑦ 기업특별회계의 조직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p> <p>⑧ 재해대책비(전염병대책비 포함)</p> <p>⑨ 반환금</p> <p>⑩ 선거관련경비</p> <p>⑪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급여</p>
---

\*출처: 법률저널, 백승준의 행정학 교실-예산집행에서의 신축성 부여 방안(2011, 11)

또한 전과법 제7조 제4항에서는 신규 이용자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령하는 법인격이 차이가 있어 중앙관서간의 불필요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신규 이용자가 있지 않은 주파수 대역정비, 주파수 회수 등에는 이의 절차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과법 제7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타 중앙관서에 직접 보상할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가 직접 보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양 경우를 막론하고 전과법 시행령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전과법 시행령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라 그 금액을 산정하되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60호)의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절차를 운용하는데 있어 손실보상금액의 수령처가 누구냐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리 산정되는 불일치성은 없다. 다만 해당 손실보상금액을 타 중앙관서에 지급을 할 경우에는 해당 손실보상금이 타 중앙관서에 별도의 회계계정이 없어 이를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이를 기획재정부를 통하여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 중앙관서는 해당 손실보상금액과 별도로 해당 중앙관서가 보유하고 있는 무선국의 재배치 비용을 별도의 예산과정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규정에 따라 타 중앙

관서와 별도의 협의없이 재배치를 시행할 경우 타 중앙관서의 예산과정 이후 예산을 집행하는 기간에 회수 또는 재배치를 완료할 수 있다.

[그림 5-2] 중앙관서의 손실보상 예산 절차



또한 주과수 사용승인을 통하여 해당 무선국을 설치 운용중인 중앙관서에서는 재배치 비용이 손실보상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을 증액하거나 전부를 요구하는 등의 중앙관서간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행 전파법 내지 관련 고시에서는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에 따라 통상의 손실을 보상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토지 수용에 따른 산정금액 이외에 금융비용을 보상하는 등으로 보상금액의 완결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손실보상금액 이상의 비용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전무한 사례로 판단된다. 또한 현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하는 대역에 관련 무선설비를 모두 설치하여 기존에 이용하는 행태 그대로 이를 요구할 수 있는데 토지수용과 관련된 손실보상<sup>44)</sup>, 전파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토지수용의 사례에서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동일한 토지로 보상하는 현물보상은 원칙적

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으로 상이한데 이는 토지 등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을 손실 보상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으나, 무선국 또는 무선설비는 해당 설비의 가격과 공사비용이 물가와 연동되며 다른 여하한의 이유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제2절 공공용 주파수 재배치 및 손실보상 개정방향

### 1. 개요

현행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승인 주파수의 손실보상은 헌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별법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이 수령처일 경우 해당 부처에서는 예산회계상 수입으로 처리되어 국고에 귀속된다. 전술 한바와 같이 현행 전파법의 손실보상 가액은 신규 설비에 대하여 전액 보상하지 않아 해당 부처에서는 별도의 예산 과정을 거쳐야한다. 예산 절차에 따르면 행정기관(지자체) 등이 기재부와의 예산협의 및 확정, 국회승인, 반영, 집행을 고려하면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헌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수령하는 것이 위헌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중앙행정부처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재배치에 필요한 예산 또는 설비구축 공사를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정방안은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공공부문의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의 산정 및 지급 등의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법, 둘째,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 셋째, 토지수용 절차법과 같이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선정하거나 설립을 하는 방법이다.

### 2. 공공부문 손실보상 절차를 별도로 마련

이는 현행 전파법 손실보상 제도의 구조 안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손실보상 대상이 행정기관일 경우 현행 산정기준 및 방법이

아닌 신규설비 구축을 통한 보상방법을 모색하여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손실’ 보상과 일반 손실보상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것에 일관성이 결여 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승인 주파수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관련 재배치 비용을 비용분담(Cost sharing)으로 지칭하여 기존에 주파수를 이용하는자가 주파수를 재배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신규이용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이와는 약간 상이하지만 프랑스에서도 주파수 재개발(spectrum redeployment)하는데 있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에 지원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특정주파수종료업무에 관하여 공공용, 안보·치안에 대한 무선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의 재원을 전파이용료로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용 주파수의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고 지급하는데 있어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전파법 제7조의 손실보상 규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주체를 시설자로 한정하여 승인주파수를 제외하여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승인된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국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는 주체가 다르다하여 관련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규모 등을 달리하면 형평성의 문제에 봉착된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 주파수에 대한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의 산정하는 방식은 동일하되 이에 대한 지급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금으로 재배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에서 이용하는 주파수는 사용승인 주파수와 별건 주파수를 지정하는 허가체계를 따르고 있어 이를 모두 포괄하여야 한다.

<표 5-7> 헌법취지에 부합하는 손실보상 대상을 정하는 전파법 개정(안)

전파법 (현행)	전파법 (개정안)
제7조(손실보상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와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7조(손실보상 등) ① _____ 시설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전파법 (현행)	전파법 (개정안)
<p>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lt;생략&gt;</p> <p>&lt;신설&gt;</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 해당 주파수에 대하여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 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규이용자가 시설자에게 그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할 수 있다.</p> <p>⑥ &lt;생략&gt;</p> <p>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절차,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 및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 또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이용하는 주파수를 회수 또는 재배치할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 _____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p> <p>⑤ _____ 하거나 제2항의 지원금액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p> <p>⑦ &lt;생략&gt;</p> <p>⑧ _____,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사항, 제3항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제6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 및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위와 같이 전파법을 개정함으로써 중앙관서 또는 행정기관간에 손실보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위헌여지를 제거할 수 있고, 별도의 특별회계법을 제정하지 않고 해당 지원금액을 타 중앙관서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시행령 제8조의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이후에 8조의2를 신설하여 사용 사용승인 주파수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표 5-8> 헌법취지에 부합하는 손실보상 대상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

전파법 시행령(현행)	전파법 시행령(개정안)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p>제8조의 2(사용승인 주파수 등에 대한 지원)</p> <p>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주파수의 재배치에 대한 지원은 제8조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준에 의한 범위 내에서 신규시설의 구매 및 공급, 철거 또는 설비교체와 관련한 사업수행 지원 등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을 실시할 경우 법 제6조의2제3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지원방법 및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⑤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직접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지원방법 및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p>

### 3. 부처간 협의를 고려한 전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현행 공공기관에서 설치 및 운영중인 무선국의 손실보상 절차는 사업자 또는 일반 무선국의 손실보상 절차와 동일하여 전파법에서 규정한 주파수 재배치 행정소요일(재배치 공고 후 240일~300일)과 행정기관의 예산 과정간의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행정소요일 내에 해당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국을 철거하거나 타 대역으로 이전하

여야 한다. 하지만, 행정기관(중앙관서)의 예산 과정에 따라 차년도 관련 정부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1년 전에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임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파수 재배치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행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상의 문제에 대한 관련 부처간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및 영국 등의 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협의기구는 전파법에서 규정한 주파수 재배치 행정소요일과 행정기관의 예산 처리 과정 간의 기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공고일 이전에 구성되어 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할 것이다. 이러한 협의기구 구성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협의기구를 국무총리산하에 두어 운영하는 방법, 둘째, 협의기구를 미래창조과학부산하에 두어 운영하는 방법이다. 국무총리산하에 두어 운영할 경우 장점은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통제하기 용이하다. 단점은 이 경우 다른 행정기구의 운영과 마찬가지로 획일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파수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 현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다음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하에 두어 운영할 경우 장점은 주파수 및 주파수 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최적의 이용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단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다른 행정부와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어려우며, 협의체 구성 및 통제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현행 전파법 제6조의2<sup>45)</sup>에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주파수 재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타 중앙관서,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재배치 비용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 회수 재배치와 관련한 행정 소요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협의하되 관련 예산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자를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45)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③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표 5-9> 부처간 협의절차를 고려한 전파법 및 시행령 개정(안)

전파법 (현행)	전파법 (개정안)
<p>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li> <li>2.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帶域)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절차,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주파수 대역 정비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의2 &lt;좌동&gt;</p>
전파법 시행령(현행)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p>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li> <li>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자공학·전파공학 등 주파수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li> <li>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주파수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li> </ul> </li> </ol>	<p>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내지 ⑥ &lt;좌동&gt;</p>

<p>중에 있는 사람</p>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⑦ &lt;신설&gt;</p>	<p>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수 또는 재배치하는 주파수가 사용승인 주파수이거나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이용하는 주파수일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위원으로 구성한다.</p>
--	--

시행령 제7조의2제7항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는 사용승인 또는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의 재배치 비용 및 지원금액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행정기관에서 타 대역으로 이전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에 관하여 검토하되 이를 기획재정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재정적, 기술적 검토를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특정대역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사항 검토, 기존 손실보상금액으로 산정된 지원금액에 대한 검토, 이전기간에 대한 검토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주파수 대역이전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의 기술패널을 마련하여야 된다. 또한 각 기술패널에서 검토한 결과에 대한 비용의 산정에 대한 적정도 동시에 검토하여 이를 기획재정부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4. 사업시행자 선정 또는 설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46)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이러한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동법 제20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에 일정한 사항47)을 적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업인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상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같이 주파수 손실보상의 경우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국내 SH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와 함께 미국과 일본사례에서도 관찰되어 지는데 별도의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기관에 이의 업무를 위탁하여 손실보상금등을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 전담기관은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업무를 특정 기관에 위탁하는 형태이다.

국내 토지수용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공사의 경우가 많은데 전파법에서 규정한 주파수는 사인이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물임에 따라 별도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공사는 적절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공단은 경제·사회정책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

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47)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예정지,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이유

법인기업으로서 행정 능률화를 목적 국가의 법인화된 행정기관이다. 물자의 집하, 매매, 토목시설의 건설, 대여 등의 기업적 기능을 위해 국가와는 별도로 독립법인체를 설립하여 경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을 인정받은 단체이다. 이에 반하여 공사(공기업)는 공기업의 형태로서 정부출자는 공단과 동일하나 자체적으로 인사권과 독립된 재산권 보유 가능하며 공단에 비해 경제적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사회나 경영단이 별도로 구성되며 재무적으로는 독립적이어서 별도의 재산권이 인정되나 예·결산은 정부의 예·결산에 준한다(수입원은 세금의 많은 부분을 충당).

<표 5-10>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분류 기준

구분	해당 요건
준정부기관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 50인 이상, 공기업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li> <li>- 기금관리형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li> <li>- 위탁집행형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li> </ul>
공기업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 50인 이상,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 1/2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li> <li>- 시장형 :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li> <li>- 준시장형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li> </ul>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공단에 위임할 업무 등을 전파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공사 및 공단은 개별 설립법에 의하여 해당 기관을 설립한 사례도 있고 기본법에 근거조항에 의하여 설립된 사례도 있다. 아래의 표는 대표적인 공단과 공사의 주요업무를 정리하였다.

<표 5-11> 국내 주요 공단 및 공사의 설립 목적과 주요업무

구분	설립근거법	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 안전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해양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li> </ul> </li> <li>○ △국가 주요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재건축예비평가 업무,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 △안전점검 및 진단중사자 교육훈련,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안전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등</li> </ul>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통안전 교육, 기술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청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특수법인)</li> </ul> </li> <li>○ △교통과학연구, △교통방송,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기술지원 등, △운전면허 업무 전반(시험, 면허증교부, 적성검사, 갱신 등)</li> </ul>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은 30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li> </ul> </li> <li>○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 개발·정비, △공공시설용지의 개발, △주택 건설·공급·관리 업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관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보급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li> </ul> </li> </ul>

현행 전과법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손실보상과 관련된 제7조(손실보상 등), 제7조의2(이의신청)의 업무 중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기관의 장,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첫째 해당 업무에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고 결정·지급하는 업무를 특정기관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해당 업무를 특정기관에 위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특정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손실보상금을 별도의 독립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서 보상금의 다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다툼이 중앙관서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동일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중앙관서간에 손실보상의 위험 여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수용사례, 일본 및 미국사례와 같이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필요시 신규 무선설비의 설치 등의 대행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는 특정하게 이윤 및 별도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공사는 적절하지 않다. 공단이 행정 능률화를 목적 국가의 법인화된 행정기관임을 고려하면 현행 무선국 준공·변경·임시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이의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를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표 5-12> 전파기관 업무위탁과 관련한 전파법 및 시행령 개정(안)

전파법 (현행)	전파법 (개정안)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제5항 및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기관의 장,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좌동> ② <좌동> ③ _____ 진흥원, (가칭) 주파수자원관리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전파법 시행령(현행)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내지 ③ <생략> ④ <신설>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내지 ③ <좌동>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 제7조의 업무의 일부를 법 제78조 제3항의 (가칭) 주파 수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

## 참 고 문 헌

- 김남 외(2013), 『전과법 연구』, 법문사.
- 김상규(2009), 『손실보상에서의 정당보상에 관한 법적 연구: 토지소유자 추천제도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박사학위논문.
- 김용창(2010), 『공익사업에서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제도의 쟁점 및 개선에 대한 연구』, 공간과 사회, 33호, 5-47.
- 김진기(2010), 『주과수재배치에 따른 금융비용의 산정방식 등에 대한 연구』, 한국전파진흥원.
- 김항규(2012),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 나채준(2009), 『간접손실보상과 영국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침해적 영향에 대한 손실보상의 비교법적 고찰』, 공법연구, 38권 2호.
- 남승용(2009), 『주과수 회수·재배치 관련 손실 보상 및 절차』, 전자파기술한국전자파학회지, 20권 4호.
- 박균성(2007), 『프랑스 손실보상법제』, 토지공법연구, 37집.
- 박균성(2013), 『행정법론(하)』, 박영사.
- 설계경(2005), 『재산권보장과 손실보상의 근거법리에 관한 고찰』, 법제, 571호.
- 송희성(2005), 『헌법상 손실보상규정의 변화와 학설, 판례의 변천사』, 토지보상법연구, 5집.
- 오관치(2008),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방안』,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 유현용(2010), 『전과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38집 4호.
- 윤수영 외(2008), 『주과수 자원 재개발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전파진흥원.
- 윤혜정(2007), 『공영택지개발사업 및 토지 등 손실 보상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토지연구, 20권 1호.
- 이민영(2010), 『전과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사례분석적 연구』, 법학연구, 5호.
- 이봉규(2010), 『미국 클리어링하우스(Clearinghouse)의 역할』, 방송통신전자과저널, 제25

호.

- 이승훈(2010), 『주파수 회수·재배치를 위한 손실보상』, 국립전파연구원.
- 이윤형·안형택(2006), 『전파관리제도 및 주파수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 주종천(2008), 『손실보상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리적 고찰 : 생활보상과 사업손실보상을 중심으로』, 감정평가학논집, 7권 2호.
- 조성규(2009), 『주파수 재할당 제도의 법적 문제』, 행정법연구, 24호.
- 조성규(2013),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있어 손실보상의 법적 쟁점』, 한국비교공법학회.
- 허강무(2010),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권리금 포함여부를 중심으로』, 토지보상법연구, 10집.
- 홍준형(2010),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홍정선(2011),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 ANFR(2009), Spectrum redeployment
- ARIB, 사업보고서
- Martin Cave 외(2009), 『최신 스펙트럼 매니지먼트』, M&B.
- Ofcom(2010), Funding for programme-making and special events statement
- Robert Baldwin, Martin Cave, Martin Lodge(2010), 『The Oxford Handbook of Refutation』, Oxford University.
- UK SPECTRUM Strategy Committee(2009), 『A Strategy for Management of major Public Sector Spectrum Holdings』
- US. Commercial Spectrum Enhancement Acts

## 관련법제

- 대한민국 헌법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광업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수산업법

어촌·어항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자연재해대책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하천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9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4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4호

일본 전파법

일본 전파법 성령

일본 특정주파수변경대책업무 및 특정주파수종료대책업무에 관한 규칙(총무성령 제104호)

# 부록 1 : 미국의 공공 주파수 재배치 NTIA 규정

## 상용주파수 향상법에 따른 연방정부 무선국의 재배치

### 1.0 소개

NTIA 조직법(NTIA Organization Act) 113조의(g)~(j) 및 118조, 연방법 47 923조( g)~(j) 및 918조를 개정하였으며, 연방정부의 주파수 이전 및 공유를 촉진을 위하여 주파수 재배치 기금(Spectrum Relocation Fund; SRF)을 통해 관련 인센티브 제공과 재정적 지원을 규정한다.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SRF를 관리하고 자금 수준, 일정(timelines), 주파수 재배치 및 공유와 관련된 전송을 승인한다.

공법 108-494, 118 stat.3896(2004) 제2조 II는 전기통신정보국조직법(상용주파수향상법) 이하의 NTIA 조직법을 수정하였으며, 이는 연방정부가 재할당으로 인해 하나 이상의 주파수로부터 무선주파수에 의존성이 있는 시스템의 재배치에 대한 변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변제 상환 비용은 연방정부에 의해 사용되지 않는 주파수에 대한 경쟁 입찰(경매)로부터 지불된 자금이다. 경쟁 입찰의 수입은 관리예산국에 의해 집행되는 기금 조직(주파수재배치자금)으로 전달되고, 연방 실체는 상환 자금을 인출할 수도 있다. 연방실체를 대신하여 NTIA에 의해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공된 바에 따라, 경쟁 입찰을 통한 총 수입은 총 예상 재배치 비용의 최소 110%이어야한다.

이 부록은 연방 정부 무선 시스템의 재할당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은 대역부터 다른 대역까지 또는 대체 기술에 대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1.1 목적

이 부록은 연방정부에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등에 대한 재배치 지침을 제공하고, 규정 및 요구사항, 경매로 인한 주파수 이전 또는 공유비용 부담 등을 규정한다. USC47 제923조(g)(6)에 규정된 NTIA는 연방기관의 주파수를 적시에 재배치하기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파수 또는 유사한 기능의 시설과 [대상]주파수 공유

를 위한 조치의 적시 이행을 수행한다. 이 부록은 상기에 언급된 법률 조항을 정보, 정책 등이 연방정부기관에 적용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본 매뉴얼은 NTIA보고서, OMB 지침 및 FCC 규정과 관련되어있으며 연방정부기관에 해당된다.

이 부록의 목적은 이 부록의 부섹션 3.0에 명시된 주파수 대역에서부터 다른 대역까지 또는 대체 기술에서 연방정부 무선 시스템의 재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 2.0 적합한 연방 실체

모든 연방 실체는 이 부록의 부섹션 3.0에 명시된 주파수 대역에 할당된 연방정부무선국을 운용하고, 연방 및 비연방의 사용을 위한 주파수 재할당으로 인해 재배치 비용이 발생하므로, 주파수 재배치 기금에서 이와 같은 비용을 지급 받아야 할 것이다.

## 2.1 연방 전력 기관

연방 전력 기관으로는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 본네빌레 전력국, 서부지역전력국, 남서부 전력국 또는 서동부전력국이 있다. 적합한 주파수 대역 조건에서 확인된 면제된 연방 전력 기관은 즉, 재할당될 주파수 대역으로 재배치할 기관은 이 절의 내용에 따라 지불 받을 자격이 있다.

## 2.0 정의

- a. 이행 촉진 지급금(Accelerated Implementation Payments) : 연방기관에서 주파수재배치기금(SRF)에서 더 빨리 구현을 완료하는 등 연방기관을 장려하기 위해 전환 계획의 구현 및 관련 재배치하거나 공유 비용에 대한 자격이 연방 기관에 지불, 따라서 그 대상 주파수에 적시에 액세스를 장려 독점 및 비 연방 사용 또는 공유 사용을 위해 할당(47 USC § 928 (f) (2))
- g. 포설(배치) 관련 비용(Deployment-Related Costs): 이전, 공유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사이트 취득, 현장 시험, 장치 및 설비 포설 비용을 포함하되 포설(배치) 비용은 다음을 포함, (1) 장비와 관련된 비용의 범주내에서 다른 장비와 소프트웨어 비용, (2) 합법적이며 신중한 거리와 관련된 경비, (3) 주파수 재배치 또는 공유를 수행하기 위하

여 고용된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연방공무원 또는 계약과 관련한 직원에게 발생한 비용, (4) 시설 또는 대체 기술 활용에 관련된 증분 비용, (5) 조사·연구, 공학적 연구, 경제 분석, 기타 비용은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거나 공유, 조정 등에 발생(경매 낙찰자와의 주파수 조정과 관련한 비용 포함)하는 비용, (6) 다른 재배치하거나 공유 비용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전 또는 공유로 인한 합리적인 추가 비용

h. 분쟁해소위원회(Dispute Resolution Board) : NTIA 조직법 제113조(i), 47 U.S.C. § 923(i)개정법에 설립근거를 규정, 당해 위원회는 재배치, 공유 등의 실행, 일정, 또는 연방기관의 이전 계획에 의한 비용 등 연방기관과 비연방 주파수 이용자간 분쟁을 해소

I. 자격요건을 갖춘 연방 기관(Eligible Federal Entity) \_(47 U.S.C. § 923(g)(1): 주파수 경매 계획에 의하여 재배치 또는 공유비용이 발생하거나, 비연방에서 배타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거나 공유함으로써 인하여 연방에서 주파수 재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미 정부에서 승인받은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국을 운영하고 있는 연방기관 주파수 재배치 또는 공유와 관련된 비용은 조사·연구, 공학적 연구, 경제 분석, 기타 합리적인 발생비용을 포함(47 U.S.C. § 923(g)(3)(A)(iii))

해당 비용은 다음을 포함

- (1) 재배치 및 공유 비용의 추정 계산
- (2) 기술적, 1개 이상의 잠재적 재배치 주파수 대역에의 운영 가능성에 대한 결정
- (3) 주파수 재배치 또는 공유 조정을 위한 계획

### 3.0 적합한 주파수 대역

적합한 주파수 대역은 다음과 같다.

a) 216-220 MHz대역<sup>48)</sup>, 1432-1435 MHz 대역<sup>49)</sup>, 1710-1755 MHz 대역<sup>50)</sup> 그리고

---

48) 216-220 MHz 대역은 정부와 비정부 사용자가 상호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되었다. FCC는 이 대역의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다.

49) 1432-1435 MHz 대역은 정부와 비정부 사용자가 상호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되었다. 연방 동작은 이 부록의 부섹션 8.1에 명시된 지역에서 보호된다.

50) 2385-2390 MHz 대역은 독점적 민간 사용을 위한 재배치가 고려되었다.; 하지만, 이동

2385-2390 MHz 대역

b) 통신법 1934 (47 U.S.C. 309(j))의 섹션 309(j)에 입각하여 경쟁 입찰을 통해 2005년 1월 1일 이후 연방정부 사용에서 비정부 사용으로 재할당된 모든 주파수 대역. 단, NTIA Special Publication 95-32(1995)의 주파수 재할당 최종 보고서에 이미 언급된 주파수 대역은 제외함.

#### 4.0 예상 재배치 비용과 FCC 일정 공고

NTIA는 연방실체를 대신하여, OMB 검토 이후에 연방실체의 예상 재배치 비용과 일정 정보를 이 부록의 부섹션 3.0에 정의된 적합한 주파수에 대한 모든 경매 개시 6개월 전에 FCC에 알릴 것이다.

NTIA 공고에 의하면, 무선주파수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재배치하거나 수정할 것이 요구되는 연방 실체는 최소 경매 9개월 전에 재배치 비용과 일정을 NTIA에 통고해야 한다. 이들 정보는 특정 대역에 대해 NTIA가 요구하는 형식으로 미래의 면허권자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재배치와 수정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들은 재배치 전적 및 일정에 대한 승인 그리고 재검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자원 관리국의 예산국과 OMB와 함께 작업해야 한다.

#### 4.1 FCC에 제공할 정보

NTIA는 실행 가능성과 국가 안전 고려사항에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비용 및 일정과 관련된 다음의 정보를 FCC에 제공할 것이다.

- a) 연방정부의 주파수 할당 및 무선국 목록
- b) 각 연방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주파수 할당 및 무선국
- c) 이 주파수 할당을 사용하고 있는 무선국의 지리적 위치
- d) 적합하다면, 주파수 할당 및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특성

---

용을 위한 연방 할당은 유지될 것이며, 이 대역은 항공 원격 측정을 위해 공유될 것이다.

정보 공개법으로 공개가 면제된 주파수 할당에 대한 NTIA 매뉴얼의 41절 섹션 9.8.2, part2에도 불구하고, NTIA는 경매 개시 6개월 전에 이 형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할당에 대한 모든 정보를 FCC에 제공할 것이다.

분류된 모든 할당 및 시스템의 경우, 경매에 주파수에 위치한 연방 실체는 모든 분류된 시스템의 재배치 및 수정 비용에 대해 하나로 통합된 그리고 분류되지 않은 그림으로 NTIA에 제공할 것이다. 그러면, NTIA는 경매 개시 6개월 전에 이러한 정보를 FCC에 제공할 것이다.

## 5.0 재배치 비용과 일정에 대한 정의

### 5.1 재배치 비용

NTIA 조직법 (47 U.S.C. 923(g))의 섹션 113(g)에 정의된 재배치 비용은 연방 실체가 새로운 주파수를 할당하여 재배치하거나, 대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능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비슷한 성능의 시스템을 획득하기 위해 초래하는 비용이다.;

- (A) 재배치로 인해 장비, 소프트웨어, 시설, 작동 매뉴얼, 훈련 비용 및 규제의 교체 및 수정 비용
- (B) 공학, 장비, 소프트웨어, 대지 획득 그리고 건설 비용, 또한 법적 거래 비용, 외부 컨설턴트, 재배치로 인한 연방실체로부터 발생하는 추가비용, 그리고 대체시설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 (C) 공학 연구, 경제 분석 또는 이 법에 따라 FCC에 제공된 예상 재배치 비용 계산에 추가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 (D) 이 법에 정의된 주파수가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부문 사용이 가능해지고, 연방 실체가 경쟁 입찰 과정 완료 이후 한동안 주요한 할당이나 보호 상태를 유지할 때, 연방 실체의 주요한 할당이나 보호 상태가 완료되기 전에 상용 주파수 사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장비 수정을 위해 필요한 일회성 비용
- (E) 새로운 주파수 할당에 시스템을 시기적절하게 재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과 장비를 서둘러 교체하기 위한 비용

## 5.2 재배치 일정

재배치 일정은 연방 실체가 이 부록의 부섹션 3.0에 명시된 주파수 대역을 무선 통신 시스템/무선국로 재배치 혹은 수정이 완료되는 날짜로 맞춰진다.

## 5.3 시스템의 유사한 성능에 대한 정의

유사한 성능에 대한 용어의 의미는 대체 시설이 적어도 통신처리율, 시스템 신뢰도, 운용 비용, 그리고 운용 성능 등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의 성능과 같거나 더 나은 레벨의 성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 (A) 통신 처리율

통신 처리율은 정해진 시간동안 시스템 내에서 전달되는 정보의 양을 의미한다. 디지털 시스템에서 통신 처리율은 초당 전송 비트수로 측정되며 아날로그 시스템에서는 음성, 영상, 데이터 채널 수로 측정된다.

### (B) 시스템 신뢰도

시스템 신뢰도는 시스템에서 일시정보의 비율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시스템의 신뢰도는 장비실패율 (예, 송신기, 급전선, 안테나, 수신기 그리고 배터리 백업 전력), 주어진 전파 특성에서 주파수 채널 가용성 (예, 주파수, 지상 및 대기 조건 그리고 잡음) 그리고 장비 감도의 함수이다. 시스템 신뢰도는 또한 무선통신 무선국이 할당된 시간 동안 명시된 조건 아래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시스템 신뢰도는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 즉, 특정 성능 레벨 달성 레벨 확률 그리고 할당된 시간 동안 특정 성능 레벨을 유지이다. 디지털 시스템에서의 시스템 신뢰도는 초당 비트 오류 (BER)이 요구되는 값을 넘는 비율로 그리고 아날로그 시스템에서는 수신 반송파 대 잡음 비가 수신기 임계치를 넘는 비율로 측정된다.

### (C) 운용 비용

운용 비용은 연방실체의 재배치된 시설을 운용,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재배

치 비용은 재배치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을 포함한다. 추가비용은 부가적인 임대 비용 그리고 증가한 공공 요금을 포함한다.

(D) 운용 성능

운용 성능은 관련된 시스템의 서비스, 연합 서비스 그리고 동맹국의 시설, 서비스 상호 이용을 포함한 요구사항 내에서 인가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의 성능 측정을 의미한다.

**6.0 연방 의회 위원회와 감사원(GAO)에 예상 재배치 비용과 일정 공고**

NTIA는 이 부록의 부섹션 4.0에 따라 초기의 재배치 예상 비용을 FCC에 제공할 때, 재배치 예측 비용과 일정에 대한 복사본을 하원의 세출 및 에너지, 상무 위원회와 상원의 세출, 상업, 과학, 운송 위원회, 그리고 회계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7.0 여러 위원회와 감사원에 제출하는 NTIA의 연차 보고서**

NTIA는 이 부록의 부섹션 6.0에 기술된 여러 위원회와 회계 감사원장에게 연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 a) 이 부록의 부섹션 3.0에 명시된 주파수에 적용 가능한 재배치의 일정에 따라 만들어진 경과 보고서는 통신 시스템 별로, 경매 건 별로 기술되어야 한다; 그리고
- b) 재배치된 각 통신 시스템과 경매와 관련하여, 부록의 부섹션 4.0에서 요구하는 예상 재배치 비용과 실제 발생한 재배치 비용 그리고 주파수 재배치 기금으로 지불된 비용의 총합에 대한 보고서

**8.0 연방정부가 보호하는 대역**

**8.1 1432-1435 MHz 대역**

아래 목록에 있는 대역에서의 실질적 연방 정부 동작은 무기한 보호된다.

위치	좌표	보호반경
캘리포니아주의 차이나 레이크/에드워즈 공군기지	35°29'N117°16'W	100 Km
뉴멕시코주의 미사일성능 시험장/홀로먼 공군기지	32°11'N106°20'W	160 Km
유타주의 유타 주 공군기지 착륙지점(Utah Test and Training Range)/생화학 병기 시험소/힐 공군기지	40°57'N113°05'W	70 Km
메릴랜드주의 Patuxent River 해군기지	38°17'N076°24'W	70 Km
네바다주의 넬리스 공군기지	36°14'N115°02'W	130 Km
애리조나주의 포르 후아추카(Fort Huachuca)	31°33'N110°18'W	80 Km
플로리다주의 글린&틴달 공군기지, MS/Ft. Rucker, AL	30°28'N086°31'W	140 Km
애리조나주의 유마 시험장	32°29'N114°20'W	160 Km
알래스카주의 포트 그릴리	63°47'N145°52'W	80 Km
앨라배마주의 레드스톤 아스날	34°35'N086°35'W	80 Km
미시간주의 알페네 시험장	44°23'N083°20'W	80 Km
미시시피주의 캠프 셀비	31°20'N089°18'W	80 Km
AUTEC	24°30'N078°00'W	80 Km
사우스 캘리포니아주의 MCAS Beaufort	32°26'N080°40'W	160 Km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MCAS Cherry Point(해병항공기지)	34°54'N076°53'W	100 Km
플로리다주의 Nas Cecil Field	30°13'N081°53'W	160 Km
네바다주의 Nas Fallon	39°30'N118°46'W	100 Km
버지니아주의 Nas Oceana	36°49'N076°01'W	100 Km
워싱턴주의 Nas Whidbey Island	48°21'N122°39'W	70 Km
괌의 NCTAMS	13°35'N144°51'W	80 Km
캘리포니아주의 Lemoore	36°20'N119°57'W	120 Km
메인주의 Naval Space Operation Center(해군 우주 운영 센터)	44°24'N068°01'W	80 Km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Savannah River	33°15'N081°39'W	3 Km

## 8.2 1710-1755 MHz 대역

국방부는 16개의 보호 대역(FCC 업무 규정 참고)에서 통신 시스템을 운영한다.

Yuma, AZ 그리고 Cherry Point, NC sites에서의 모든 동작은 무기한 보호된다. 남아있는 14개의 대역에서 공수 및 군용 검사 동작은 이러한 시스템이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재배치되기 전까지 보호될 것이다. 그리고 정밀 유도 병기 (PGM) 동작 또한 이들 시스템이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재배치 되거나, 각 시설에서의 PGM 재고가 모두 소모되기 전까지 보호될 것이다.

위치	좌표	작전반경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Cherry Point	34°58'N076°56'W	100 Km

애리조나주의 유마	32°32'N113°58'W	120 Km
캘리포니아주의 차이나 레이크	35°41'N117°41'W	120 Km
글린 공군기지, 플로리다	30°29'N086°31'W	120 Km
캘리포니아주의 태평양 미사일 발사 시험장, Point Mugu	34°07'N119°30'W	80 Km
네바다주의 넬리스 공군기지	36°14'N115°02'W	160 Km
유타주의 힐 공군기지	41°07'N111°58'W	160 Km
메릴랜드주의 Patuxent River 해군기지	38°17'N076°25'W	80 Km
뉴멕시코주의 White Sands Missile Range(미사일성능 시험장)	33°00'N106°30'W	80 Km
캘리포니아주의 Irwin 기지	35°16'N116°41'W	50 Km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Bragg 기지	35°09'N079°01'W	50 Km
앨라배마주의 Rucker 기지	31°13'N085°49'W	50 Km
켄터키주의 Campbell 기지	36°41'N087°28'W	50 Km
워싱턴주의 Lewis 기지	47°05'N122°36'W	50 Km
조지아주의 Benning 기지	32°22'N084°56'W	50 Km
조지아주의 Stewart 기지	31°52'N081°37'W	50 Km

## 9.0 다른 정의들

이 부록의 목적은 아래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다.

- a) 경매는 통신법 1934의 섹션 309(j)에 기재된 경쟁 입찰 사용을 의미한다.
- b) 분류된 할당은 주파수 할당과 행정 명령 12958에 따라 결정된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 또한 승인되지 않은 발표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하는 전임자 및 후임자 명령 그리고 문서에 분류 상태를 나타내는 "기밀", "극비", "최고 극비"가 표시된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 c) 연방 실체는 통신법 1934의 섹션 305에 따라 획득된 정부 무선국 승인을 사용하는 연방 정부의 모든 부, 기관 또는 다른 정부 대행기관을 의미한다.
- d) 주파수 할당은 NTIA로부터 정부 무선 주파수, 주파수 혹은 무선 주파수 채널 그리고 특정 조건 아래에서의 채널들을 사용하는 정부 무선국을 위해 발행된 승인을 의미한다.
- e) 면허권자는 부록의 부섹션 3.0에서 확인된 주파수 대역의 사용을 위해 FCC에 의해 승인된 사람을 의미한다.

## 부록 2 : 일본의 손실보상관련 전파법 및 연구회 보고서

### 특정 무선설비등의 제출

**제3조** 주우하치죠의 21 총무 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직원에게 출입 검사를 시켰을 경우에 대해, 그 소재의 장소에 있어 검사를 시키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무선설비 또는 해당 특정 무선설비의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때문에) 특히 필요한 물건일 때는, 등록증명기관에 의한 기술 기준 적합 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기한을 정해, 해당 특정 무선설비 또는 해당 물건을 제출 해야 할 것을 명할 수가 있다.

2. 국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해 생긴 손실을 해당 기술 기준 적합 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보상해야 할 손실은, 제1항의 명령에 의해 통상적으로 발생한 손실로 한다.

### 주파수등의 변경

**제71조** 총무 대신은, 전파의 규제와 그 외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무선국의 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한정해, 해당 무선국(등록국을 제외하다.)의 주파수 혹은 안테나 전력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또는 등록국의 주파수 혹은 안테나 전력 혹은 인공위성국의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가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주파수 혹은 안테나 전력의 지정의 변경 또는 등록국의 주파수 혹은 안테나 전력 혹은 인공위성국의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의 변경을 명령에 의해 생긴 손실을 해당 무선국의 면허인등에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보상해야 할 손실은, 동항의 처분에 연줄 통상적으로 발생한 손실로 한다.
4. 제2항의 보상금액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보상금액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호소를 가지는 이라고, 그 증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5. 전항의 소에 대해서는, 국가를 피고로 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공위성국의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의 변경의 명령을 받은 면허인은, 그 명령과 관련되는 조치를 강구했을 때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총무 대신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6조의3** 총무대신은,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파수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또는 주파수 변경을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의2 제3항의 평가 결과에 근거해 주파수 할당 계획을 변경하여 특정 무선국 구분에 할당하는 것이 가능한 주파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주파수의 사용의 기한을 정했을 때는, 해당 기한의 도래 후에, 해당 기한과 관련되는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무선국(등록국을 제외하다.)의 주파수의 지정을 변경해, 해당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등록국의 주파수의 변경을 명해 또는 해당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무선국의 면허등을 취소할 수가 있다.

2. 국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주파수의 지정의 변경, 등록국의 주파수의 변경의 명령 또는 무선국의 면허등의 취소에 통상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무선국의 면허인등에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
3. 제7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대해 준용한다.

## 부록 3 : 일본 총무성 전파재배분을 위한 급부금 산정에 관한 기본방침(안) 17

### 제1장 개요

1. 총무성에서는, 무선 액세스 등의 신규의 전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 전파법의 개정에 의해 도입된 전파의 이용 상황의 조사 공표 제도에 근거해, 전파의 재배분의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선행조사로서 5 GHz대를 중심으로서 전기 통신사업자가 중계계 고정국에 사용하고 있는 전파 대역에 대해 전파의 이용 상황의 조사를 실시해, 올해 5월 14일에 조사 결과에 근거하는 평가를 공표했다. 또, 3.4 GHz대를 넘는 전파 대역에 대한 본격적인 이용 상황 조사도, 2004년도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다.
2. 한편, 전파의 재배분을 실시하면, 기존의 전파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투자해 취득·건설한 무선설비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외에 철거 비용, 신규 설비의 취득 등, 경제적인 비용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총무성은, 전파의 신속한 재배분을 원활화하는 관점으로부터, 일정한 경우에는, 기존의 전파 이용자의 경제적인 손실 등을 보충하기 위한 급부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파재배분에 관한 급부금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전파 유효 이용 정책 연구회의 제1차 보고서 등에 있어, 그 기본적인 골조가 제안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급부금액을 산정하는에 있어서는, 다종 다양한 무선국의 실태나 실정을 감안해, 구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올해 2월부터, 종합 통신 기반국 전파 부장의 연구회로서 「전파재배분을 위한 급부금 제도의 구체화에 관한 연구회」(단장 : 타가 타니일조치바대학부학장·법경학부 교수)를 개최해, 당면, 전파재배분의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이 상정되는 마이크로파대의 중계계 고정국이나 레이더를 주된 검토 대상으로 해, 급부금의 산정 방식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논의·검토를 진행시켜 제3장에서 기본방침안을 정리한 것이다. 당연구회는, 오늘, 전파재배분을 위한 급부금 산정에 관한 기본방침안을 넓게 국민에게 공표해, 국민

의 의견을 감안한 다음, 최종보고서를 정리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 제2장 급부금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

연구회는 「급부금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를 전제 조건으로서 이번 전파재배분과 관련 되는 급부금 산정의 기본방침안을 정리한 것이다.

1. 원칙적으로, 전파의 재배분 계획의 공표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전파 이용의 최종 사용 기한을 맞이하는 재배분 형태를, 급부금 지급의 검토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무선국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 기한까지 5년 이상의 기간이 예정된 재분배 형태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급부금 지급의 대상 하나 적합성 및 실태, 내용연수등도 감안해, 객관적인 기준의 작성도 포함해 검토한다.
2. 본급부금의 기본적인 성격은, 손실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또, 그 산정 대상의 범위는, 전파 이용자는, 국민의 공유의 전파 자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인정된 것에 지나지 않고, 한편, 전파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 등을 감안해, 보상의 범위에는, 전파의 사용권과 관련되는 대가 보상은 포함하지 않고, 이른바 부수적인 손실(전파법 제 71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총무 대신에 의한 주파수 이행 명령의 경우에 있어서 의 통상손실)로 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서 검토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부금액은, 개별의 구체적인 손실액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생기는 것이 상정되는 손실액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정형화한 산정 방식에 근거해 계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전체적으로, 기존의 전파 이용자에게 있어, 손실이 생기지 않는 수준의 액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이상을 근거로 해 급부금액 산정의 검토 대상은, 전파 이용의 계속을 기대해 무선국 건설 등을 위해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전환의 결과, 회수를 전망할 수 없게 된 투자 자본의 미회수 부분(잔존 장부가액등)이나, 설비의 철거 비용, 또, 신규 설비의 앞당김 취득에 수반하는 금융비용등이 된다.
4. 또한, 급부금의 산정 시기 및 지급 시기는, 전파의 최종 사용 기한에 있어 지급액을 산정해, 같은 기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존의 전파 이용자에 대

- 한 전파 이용의 조기 종료에 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것이 검토 과제이다.
5. 급부금의 재원에는, 일단 전파 이용료를 충당하는 것과 동시에, 적어도 비용의 5할 이상은, 재배분 후의 전파를 이용하는 신규 면허인등의 전파 이용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장 급부금 산정의 기본방침안

당 연구회에 대해, 주로 마이크로파대를 사용하는 중계계 고정국이나 레이다에 관한 급부금의 산정 방식에 대해 검토를 진행시켜 그 기본방침(안)을 이하대로 정리했다(참고 자료 1 참조). 덧붙여 전파의 이용 상황 조사·공표 제도의 결과를 통해 전파의 재배분 제도의 실시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중계계 고정국이나 레이다 이외에도 상정되어 한편, 그 실시형태도 다종 다양한 형태가 상정된다. 중계계 고정국등 이외의 무선국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무선국의 모양이나 실태를 검토 한 다음, 정부에 대한 기본방침을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적절한 방식을 책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원칙

- (1) 급부금의 대상이 되는 전파재배분의 형태의 원칙으로서 전파의 재배분 계획의 공표로부터 5년 이내에 최종 사용 기한을 맞이하는 것으로 한다.
- (2) 급부금액은, 「과거의 설비투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새롭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① 「과거의 설비투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가. 전파의 재배분에 의해 철거되는 무선설비에 대해, 최종 사용 기한에 있어서의 잔존 가치를 급부 대상으로 한다.

※ 잔존 가치=잔존 장부가액-잔존 가액(취득가격의 10%에 상당)

나. 다만, 재배분 계획의 공표로부터, 10년 후에 대해 잔존 가치가 남는 경우는, 해당 10년 후의 잔존 가치를 공제한 금액을 급부 대상으로 한다.

※ 급부 대상=최종 사용 기한에 있어서의 잔존 가치

－ 계획 공표로부터 10년 후에 있어서의 잔존 가치

다. 덧붙여 복수 기업에서 다른 내용연수나 상각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는 내용연수 등을 이용해 잔존 장부가액등을 산정한다.

② 「새롭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가. 철거 비용 및 신규 설비의 취득 비용의 합계액에 대해 이전기간중의 금융비용을 급부 대상으로 한다.

※ 금융비용 = (신규 설비의 취득 비용 + 철거 비용) × 금리 × 이전기간

나. 상기 합계액의 2분의 1은 차입금, 나머지는 자기 자기에 의해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산정해, 철거 비용, 신규 설비의 취득 비용, 이전기간, 적용 이율은, 각각, 이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1. 철거 비용 : 유형화된 설비 마다, 떼어내 비용, 운반비용 및 폐기 비용의 합계액을 정형화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신규 설비의 취득 비용 : 철거되는 설비의 취득 비용과 동액으로 한다.

※3. 이전기간 : 재배분 계획 공표의 5년 후의 시점(다만, 미리 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해 이것 이전의 시점에 최종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사용 기한)으로부터 재배분 계획으로 새롭게 정한 최종 사용 기한까지의 기간

※4. 적용 이율 : 원칙으로서 차입 이율은, 계획 공표 시점에 있어서의 장기우대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대상 면허인의 실제의 시장 조달 금리가 장기우대 대출금리와 크게 괴리하는 경우에는, 별도,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적절한 이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자기 자금의 운용 이율은, 정기예금의 이율등을 참고로 하면서, 이전기간을 감안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새로운 설비의 추가에 의해 대응하는 경우 취급

(1) 검토 과제

레이다가 사용하는 주파수대역폭의 압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무선설비를 개정하는 방법 이외에도 필터 등의 설비를 부가하는 것으로써,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케이스에 대응한 산정방법에 대해 검토했다.

(2) 급부 대상

사용하는 주파수대역폭을 압축하기 위해서 설비의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설비

이전 취득에 수반하는 금융비용을 급부 대상으로 한다. 산정 방식은, 급부금 산정에 있어서의 금융비용 산정식(1(2)②참조)을 기본으로, 「철거 비용」을 「변경 공사비용」이라고, 「신규 설비의 취득 비용」을 「추가하는 설비의 취득 비용」이라고 수정한 식을 적용한다.

$$\text{※ 금융비용} = (\text{추가 설비의 취득 비용} + \text{변경 공사비용}) \times \text{금리} \times \text{이전기간}$$

### 3. 예외적용 (논점 7 참조)

철탑·국 사등의 그 건설 등에 고액의 투자를 수반해, 그 내용연수도 장기인 설비 등에 대해서는, 계획 공표로부터 5년을 추월 10년 미만의 시점에 있어, 기존의 전파 이용의 최종 사용 기한을 설정하는 재배분 형태여도, 「1원칙」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급부금 산정의 검토 대상으로 한다.

가. 원칙으로서 '다' 요건을 채우는 철탑, 국 사등의 설비에 대해서는, 「과거의 설비투자액에 대한 보상의 금액」을 급부 대상으로 한다. 덧붙여 기간 손실은 산정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나. 다만, 구체적인 급부 대상은, 최종 사용 기한에 있어서의 잔존 가치로부터, 계획 공표 후의 10년 후의 시점에 있어서의 잔존 가치를 공제한 액으로 한다.

다. 원칙으로서 급부 대상 설비는 이하의 2의 요건을 채우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안테나의 지지물(철탑 등)인 것.
2. 법정 내용연수가 20년 이상인 것(참고 자료 2 참조) 덧붙여 대상이 되는 복수 기업에서 다른 내용연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4. 인센티브 부여 (논점 8 참조)

전파재배분의 형태가, 기존의 전파 이용자가 최종 사용 기한보다 사전에 전파 이용을 종료하는 것으로써, 이것에 대응해, 조기의 신규 참가가 가능해 지는 경우는, 전파 이용의 사전 종료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급부금액의 산정은, 최종 사용 기한에 있어서의 전파 이용의 종료를 전제로 해서 산정하지만, 그 급부금의 지급 시기는, 최종 사용 기한은 아니고, 실제의 철거일로 하는 것이 적

절한 것으로 고려된다.

## 제4장 주된 논점에 대한 정리

### 논점 1. 대상 자산의 범위

현실의 무선국의 운용에서는, 주로 무선 송수신 설비로부터 완성되는 무선설비부 외, 안테나나 이것을 지지하는 철탑등의 안테나부, 전원 설비부, 이러한 설비를 수용하는 국사, 국사 주변의 도로 등 여러가지 설비가 일체가 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태가 있다. 이러한 실태를 통해, 급부금액 산정에 해당하는 대상 자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파재배분에 의해, 통상, 철거되게 되는 무선설비부나 안테나 본체를 대상 설비로 하지만, 무선국의 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 필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없는 국사주변의 도로 등은 대상 자산으로 하지 않는 점에 대해 의견을 일치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국사나 철탑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 a) 마이크로파 고정국에 대해, 재배분 대상의 주파수가 100 MHz 정도로 머무는 경우, 이것에 상당하는 무선설비 등은 철거되지만, 다른 주파수대에 사용하는 무선설비 등은 계속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국사나, 철탑 등은, 통상, 철거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재배분의 결과, 국사, 철탑 등의 자산가치는 저하하고 있어 또, 최초의 재배분의 단계에서는, 국사, 철탑 등이 급부금 산정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마지막 재배분에서는, 국사, 철탑 등이 산정 대상이 되어, 급부금액의 평준화를 고려 할 수 없다. 거기서, 사용 주파수대폭에 있어서의 재배분 대상의 주파수대폭의 비율을 감안해, 현실에는 철거되지 않는 국사, 철탑등도 산정 대상에 가세해야 하는 것으로 하는 의견과
- b) 대상 자산은, 전파법상, 면허 심사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한정해야 하는 것이어서, 심사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국사, 철탑 등은 급부금의 산정 대상 자산에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의견
- c) 대상 자산은, 형식적으로 전파법 심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아니고, 다른 법령상의 요청이나 실태를 감안해, 해당 설비가 무선국의 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

- 필요한지 어떤지로 판단해, 국 사, 철탑등도 대상 자산으로서의 검토 대상에 가세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배분에 의해 통상, 철거되는 설비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의 3개의 의견이 표명되었다. 당연구회에서는,
- 가. 급부금의 기본적인 성격이, 손실보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점을 감안하면, 재배분에 의해 「통상 생기는 손실」의 대상 설비라고 파악하는 것이 적당하고, 이 경우, 타 제도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의 실태를 근거로 하면, 면허·허가 등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여도, 통상, 손실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 나. 최초의 재배분이 실시되고 나서, 마지막 재배분이 실시되어 국 사, 철탑 등이 철거되는 사태에 도달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것이 상정되어 있는 경우, 국 사, 철탑 등의 잔존 장부가액등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급부금액의 평준화는 너무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
- 다. 현실에 철거되지 않는 설비까지를 급부금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급부금의 부담자가 되는 전파 이용자등의 이해를 얻는 것은 곤란한 것 등의 이유로부터, 일단 c)의 의견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 여러 차례로 나누어 재배분을 실시하는 케이스에 있어서의 마지막 재배분을 실시했을 경우의 급부금의 산정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는, 장래의 검토 과제로 하는 것으로 했다.

## 논점 2 내용연수의 취급

급부금의 잔존 장부가액등의 산정에 이용하는 내용연수나 상각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기업에서 이용되고 있는 세법상의 내용연수 등을 이용해 산정하는 것이 실정을 반영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전파재배분의 대상이 되는 기업군에 대해, 다른 내용연수나 상각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의해, 급부금액의 다과가 생기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거기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군에 대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내용연수 등을 이용해 급부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정리했다.

### 논점 3 잔존 가치의 취급

- ① 잔존 가액의 취급 법정 내용연수의 경과 후에 있어도, 더 계상되는 잔존 가액(원칙, 취득 비용의 10%)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배분의 결과 발생하는 손실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급부금액은, 어디까지나 미상환 가치(잔존 장부가액으로부터 잔존 가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잔존 가치라고 한다. )(을)를 기본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정리했다.
- ② 10년 후의 잔존 가치의 취급 종래, 1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마련해 전파의 재배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으로 잔존 가치가 간직하는 경우에도, 이미 투자는 회수된 것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실태도 고려해, 재배분 계획의 공표 시점의 10년 후에 대해서도, 더 잔존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 기한에 있어서의 잔존 가치로부터 이것을 공제하는 것이 적당과 정리했다.

### 논점 4 신규 설비의 취득 비용등의 취급

전파의 재배분 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의 실례에서는, 무선설비 등의 잔존 장부가액을 보상액의 산정 대상으로 하지 않는 대신에, 실제로 재배분의 결과, 필요한 설비 투자(예를 들면, 광섬유의 구축 비용 등)를 전액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서 해당 기업에 현실에 금융시장에서 적용되는 조달 금리(약 12%)를 적용해, 신규 설비 전 취득에 수반하는 금융비용을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다(덧붙여서, 해당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조달금리는 비싸진다).

한편, 일본의 토지 수용에 있어서의 운용 이익 손실의 계산방법은, 자기자금에 의한 분가가계 등의 구입을 전제로서 운용 금리는 과거 20년간의 10년 국채 이율의 평균(약 4.5%)를 이용해 산정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유례등도 밝으면서, 당연구회에서는, 신규 설비의 앞당김 취득에 수반하는 금융비용의 취급에 대해, 이하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했다.

- ① 자금조달의 방법 금융비용의 산정에 해당되어, 신규 설비의 취득 등이, 주로 자기 자금으로 조달되는지, 또는 차입금에 의한다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신규

설비의 취득 등이, 장기적인 계획에 근거해 실시된다면 자기 자금에 의한 자금조달을 전제로 오지만, 이번은, 급부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전과재배분의 형태에서는, 기존의 전과 이용자는, 그 기대에 반해 신속히 재배분이 실시되기 위해, 자기 자금으로 모두를 조달하는 것은 곤란하고,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 기업의 실태에 대해서도, 신규 설비의 취득 등은, 자기 자금과 차입금의 쌍방을 활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취득 비용 등의 50%는 자기 자금, 나머지의 50%는 차입금에 의해 자금조달을 하는 것과 정리했다.

② 신규 설비의 취득 비용 무선 이용으로부터 광섬유 등에 이행 하는 경우,

가. 신규 설비의 취득 비용은, 기존의 무선설비의 취득 비용보다 일반적으로 고액이 되는 경향을 볼 수 있는 것으로부터, 현실에 필요한 신규설비의 취득 비용을 기본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과

나. 광섬유화 등 하는 것으로써, 전송 속도 등의 통신설비로서의 능력도 큰 폭으로 향상하는 것으로부터, 현실에 취득하는 설비의 비용은 아니고, 기존 설비와 동등한 설비의 취득 비용에 근거해 산정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의견이, 당연구회의 논의의 과정에서 표명되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당연구회는,

다. 신규 설비의 취득 비용은, 기본적으로 기존 설비와 동등의 능력을 가지는 대체 설비의 범위내에서 산정하는 것이 적당한 것

라. 동등의 능력이라고 말해도, 기술 혁신의 격렬한 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시대의 변천에 응해 기존 설비의 취득시점과 완전히 동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점에 대해 적당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당한 것

마. 한편, 완전히 기존 설비와 동등의 능력의 설비이면, 시대의 변천에 수반해, 저렴화한다고 생각되는 것 등의 사정도 감안해 특히 이의 사정과 우의 사정으로 취득 비용의 높낮이가 상쇄되는 점도 감안해, 신규 설비의 취득 비용은 기존 설비의 취득 비용에 동일하면 정리하는 것으로 했다.

③ 적용 금리

프랑스에 모방해 실제의 시장에서의 조달 금리를 채용하면, 기업의 실적 여하에 의해, 적용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복수의 기업 간에서의 형평성을 어기는 결과를 일으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프랑스에서는, 지금까지 재배분 대상은, 프랑스 텔레콤, 국방총성에

한정되어 있어 공평성의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거기서, 당연구회에서는, 적용 금리는, 객관적인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 자금에 대해서는, 이전기간에 대응한 우체국 저금의 정기예금 금리 0.06%(헤세이 15년 3월말 현재)를, 차입금에 대해서는, 장기우대 대출금리 1.5%(2003년 3월말)를, 원칙으로서 적용하는 것으로 해, 이것을 적용했을 경우에, 실태와 크게 괴리하는 것 같은 케이스에 있어서는, 실태를 감안해, 원칙을 적당, 수정한다고 하는 수법을 채용하는 것이 적당과 정리했다.

## 논점 5 철거 비용의 취급

- ① 산정 대상으로 하는 적부 전파의 재배분에 의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무선설비가 있는 경우에서도, 그 설비의 철거를 할지 어떨지는, 기존의 전파이용자의 자유라고 생각된다. 특히, 국사, 철탑 등을 계속해 사용하는 경우는, 일일이 상세하게, 철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이 있었다. 본 지적에 대해,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설비는 신속하게 철거해 회계 상도 제거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량자산을 안게 되어 부적당으로 하는 경우와 또, 이러한 설비를 방치하면, 녹의 발생 등에 의해 물리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철거할 필요가 있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 이러한 설명도 감안해 전파재배분에 의해, 실태로서 전파의 이용자에게는 새롭게 설비의 철거 비용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중시해, 철거 비용에 대해서도, 산정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검토가 중요시 되었다.
- ② 산정 방식 철거 비용은 머지않아 면허인에 생기는 비용이며, 지금까지도 1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마련해 실시한 전파재배분의 형태에서는, 철거 비용을 보상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거기서, 과거의 정리와의 정합성도 낮아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신규 설비의 취득 비용과 같이, 신속한 재배분의 결과, 새롭게 발생하는 기간 손실로서 사전 지불에 수반하는 금융비용에 대한 보고 보상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과 정리했다.

## 논점 6 영업 보상의 취급

행정 실무나 판례 등에 대해서도, 「통상 발생하는 손실」에는 영업 보상도 포함되고 인지

만, 이번 산정에 대해 영업 보상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 급부금 제도의 도입이,

- ① 전과재배분의 원활화를 위해, 사전에 정형화가 가능한 산정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 것
- ② 이번 검토 대상인 재배분 형태는, 주로 중계계 고정국에 의한 무선이용을 광섬유등의 유선계에의 전환이나, 주파수대역의 압축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로는, 영업 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음으로, 적어도 이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영업 보상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당으로 여겨졌다.

#### **논점 7. 5년을 넘는 재배분의 경우의 급부금의 지급**

철탐·국 사 등은, 송수신 장치나 안테나등과는 달라, 통상, 상당 기간, 개정이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있다. 또, 이것들 설비에는 법정 내용연수가 긴것이 있어, 고액의 투자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 많다. 따라서, 철탐, 국 사 등에 대해서는,

- 가. 사회 통념상, 전과 이용자의 계속 사용에 대한 기대가 강한 일
- 나. 5년을 넘는 기간의 재배분을 실시했을 경우에서도, 고액의 잔존 장부 가액 등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부터, 급부금의 검토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1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마련한 전과의 재배분에서는,
- 다. 동기 마나카에, 자산가치의 상각도 상당 정도 진행되는 것
- 라. 종래부터 보상을 수반하는 일 없이 전과의 재배분을 실시해 온 경위를 근거로 하면, 이러한 경우에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전과 이용자는 받아들여야 할 입장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부터, 급부금의 검토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적당으로 여겨졌다.

이와 같이, 국 사·철탐등의 경우, 과거의 투자와 관련되는 손실액수가 고액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한편, 현실에 회계상, 제거손해가 계상되는 것으로부터, 이것을 산정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했지만, 전과 이용자의 전과 이용 계속에의 기대가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배분 계획의 공표로부터 5년의 이용까지 멈추는 것이 적당하고, 당연구회에서는, 기간 손실(금융비용에 상당)은,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당과 정리했다.

## 논점 8 전파의 재배분의 원활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대책

### ① 면허인의 책무

- a) 무선국의 면허인은, 전파의 꺾박 상황이 심각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공유의 유한 희소인 전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것
- b) 전파의 유효 이용 추진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의 적극적인 협력을 실하는 것이 면허인의 중요한 책무 등을 근거로 해 인센티브 부여의 검토는, 기존 면허인의 보호의 입장은 아니고, 새로운 전파 요구의 진흥의 관점으로부터 검토하는 것이 적당하다. 거기서, 본 검토는, 전파의 재배분 형태

가. 기존의 전파 이용자가 최종 사용 기한보다 앞당김 해 전파 이용을 종료하는 것으로 써, 이것에 대응해, 조기의 신규 참가가 가능해지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했다.

### ② 구체적 대책 급부금의 산정 시기 및 지급 시기는, 전파의 최종 사용 기한에 있어 지급액을 산정해, 동 기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속화의 관점으로부터, 앞당김 해 전파 이용을 종료했을 경우에, 구성원으로부터의 의견 등도 밝아

- a) 급부금액의 산정은, 최종 사용 기한에 있어서의 전파 이용의 종료를 전제로 해서 산정하지만, 그 급부금의 지급 시기는, 실제의 철거일로 하는 안.
- b) 급부금액의 산정도, 실제의 철거일을 기준으로서 산정해, 실제의 철거 일에 급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는 안의 2안에 대해, 검토를 실시했다.

당연구회에서는, b) 안이라고, 급부금액의 증가에 의해, 신규 참가자의 재배분 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 외에 전파의 재배분 계획의 책정 시에 급부금 총액의 확정을 할 수 없는 것, 게다가 전파 이용자는, 상기 ①의 입장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면, b) 안의 채용은 부적당으로 여겨졌다. 한편, a) 안에 대해서는, 급부금 총액은 거의 변동하지 않고(관념적으로는 이자지급의 요소는 있다), 신규 참가자나 행정에 있어서의 예견 가능성이 유지되는 것, 설비의 철거자에 있어서도 실제로 비용이 발생할 때에 수급할 수 있는 것 등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부터, a) 안의 채용이 적당과 정리되었다.

